

# 충청북도
#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 2018~2022

충청북도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 (2018~2022)

2017. 11.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提 出 文

충청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貴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2018~2022)」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忠南地方行政發展研究院(株)

理事長 玄 達 鎬

# 차 례


##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2. 계획의 성격 ····· 7
3. 계획의 범위 및 구성 ····· 8

## Ⅱ. 결혼·출산현황 및 여건 분석

1. 결혼 수준 변화 ····· 13
2. 출산 수준 변화 ····· 15
3. 인구 분석 ····· 32
4. 저출산의 주요 원인 ····· 35

## Ⅲ. 출산장려 정책 분석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분석 ····· 53
2. 충청북도 출산장려 정책 현황 ····· 68
3. 가족정책 성공 사례 검토 ····· 84

## Ⅳ.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 111
2. 주요 조사 결과 ····· 118
3.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관련 시사점 도출 ····· 167

## Ⅴ. 비전 및 전략

1. SWOT 분석을 통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전략 방향 ····· 171
2. 비전 및 목표 ····· 178
3. 분야별 정책 과제 ····· 179

#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범위 및 구성

# Ⅰ.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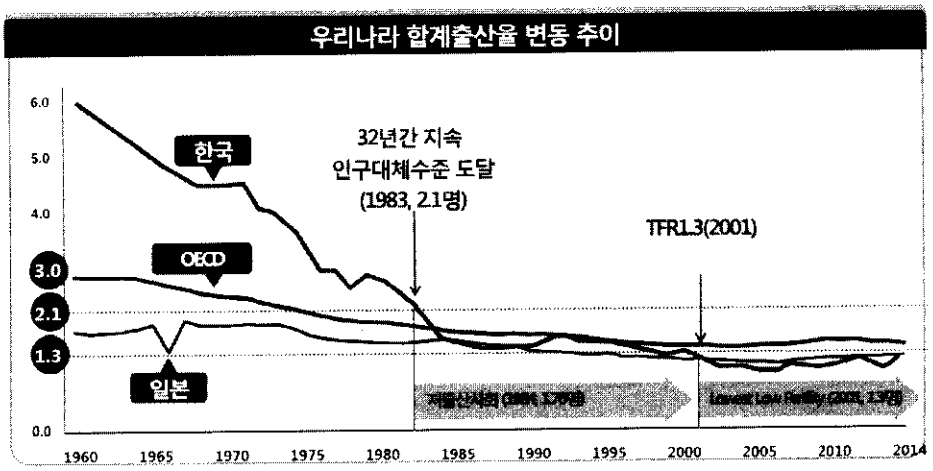
#### □ 초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현상의 장기 지속

○ 이론적으로 저출산 현상(low fertility syndrome)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이며, 초저출산 현상(lowest low fertility)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1)]

○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7년간은 초저출산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합계출산율[2)]이 1960년 6.00명에서 1983년 2.06명으로 감소한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2001년부터는 1.30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1.12~1.30명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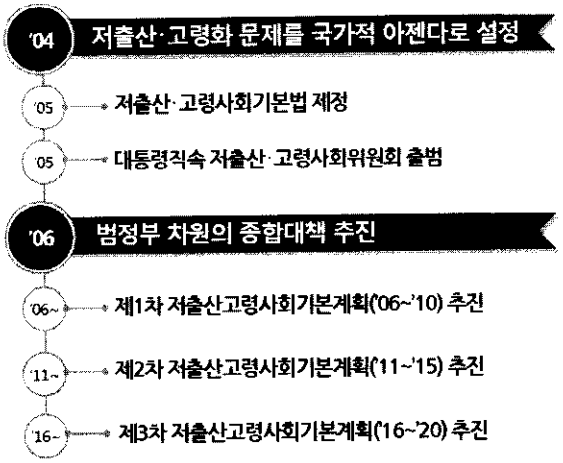



이미지: 원종욱 · 이소영,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결과 인용), 보건사회연구원, 2017.1.25.

〈그림 1-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 이삼식 외, 결혼 ·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관련용어 참조)




이미지: 원종욱 · 이소영, 전게서

〈그림 1-2〉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에 의거해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 확충, 육아 휴직 활성화 등 총 96개의 정책과제들이 실행되었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을 포함해 26개의 중점과제가 추진되었음

– 특히 2차 계획에 투입된 재원 규모는 1차 계획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총 60.5조원에 달함[5)]

○ 이러한 저출산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1.30명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 지역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필요

○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는 반성과 함께 실생활에 좀 더 와 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획일적 계획이나 정책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는, 주민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지역적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5) 국회입법조사처,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2017.1

# 2. 계획의 성격

## □ 장기적 안목에서 출산력 재고방안을 모색하는 종합계획

○ 당해 지역의 인구추이 및 인구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종합계획임

○ 단순히 지역 내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시각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저출산 정책 변화 검토, 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현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 및 세부 방안 등을 모색하는 종합계획임

## □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연계한 정책 계획

○ 국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임신·출산·보육 관련 상위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정책계획임

○ 상위계획을 수용함과 동시에 기존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관 계획들을 연계하여 계획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전략 계획

○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임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
3. 출산과 양육 등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
4.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도 공무원의 우대 시책
5.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
6.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
7.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

## 3) 계획의 구성

1단계, 결혼·출산 현황 및 여건 분석

- 충청북도 저출산 현황
-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단계, 출산장려 정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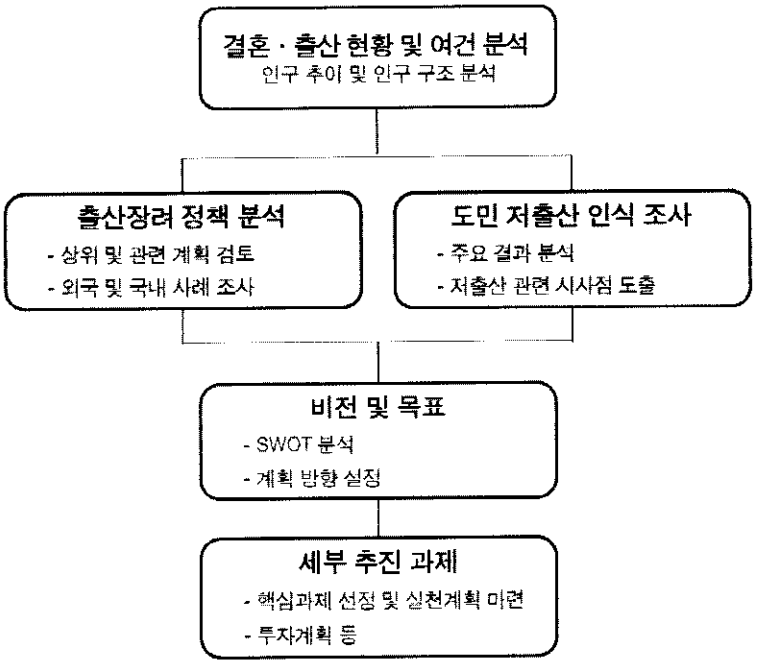
- 충청북도 저출산 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외국 및 우리나라 사례 분석

3단계, 도민 대상 저출산 실태 및 인식 조사

- 조사 설계
- 주요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단계,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 및 평가

- SWOT 분석
- 비전 및 목표 설정
- 세부 추진과제
- 투자계획




〈그림 1-3〉 계획의 구성

# 결혼 · 출산현황 및 여건 분석

1. 결혼 수준 변화
2. 출산 수준 변화
3. 인구 분석
4. 저출산의 주요 원인

# Ⅱ. 결혼 · 출산 현황 및 여건 분석

## 1. 결혼 수준 변화

### 1) 결혼 건수와 조(粗)혼인율

○ 지난 10년간 충청북도의 혼인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9,834건에서 2011년 9,542건, 2016년 8,33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의 혼인건수 역시 2007년 343,559건에서 2011년 329,087건, 2016년 281,635건으로 줄어들고 있음

○ 조혼인율[8] 역시 2007년 6.6건에서 2011년 6.2건, 2016년 5.3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2-1〉 결혼 건수와 조혼인율

| 연도 | 전국 | | | | 충청북도 | | | |
|---|---|---|---|---|---|---|---|---|
| | 혼인건수(천건) | | | 조혼인율 | 혼인건수(천건) | | | 조혼인율 |
| | | 증감(천건) | 증감률(%) | | | 증감(천건) | 증감률(%) | |
| 2007 | 343,559 | 12.9 | 3.9 | 7.0 | 9,834 | 0.5 | 5.8 | 6.6 |
| 2008 | 327,715 | −15.8 | −4.6 | 6.6 | 9,512 | −0.3 | −3.3 | 6.3 |
| 2009 | 309,759 | −18.0 | −5.5 | 6.2 | 8,666 | −0.8 | −8.9 | 5.7 |
| 2010 | 326,104 | 16.3 | 5.3 | 6.5 | 9,171 | 0.5 | 5.8 | 6.0 |
| 2011 | 329,087 | 3.0 | 0.9 | 6.6 | 9,542 | 0.3 | 4.0 | 6.2 |
| 2012 | 327,073 | −2.0 | −0.6 | 6.5 | 9,275 | −0.2 | −2.8 | 6.0 |
| 2013 | 322,807 | −4.3 | −1.3 | 6.4 | 9,307 | 0.03 | 0.3 | 6.0 |
| 2014 | 305,507 | −17.3 | −5.4 | 6.0 | 8,774 | −0.5 | −5.7 | 5.6 |
| 2015 | 302,828 | −2.7 | −0.9 | 5.9 | 8,872 | −0.1 | 1.1 | 5.6 |
| 2016 | 281,635 | −21.2 | −7.0 | 5.5 | 8,334 | −0.5 | −6.1 | 5.3 |

자료: 통계청, 혼인 · 이혼통계, 각 연도

8) 조혼인율은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혼인 관련 기초지표로 중요하게 활용됨

$$\text{조혼인율(CMR)} = \frac{\text{특정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 인구}} \times 1{,}000$$

〈표 2-2〉 충청북도 평균 초혼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 연도 | 전국 | | 충청북도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2007 | 31.1 | 28.1 | 30.6 | 27.6 |
| 2008 | 31.4 | 28.3 | 30.9 | 27.9 |
| 2009 | 31.6 | 28.7 | 31.2 | 28.2 |
| 2010 | 31.8 | 28.9 | 31.5 | 28.5 |
| 2011 | 31.9 | 29.1 | 31.4 | 28.7 |
| 2012 | 32.1 | 29.4 | 31.6 | 28.8 |
| 2013 | 32.2 | 29.6 | 31.6 | 29.0 |
| 2014 | 32.4 | 29.8 | 31.9 | 29.1 |
| 2015 | 32.6 | 30.0 | 32.2 | 29.5 |
| 2016 | 32.8 | 30.1 | 32.4 | 2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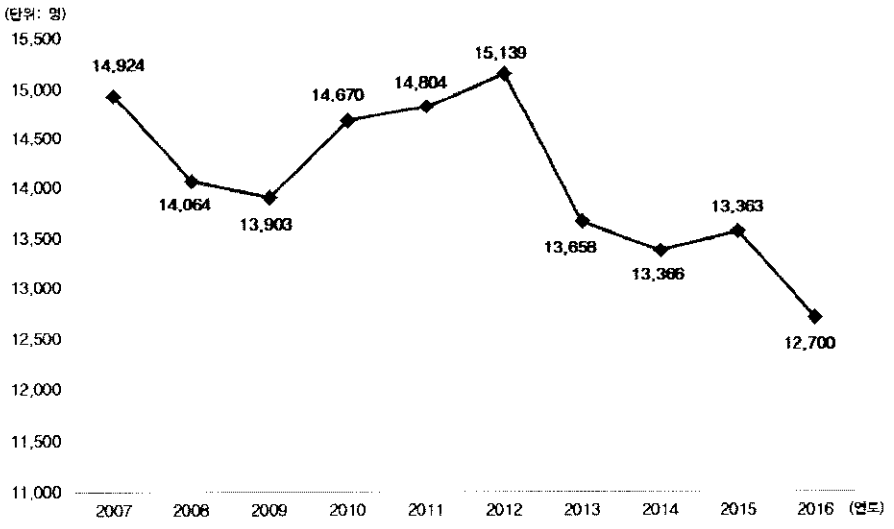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 연도

# 2. 출산 수준 변화

## 1) 출생아 수

○ 지난 10년간 충청북도 출생아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등락폭이 있기는 하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14,924명에서 2012년 15,139명으로 상승했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6년 12,700명에 이름




〈그림 2-3〉 충청북도 출생아 수 변화 추이

## 조(粗)출생률[9]

■ 충청북도의 조출생률은 2009년 9.1에서 2012년 9.8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8.1로 낮아짐

- 충청북도는 도(道) 평균 조출생률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

(단위: 1천명당 명)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국 | 9.0 | 9.4 | 9.4 | 9.6 | 8.6 | 8.6 | 8.6 | 7.9 |
| 특별·광역시 | 8.8 | 9.2 | 9.0 | 9.3 | 8.4 | 8.4 | 8.5 | 7.8 |
| 서울 | 8.8 | 9.2 | 9.0 | 9.3 | 8.4 | 8.4 | 8.4 | 7.7 |
| 부산 | 7.1 | 7.8 | 7.9 | 8.2 | 7.4 | 7.5 | 7.7 | 7.2 |
| 대구 | 7.8 | 8.3 | 8.3 | 8.6 | 7.8 | 7.8 | 7.9 | 7.4 |
| 인천 | 9.0 | 9.5 | 9.5 | 9.9 | 9.0 | 9.0 | 8.8 | 8.1 |
| 광주 | 9.2 | 9.7 | 9.6 | 9.9 | 8.7 | 8.7 | 8.5 | 7.9 |
| 대전 | 9.4 | 9.6 | 9.9 | 10.1 | 9.3 | 9.2 | 9.1 | 8.3 |
| 울산 | 9.9 | 10.2 | 10.3 | 10.7 | 9.9 | 10.0 | 10.1 | 9.4 |
| 세종 | – | – | – | 10.2 | 9.5 | 9.7 | 14.8 | 14.6 |
| 도 | 9.0 | 9.4 | 9.7 | 9.9 | 8.8 | 8.7 | 8.7 | 8.0 |
| 경기 | 10.0 | 10.5 | 10.4 | 10.5 | 9.3 | 9.2 | 9.2 | 8.4 |
| 강원 | 8.0 | 8.2 | 8.2 | 8.2 | 7.2 | 7.0 | 7.1 | 6.6 |
| **충북** | **9.1** | **9.6** | **9.6** | **9.8** | **8.8** | **8.5** | **8.6** | **8.1** |
| 충남 | 9.5 | 9.9 | 9.8 | 10.2 | 9.2 | 8.9 | 9.0 | 8.4 |
| 전북 | 8.2 | 8.7 | 8.7 | 8.7 | 7.8 | 7.7 | 7.6 | 6.9 |
| 전남 | 8.3 | 8.7 | 8.7 | 9.0 | 8.1 | 7.8 | 8.0 | 7.4 |
| 경북 | 8.4 | 8.9 | 9.1 | 9.2 | 8.3 | 8.2 | 8.3 | 7.7 |
| 경남 | 9.4 | 9.9 | 9.9 | 10.1 | 8.9 | 9.0 | 8.9 | 8.1 |
| 제주 | 9.7 | 10.0 | 9.9 | 10.4 | 9.1 | 9.3 | 9.2 | 8.7 |

자료: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각 연도

9)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그 해 중앙인 7월1일 기준 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함. 시도별 조출생률은 2009년부터 집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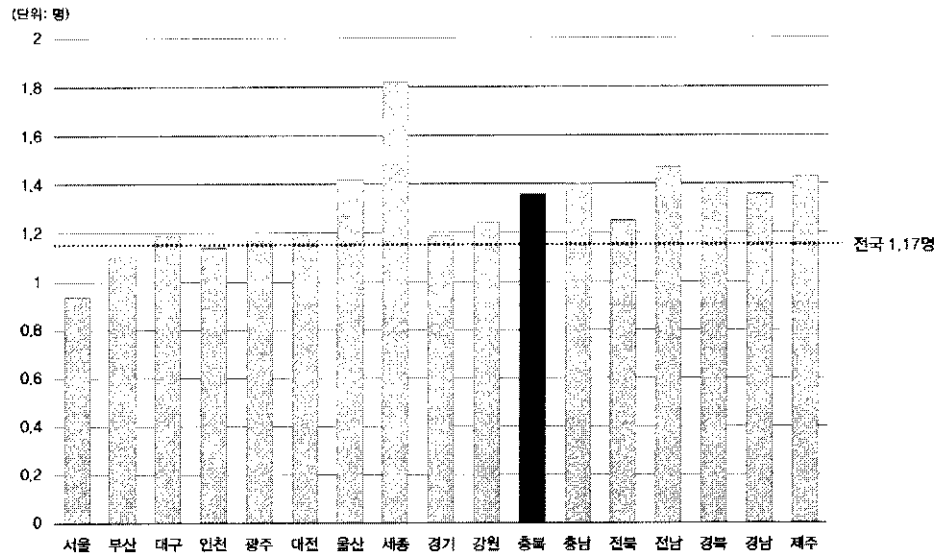
$$\text{조출생률(CBR)} = \frac{\text{특정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표 2-4〉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명)

| 출산순위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국 | | 493,189 | 465,892 | 444,849 | 470,171 | 471,265 | 484,550 | 436,455 | 435,435 | 438,420 | 406,243 |
| 첫째아 | 명 | 262,154 | 242,024 | 230,184 | 235,333 | 239,577 | 248,888 | 224,807 | 225,392 | 228,613 | 212,932 |
| | % | 53.2 | 51.9 | 51.7 | 50.1 | 50.8 | 51.4 | 51.5 | 51.8 | 52.1 | 52.4 |
| 둘째아 | 명 | 181,850 | 176,079 | 170,090 | 181,871 | 178,981 | 184,020 | 165,661 | 165,332 | 166,130 | 152,729 |
| | % | 36.9 | 37.8 | 38.2 | 38.7 | 38.0 | 38.0 | 38.0 | 38.0 | 37.9 | 37.6 |
| 셋째아 이상 | 명 | 45,913 | 44,333 | 41,862 | 49,932 | 51,644 | 50,596 | 45,234 | 43,712 | 42,456 | 39,636 |
| | % | 9.3 | 9.5 | 9.4 | 10.6 | 11.0 | 10.4 | 10.3 | 10.0 | 9.7 | 9.8 |
| 미상 | 명 | 3,272 | 3,456 | 2,713 | 3,035 | 1,063 | 1,046 | 753 | 999 | 1,221 | 946 |
| | % | 0.6 | 0.8 | 0.7 | 0.6 | 0.2 | 0.2 | 0.2 | 0.2 | 0.3 | 0.2 |
| 충청북도 | | 14,924 | 14,064 | 13,903 | 14,670 | 14,804 | 15,139 | 13,658 | 13,366 | 13,563 | 12,742 |
| 첫째아 | 명 | 7,627 | 7,144 | 6,930 | 6,852 | 6,992 | 7,294 | 6,729 | 6,509 | 6,617 | 6,295 |
| | % | 51.1 | 50.8 | 49.8 | 46.7 | 47.2 | 48.2 | 49.3 | 48.7 | 48.8 | 49.4 |
| 둘째아 | 명 | 5,425 | 5,220 | 5,320 | 5,762 | 5,786 | 5,813 | 5,186 | 5,108 | 5,293 | 4,876 |
| | % | 36.4 | 37.1 | 38.3 | 39.3 | 39.1 | 38.4 | 38.0 | 38.2 | 39.0 | 38.3 |
| 셋째아 이상 | 명 | 1,794 | 1,629 | 1,587 | 1,990 | 1,999 | 1,989 | 1,729 | 1,732 | 1,636 | 1,555 |
| | % | 12.0 | 11.6 | 11.4 | 13.6 | 13.5 | 13.1 | 12.7 | 13.0 | 12.1 | 12.2 |
| 미상 | 명 | 78 | 71 | 66 | 66 | 27 | 43 | 14 | 17 | 17 | 16 |
| | % | 0.5 | 0.5 | 0.5 | 0.4 | 0.2 | 0.3 | 0.1 | 0.1 | 0.1 | 0.1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인구동향조사




〈그림 2-5〉 2016년 기준 시·도별 합계출산율

○ 충청북도 내 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증평군(1.80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괴산군(0.93)임

○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곳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이며, 감소한 곳은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임

– 특히 괴산군은 2007년 1.33명에서 2016년 0.93명으로, 0.4명이나 감소하여 11개 시·군 중 가장 감소폭이 큼

〈표 2-6〉 충청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단위: 명)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충북** | **1.39** | **1.32** | **1.32** | **1.40** | **1.43** | **1.49** | **1.37** | **1.36** | **1.41** | **1.36** |
| 청주시 | 1.33 | 1.27 | 1.27 | 1.34 | 1.40 | 1.47 | 1.34 | 1.37 | 1.44 | 1.35 |
| 충주시 | 1.30 | 1.24 | 1.23 | 1.35 | 1.32 | 1.31 | 1.25 | 1.25 | 1.26 | 1.31 |
| 제천시 | 1.25 | 1.26 | 1.17 | 1.34 | 1.36 | 1.41 | 1.32 | 1.40 | 1.30 | 1.33 |
| 보은군 | 1.30 | 1.41 | 1.39 | 1.28 | 1.38 | 1.40 | 1.19 | 1.47 | 1.54 | 1.55 |
| 옥천군 | 1.40 | 1.28 | 1.39 | 1.25 | 1.46 | 1.27 | 1.10 | 1.32 | 1.25 | 1.28 |
| 영동군 | 1.39 | 1.26 | 1.25 | 1.45 | 1.31 | 1.48 | 1.28 | 1.22 | 1.21 | 1.19 |
| 증평군 | 1.66 | 1.57 | 1.61 | 1.77 | 1.67 | 1.73 | 1.66 | 1.77 | 1.83 | 1.80 |
| 진천군 | 1.65 | 1.48 | 1.46 | 1.64 | 1.72 | 1.62 | 1.46 | 1.56 | 1.62 | 1.41 |
| 괴산군 | 1.33 | 1.13 | 1.27 | 1.24 | 1.01 | 1.22 | 0.92 | 1.13 | 0.98 | 0.93 |
| 음성군 | 1.57 | 1.47 | 1.53 | 1.56 | 1.50 | 1.64 | 1.45 | 1.43 | 1.52 | 1.56 |
| 단양군 | 1.23 | 1.29 | 1.22 | 1.23 | 1.18 | 1.24 | 1.05 | 1.07 | 1.23 | 0.99 |

자료: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각 연도

## 4) 모(母)의 출산 현황

### □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 지난 10년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산연령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전국의 경우 2007년 30.58세에서 2011년 31.44세, 2016년 32.4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33.07세임

○ 충청북도의 경우 2007년 30.01세에서 2011년 30.80세, 2016년 31.69세로 상승함

〈표 2-7〉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단위: 세)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전국 | 30.58 | 30.79 | 30.97 | 31.26 | 31.44 | 31.62 | 31.84 | 32.04 | 32.23 | 32.40 |
| 서울 | 31.23 | 31.48 | 31.66 | 31.93 | 32.11 | 32.26 | 32.47 | 32.69 | 32.85 | 33.07 |
| 부산 | 30.78 | 31.01 | 31.19 | 31.52 | 31.67 | 31.86 | 32.02 | 32.25 | 32.46 | 32.69 |
| 대구 | 30.68 | 30.83 | 31.04 | 31.39 | 31.58 | 31.78 | 32 | 32.2 | 32.42 | 32.55 |
| 인천 | 30.48 | 30.82 | 30.86 | 31.18 | 31.37 | 31.59 | 31.79 | 31.98 | 32.11 | 32.21 |
| 광주 | 30.38 | 30.6 | 30.86 | 31.06 | 31.16 | 31.46 | 31.7 | 31.9 | 32.16 | 32.26 |
| 대전 | 30.59 | 30.73 | 30.9 | 31.22 | 31.35 | 31.55 | 31.76 | 31.93 | 32.11 | 32.26 |
| 울산 | 30.24 | 30.49 | 30.67 | 30.98 | 31.27 | 31.35 | 31.6 | 31.83 | 31.98 | 32.17 |
| 세종 | – | – | – | – | – | 31.17 | 31.65 | 31.97 | 32.33 | 32.55 |
| 경기 | 30.73 | 30.92 | 31.13 | 31.42 | 31.60 | 31.75 | 31.98 | 32.15 | 32.36 | 32.51 |
| 강원 | 30.22 | 30.39 | 30.57 | 30.89 | 30.99 | 31.2 | 31.31 | 31.52 | 31.69 | 31.81 |
| **충북** | **30.01** | **30.09** | **30.22** | **30.65** | **30.80** | **30.96** | **31.19** | **31.36** | **31.59** | **31.69** |
| 충남 | 29.76 | 29.97 | 30.14 | 30.41 | 30.53 | 30.76 | 31.04 | 31.27 | 31.39 | 31.58 |
| 전북 | 30.03 | 30.16 | 30.39 | 30.65 | 30.85 | 31.07 | 31.39 | 31.48 | 31.7 | 31.88 |
| 전남 | 29.9 | 30.06 | 30.2 | 30.48 | 30.7 | 30.87 | 31.16 | 31.25 | 31.52 | 31.78 |
| 경북 | 29.93 | 30.18 | 30.38 | 30.61 | 30.88 | 31.02 | 31.24 | 31.47 | 31.72 | 31.90 |
| 경남 | 30.13 | 30.33 | 30.54 | 30.86 | 31.09 | 31.31 | 31.54 | 31.81 | 31.98 | 32.14 |
| 제주 | 30.93 | 31.15 | 31.23 | 31.39 | 31.49 | 31.72 | 31.88 | 31.95 | 32.24 | 32.44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인구동향조사

##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ASFR)[11]

○ 2007년과 2016년의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30~44세 구간의 출산율 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전국의 경우 30~34세는 2007년 101.3에서 2016년 110.1로 상승했으며, 35~39세 역시 같은 기간 25.6에서 48.7로, 40~44세는 3.1에서 5.9로 각각 증가함
- 충청북도 역시 30~34세의 경우 2007년 97.1에서 2016년 118.6로 상승했으며, 35~39세는 같은 기간 23.8에서 46.1로, 40~44세는 3.1에서 5.1로 증가했음

〈표 2-9〉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

| 구분 | 15~19세 | | 20~24세 | | 25~29세 | | 30~34세 | | 35~39세 | | 40~44세 | | 45~49세 | |
|---|---|---|---|---|---|---|---|---|---|---|---|---|---|---|
| | 2007 | 2016 | 2007 | 2016 | 2007 | 2016 | 2007 | 2016 | 2007 | 2016 | 2007 | 2016 | 2007 | 2016 |
| 전국 | 2.2 | 1.3 | 19.5 | 11.5 | 95.5 | 56.4 | 101.3 | 110.1 | 25.6 | 48.7 | 3.1 | 5.9 | 0.2 | 0.2 |
| 서울 | 1.4 | 0.9 | 9.8 | 5.4 | 66.7 | 33.3 | 99.9 | 93.3 | 29.3 | 49.8 | 3.0 | 6.3 | 0.1 | 0.2 |
| 부산 | 1.7 | 1.5 | 11.5 | 9.0 | 69.4 | 46.2 | 92.2 | 105.8 | 22.2 | 50.5 | 2.3 | 6.2 | 0.1 | 0.2 |
| 대구 | 1.8 | 0.9 | 14.0 | 9.0 | 85.0 | 55.8 | 97.6 | 115.9 | 20.7 | 48.5 | 2.2 | 5.2 | 0.1 | 0.1 |
| 인천 | 1.8 | 1.4 | 20.9 | 12.9 | 99.8 | 55.7 | 96.8 | 105.8 | 23.8 | 46.8 | 2.8 | 5.4 | 0.2 | 0.2 |
| 광주 | 2.2 | 1.4 | 18.6 | 11.4 | 101.8 | 60.4 | 98.8 | 107.1 | 24.0 | 45.9 | 2.9 | 5.6 | 0.1 | 0.2 |
| 대전 | 1.8 | 1.4 | 17.9 | 12.3 | 97.6 | 57.9 | 105.2 | 111.3 | 24.9 | 49.0 | 2.7 | 5.4 | 0.1 | 0.1 |
| 울산 | 2.5 | 1.3 | 23.3 | 12.8 | 121.3 | 77.9 | 105.3 | 132.9 | 20.4 | 51.9 | 2.6 | 5.1 | 0.1 | 0.1 |
| 세종 | - | 1.1 | - | 19.7 | - | 110.0 | - | 160.7 | - | 63.4 | - | 9.6 | - | 0.2 |
| 경기 | 2.1 | 1.0 | 21.4 | 11.2 | 106.8 | 57.6 | 107.0 | 113.1 | 26.9 | 48.7 | 3.4 | 6.0 | 0.2 | 0.2 |
| 강원 | 2.8 | 1.5 | 25.8 | 15.6 | 112.6 | 71.8 | 95.9 | 107.8 | 25.4 | 42.5 | 3.8 | 5.2 | 0.2 | 0.1 |
| **충북** | **2.8** | **1.6** | **28.8** | **17.6** | **118.5** | **80.7** | **97.1** | **118.6** | **23.8** | **46.1** | **3.1** | **5.1** | **0.3** | **0.2** |
| 충남 | 3.3 | 2.0 | 34.8 | 20.4 | 132.3 | 85.4 | 97.5 | 118.6 | 24.9 | 45.8 | 3.7 | 5.2 | 0.3 | 0.2 |
| 전북 | 3.6 | 1.5 | 28.6 | 16.1 | 111.8 | 66.8 | 98.2 | 113.5 | 25.1 | 43.9 | 3.3 | 5.7 | 0.2 | 0.2 |
| 전남 | 4.7 | 2.0 | 32.0 | 18.0 | 127.9 | 84.5 | 106.2 | 128.4 | 27.1 | 50.6 | 4.1 | 6.5 | 0.2 | 0.3 |
| 경북 | 3.6 | 1.4 | 26.6 | 16.6 | 115.7 | 80.1 | 98.6 | 125.3 | 21.4 | 48.0 | 2.7 | 6.1 | 0.2 | 0.2 |
| 경남 | 2.8 | 1.2 | 27.4 | 14.8 | 122.5 | 76.1 | 104.0 | 123.7 | 22.2 | 48.8 | 2.7 | 5.3 | 0.1 | 0.1 |
| 제주 | 2.2 | 2.3 | 24.9 | 17.5 | 108.7 | 75.8 | 114.9 | 117.2 | 36.1 | 62.4 | 5.6 | 8.7 | 0.4 | 0.3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인구동향조사

11) 조출생률이 가장 단순한 출산력(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 지표이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어느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가를 알고 싶을 때에는 해당 연령대별 출산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필요함.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보통 5세 연령 계급별) 출생아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임
• 연령별 출산율(ASFR) = (여자의 연령별 출생아수 / 당해 연령별 연앙 여자인구) × 1,000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통계용어 지표 이해 참조)

## 6) 신혼부부[12] 출산 현황[13]

### □ 초혼 신혼부부의 출산자녀별 현황

○ 충청북도의 초혼인 신혼부부는 33,362쌍이었으며, 이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22,426쌍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함. 또한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수는 0.87명으로 전국 평균 출생아수인 0.82명보다 0.05명 많음

〈표 2-11〉 초혼 신혼부부의 출산자녀수별 현황(2015년 기준)

(단위: 쌍, 명, %)

| 구 분 | 합 계 | 자녀 없음 | 자녀 있음 | | | | 평균 출생아수 |
|---|---|---|---|---|---|---|---|
| | | | 소계 | 1명 | 2명 | 3명 이상 | |
| 전 국 (구성비) | 1,179,006 (100.0) | 419,113 (35.5) | 759,893 (64.5) | 564,833 (47.9) | 187,667 (15.9) | 7,393 (0.6) | 0.82 |
| 서 울 | 248,038 (100.0) | 105,858 (42.7) | 142,180 (57.3) | 113,022 (45.6) | 28,288 (11.4) | 870 (0.4) | 0.69 |
| 부 산 | 73,133 (100.0) | 25,251 (34.5) | 47,882 (65.5) | 36,233 (49.5) | 11,262 (15.4) | 387 (0.5) | 0.82 |
| 대 구 | 51,881 (100.0) | 16,751 (32.3) | 35,130 (67.7) | 26,069 (50.3) | 8,744 (16.9) | 318 (0.6) | 0.86 |
| 인 천 | 69,651 (100.0) | 25,051 (36.0) | 44,600 (64.0) | 33,492 (48.1) | 10,679 (15.3) | 429 (0.6) | 0.81 |
| 광 주 | 33,283 (100.0) | 10,244 (30.8) | 23,039 (69.2) | 16,130 (48.5) | 6,606 (19.9) | 303 (0.9) | 0.91 |
| 대 전 | 35,956 (100.0) | 12,434 (34.6) | 23,522 (65.4) | 17,216 (47.9) | 6,078 (16.9) | 229 (0.6) | 0.84 |
| 울 산 | 30,791 (100.0) | 9,805 (31.8) | 20,986 (68.2) | 15,360 (49.9) | 5,415 (17.6) | 212 (0.7) | 0.87 |
| 세 종 | 6,823 (100.0) | 2,331 (34.2) | 4,492 (65.9) | 3,308 (48.5) | 1,135 (16.6) | 49 (0.7) | 0.84 |
| 경 기 | 310,090 (100.0) | 111,664 (36.0) | 198,427 (64.0) | 149,250 (48.1) | 47,381 (15.3) | 1,796 (0.6) | 0.80 |
| 강 원 | 28,119 (100.0) | 9,660 (34.4) | 18,459 (65.6) | 13,411 (47.7) | 4,823 (17.2) | 225 (0.8) | 0.84 |
| **충 북** | **33,362 (100.0)** | **10,936 (32.8)** | **22,426 (67.2)** | **15,986 (47.9)** | **6,158 (18.5)** | **283 (0.8)** | **0.87** |
| 충 남 | 46,441 (100.0) | 15,033 (32.4) | 31,408 (67.6) | 22,238 (47.9) | 8,814 (19.0) | 356 (0.8) | 0.88 |
| 전 북 | 34,101 (100.0) | 10,193 (29.9) | 23,908 (70.1) | 16,203 (47.5) | 7,304 (21.4) | 402 (1.2) | 0.94 |
| 전 남 | 33,457 (100.0) | 9,303 (27.8) | 24,154 (72.2) | 16,062 (48.0) | 7,660 (22.9) | 433 (1.3) | 0.98 |
| 경 북 | 54,601 (100.0) | 16,581 (30.4) | 38,020 (69.6) | 27,225 (49.9) | 10,401 (19.1) | 395 (0.7) | 0.90 |
| 경 남 | 75,810 (100.0) | 23,757 (31.3) | 52,053 (68.7) | 37,351 (49.3) | 14,153 (18.7) | 549 (0.7) | 0.89 |
| 제 주 | 13,474 (100.0) | 4,265 (31.7) | 9,209 (68.3) | 6,281 (46.6) | 2,770 (20.6) | 159 (1.2) | 0.91 |

12)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었음. 정확히 2010. 11. 1.~2015. 10. 31.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임

13) 2016년 12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신혼부부통계」가 최초로 공표됨.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통계자료의 한계로 10개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지는 못하며,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신혼부부 출산 자녀 현황만을 알아보도록 함

## □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 충청북도 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수는 0.77명, 외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수는 0.96명으로 나타남

– 전국의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수는 0.72명, 외벌이 부부 출생아수는 0.90명임

○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수가 외벌이 부부에 비해 낮은 것은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출산·양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함

〈표 2-13〉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2015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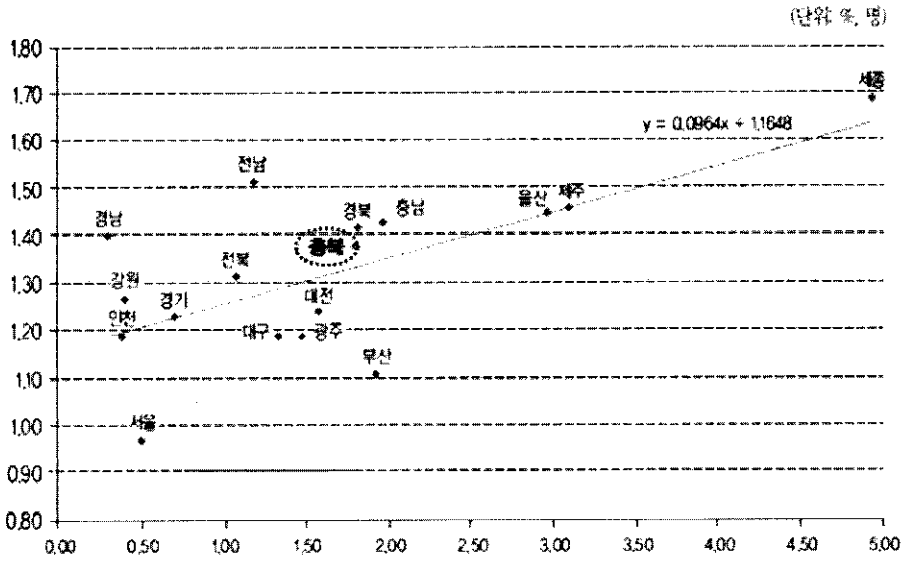
| 구분 | 전체 | 맞벌이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 | |
|---|---|---|---|---|
| | | 맞벌이 | 외벌이 | 기타 |
| 전국 | 0.82 | 0.72 | 0.90 | 0.82 |
| 서울 | 0.69 | 0.63 | 0.77 | 0.70 |
| 부산 | 0.82 | 0.72 | 0.90 | 0.84 |
| 대구 | 0.86 | 0.75 | 0.94 | 0.88 |
| 인천 | 0.81 | 0.69 | 0.89 | 0.86 |
| 광주 | 0.91 | 0.84 | 0.97 | 0.90 |
| 대전 | 0.84 | 0.75 | 0.92 | 0.85 |
| 울산 | 0.87 | 0.75 | 0.94 | 0.88 |
| 세종 | 0.84 | 0.77 | 0.92 | 0.81 |
| 경기 | 0.80 | 0.70 | 0.89 | 0.81 |
| 강원 | 0.84 | 0.76 | 0.92 | 0.82 |
| **충북** | **0.87** | **0.77** | **0.96** | **0.86** |
| 충남 | 0.88 | 0.77 | 0.96 | 0.89 |
| 전북 | 0.94 | 0.86 | 1.00 | 0.94 |
| 전남 | 0.98 | 0.89 | 1.04 | 0.98 |
| 경북 | 0.90 | 0.79 | 0.98 | 0.90 |
| 경남 | 0.89 | 0.78 | 0.96 | 0.89 |
| 제주 | 0.91 | 0.91 | 0.94 | 0.83 |

자료: 통계청,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 기반한 내부 자료

## 2014~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계속)

■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2014~2016년 평균)

- 2014~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r=0.66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종, 제주, 울산은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고, 서울, 인천, 경기 등은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음
- 전남, 경남 등은 소요예산 비율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충북은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 모두 양호하게 나타남




■ 충청북도 저출산 지표(2014~2016년 평균)

- 충청북도는 2014~2016년 합계출산율 평균이 1.38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8위를 차지함
-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은 1.80%로 7위를 차지함
-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소요예산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즉, 충청북도는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고, 저출산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지역으로 분석됨

## 2) 충청북도 시·군 인구 현황

○ 2016년 12월기준으로 충청북도 인구는 내국인 139만1,625명, 외국인 3만5,499명으로 총 162만7,124명임

○ 충청북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청주시로 도내 총 인구의 52.1%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단양군으로 도내 총 인구의 1.9%를 점유함

○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순임

〈표 2-12〉 충청북도 시·군의 인구(2016년 기준)

(단위: 명, %)

| 연도 | 총인구 | | | 내국인 | | | 외국인 | | |
|---|---|---|---|---|---|---|---|---|---|
| | 계 | 비중 | 순위 | 계 | 비중 | 순위 | 계 | 비중 | 순위 |
| 합 계 | 1,627,124 | 100.0 | – | 1,591,625 | 100.0 | – | 35,499 | 100.0 | – |
| 청주시 | 846,949 | 52.1 | 1 | 835,197 | 52.5 | 1 | 11,752 | 33.1 | 1 |
| 충주시 | 213,075 | 13.1 | 2 | 208,350 | 13.1 | 2 | 4,725 | 13.3 | 4 |
| 제천시 | 138,093 | 8.5 | 3 | 136,517 | 8.6 | 3 | 1,576 | 4.4 | 5 |
| 보은군 | 34,682 | 2.1 | 10 | 34,221 | 2.2 | 10 | 461 | 1.3 | 10 |
| 옥천군 | 53,043 | 3.3 | 6 | 52,267 | 3.3 | 6 | 776 | 2.2 | 6 |
| 영동군 | 51,106 | 3.2 | 7 | 50,552 | 3.2 | 7 | 554 | 1.6 | 9 |
| 증평군 | 37,996 | 2.3 | 9 | 37,308 | 2.3 | 9 | 688 | 1.9 | 8 |
| 진천군 | 75,267 | 4.6 | 5 | 69,950 | 4.4 | 5 | 5,317 | 15.0 | 3 |
| 괴산군 | 39,748 | 2.4 | 8 | 38,973 | 2.4 | 8 | 775 | 2.2 | 6 |
| 음성군 | 106,419 | 6.5 | 4 | 97,787 | 6.1 | 4 | 8,632 | 24.3 | 2 |
| 단양군 | 30,746 | 1.9 | 11 | 30,503 | 1.9 | 11 | 243 | 0.7 | 11 |

자료: 충북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stat.chungbuk.go.kr)에 탑재된 2016.12.31.기준 시군통계표 참조

# 4. 저출산의 주요 원인

■ 저출산 현상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혼인율의 하락과 결혼연령 상승으로 야기되는 만혼(晩婚)화임. 그러나 저출산 현상을 이런 한두가지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은 연구자에 따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바,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연구한 기존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하되 과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크게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함

## 1) 인구학적 요인

### □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변화

○ 25세부터 34세에 이르는 주 출산연령층 여성 인구의 감소가 합계출산율보다 출생아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함[20]

○ 충청북도의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 인구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12만5,725명에서 2007년 10만8,283명, 2016년 8만9,17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99년을 기준으로 2016년 증감율을 비교하면 29.1%가 감소한 수치임
- 같은 기간 전국의 주 출산연령층 증감율은 -25.9%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경우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가 전국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표 2-14〉 전국 및 충청북도의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 인구 변화

(단위: 명, %)

| 구 분 | 1999 | 2003 | 2007 | 2011 | 2016 | 1999년 기준 2016년 증감율 |
|---|---|---|---|---|---|---|
| 전국 | 4,403,386 | 4,221,700 | 3,988,314 | 3,682,791 | 3,261,912 | -25.9 |
| 충청북도 | 125,725 | 117,233 | 108,283 | 101,331 | 89,170 | -29.1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군구 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재구성

20)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방안. 2010. 재구성

## 도내 시·군의 여성 순이동 분석

### - 증평군과 괴산군을 중심으로-

■ 충청북도 시·군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증평군(2016년 기준 1.80명)과 가장 낮은 괴산군(2016년 기준 0.93명)의 여성 순이동을 분석해 보기로 함

■ 가장 뚜렷한 차이는 주출산여성 중 특히 25~29세 여성의 순이동임

- 증평군은 25~29세 여성이 전출이 거의 없는 반면, 괴산군은 25~29세 여성 전출이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증평군과 괴산군의 여성 순인동 분석(2007~2016) >

(단위: 명)

| 구분 | 연도 | 전체 | 여성 전체 | 가임기 여성 (15~49세) | 주 출산여성(25~34세) | | |
|---|---|---|---|---|---|---|---|
| | | | | | | 25~29세 | 30~34세 |
| 증평군 | 2007 | 487 | 253 | 152 | 51 | -9 | 60 |
| | 2008 | 845 | 418 | 203 | 101 | 80 | 21 |
| | 2009 | 802 | 178 | 117 | 78 | 45 | 33 |
| | 2010 | -17 | -61 | -69 | -13 | 15 | -28 |
| | 2011 | 284 | 167 | 88 | 46 | 32 | 14 |
| | 2012 | 103 | 124 | 31 | 34 | -1 | 35 |
| | 2013 | 120 | 95 | 42 | 28 | 24 | 4 |
| | 2014 | 56 | -114 | -88 | -8 | 23 | -31 |
| | 2015 | 1,741 | 831 | 488 | 191 | 59 | 132 |
| | 2016 | 462 | 229 | 94 | 50 | 18 | 32 |
| 괴산군 | 2007 | -398 | -248 | -180 | -91 | -67 | -24 |
| | 2008 | -6 | 11 | -60 | -60 | -46 | -14 |
| | 2009 | 467 | 175 | 15 | -46 | -49 | 3 |
| | 2010 | -61 | -146 | -89 | -69 | -49 | -20 |
| | 2011 | 848 | 376 | 99 | -27 | -58 | 31 |
| | 2012 | 740 | 309 | 99 | -20 | -44 | 24 |
| | 2013 | 662 | 272 | 85 | -87 | -51 | -36 |
| | 2014 | 577 | 244 | -52 | -56 | -35 | -21 |
| | 2015 | 777 | 343 | 60 | -47 | -40 | -7 |
| | 2016 | 548 | 284 | 44 | -22 | -19 | -3 |

주: 순이동 = 전입인구 - 전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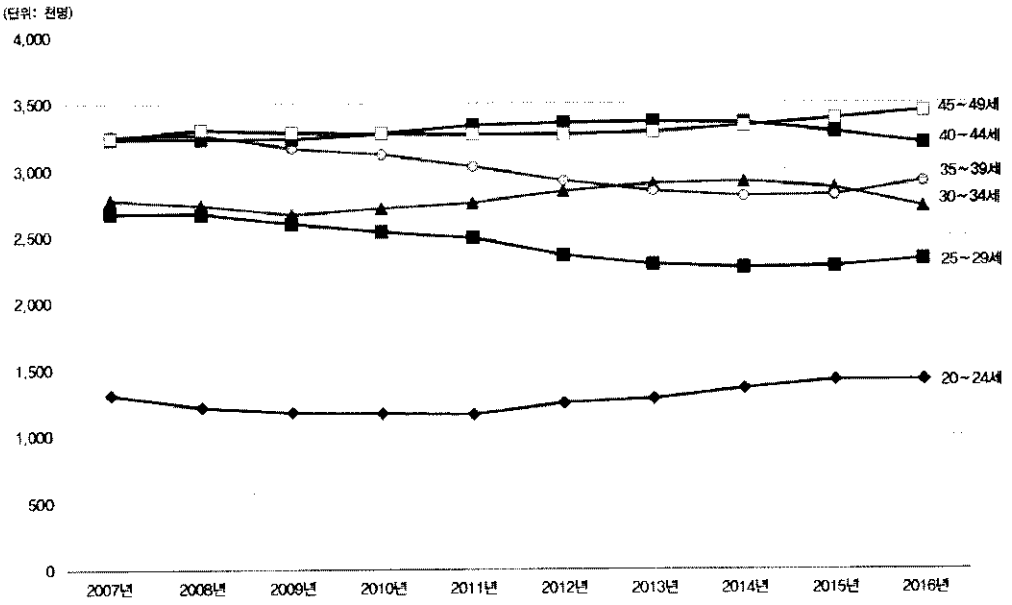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인구인동, 국내인구이동통계

## 2) 경제적 요인

### □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 지난 10년간 연령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5~39세의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25~29세 취업자수는 2007년 2,679천명에서 2016년 2,329천명으로 350천명 감소했음. 30~34세는 2007년 2,778천명에서 2016년 2,726천명으로 52천명이, 35~39세는 2007년 3,257천명에서 2016년 2,914천명으로 343천명이 감소함




〈그림 2-6〉 전국 연령별 취업자수 추이(2007~2016)

– 성별로 구분해 볼 경우 남성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35~39세 남성의 경우 2007년 2,028천명에서 2011년 1,936천명, 2016년 1,828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남성 취업자수 감소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을 유발하며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임

○ 한편 고용 불안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연령별 실업률임. 청년 실업률로 불리는 15~29세 실업률의 경우 2007년 7.2%에서 2014년 9.0%, 2016년 9.8%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청년 실업률의 이러한 상승은 30~59세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2.3~2.5%를 유지하며 안정적 추이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임

○ 충청북도의 청년 실업률은 2007년 7.3%에서 2014년 8.8%까지 상승했다가 차츰 하락하여 2016년 6.6%를 기록함

– 충청북도 30~59세 실업률은 2007년 1.5%에서 2016년 1.9%로 상승했으나, 전국 실업률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표 2-17〉 연령별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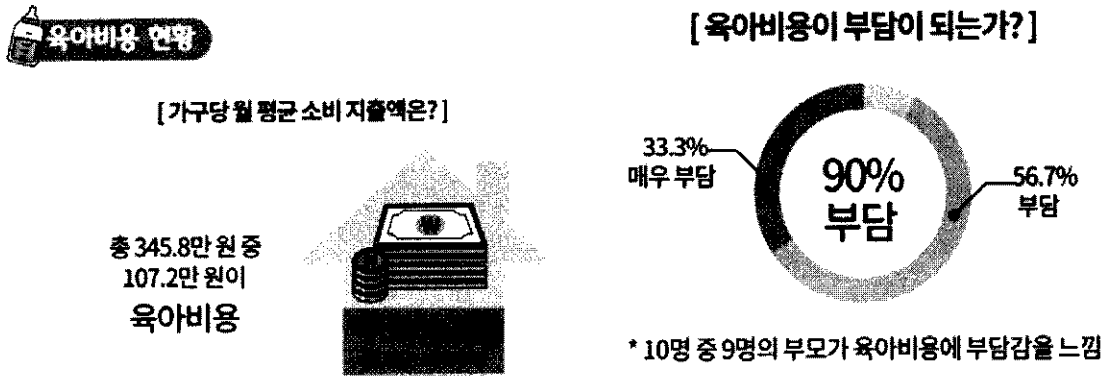
| 연도 | 전국 | | 충청북도 | |
|---|---|---|---|---|
| | 15~29세 | 30~59세 | 15~29세 | 30~59세 |
| 2007 | 7.2 | 2.5 | 7.3 | 1.5 |
| 2008 | 7.2 | 2.4 | 7.0 | 1.6 |
| 2009 | 8.1 | 2.9 | 6.2 | 1.5 |
| 2010 | 8.0 | 2.8 | 5.3 | 1.7 |
| 2011 | 7.6 | 2.5 | 6.2 | 1.8 |
| 2012 | 7.5 | 2.4 | 6.5 | 1.1 |
| 2013 | 8.0 | 2.3 | 6.8 | 1.2 |
| 2014 | 9.0 | 2.5 | 8.8 | 1.8 |
| 2015 | 9.2 | 2.6 | 7.2 | 1.6 |
| 2016 | 9.8 | 2.5 | 6.6 | 1.9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 □ 자녀 양육비 부담

○ 2017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21]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총 345.8만 원, 육아비용은 107.2만 원으로 가계 지출 대비 평균 31%를 육아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육아비용에 대해 '매우 부담' 33.3%, '조금 부담' 56.7%로 응답해 10명 중 9명의 부모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미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결과(http://www.mogef.go.kr/nw/prd/nw_prd_s002d.do?mid=mda704)

〈그림 2-7〉 육아비용 및 부담 여부

○ 육아비용 부담항목별 비율은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 정책지원이 연령별로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음

- 영아(만0~3세)의 경우 '식료품비'(19.9%)와 '돌봄 및 기관 비용'(18.9%) 항목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남
- 유아(만4~6세)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 및 기관 비용'(37.2%)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음.
- 초등 저학년(만7~9세) 자녀 양육에는 '사교육비'(64.1%)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즉 자녀가 영유아기일 때는 돌봄 비용이, 학령기에 접어들면 사교육 비용이 주요 부담 항목이었음

21) 현재 출산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예비모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202명을 대상으로 함

## □ 주택 마련 비용

○ 높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즉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결혼 등 가구형성이 지연될 수 있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출산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어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자녀의 총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임[23)]

○ 이러한 논리를 입증한 대표적 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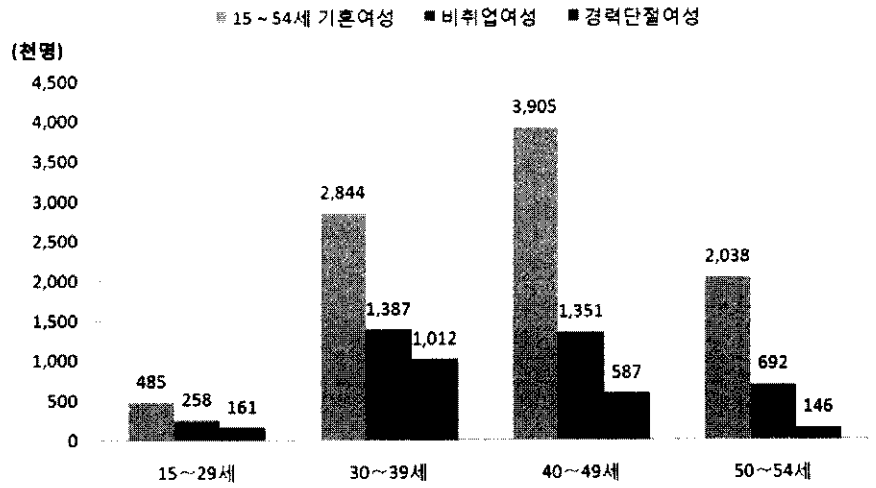
- 2010~2014년 통계청과 한국감정원의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60㎡ 미만 중소형주택비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해 주택과 결혼·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지역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쳤음. 즉, 시·도 단위의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면 조혼인율이나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임
- 반면 중·소형 주택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양(+)의 영향을 미쳤음. 즉, 신혼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나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조혼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2016)'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주택가격지수가 1%p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이 1000명당 0.072명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정부에서도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임대·전세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전세임대·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예비신혼부부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3) 김준형, 청년주택: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의 방향, 부동산포커스, 2016 March Vol.94

○ 경력단절여성(190만 6천명)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50~54세는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미지: 통계청,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그림 2-10〉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표 2-18〉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명, %)

| 연 령 | 15~54세 기혼여성 (A) | 구성비 | 비취업여성(B) | 구성비 | 비율 (B/A) | 경력단절여성(C) | 구성비 | 비율 (C/A) | 비율 (C/B) |
|---|---|---|---|---|---|---|---|---|---|
| 전 체 | 9,273 | 100.0 | 3,688 | 100.0 | 39.8 | 1,906 | 100.0 | 20.6 | 51.7 |
| 15~29세 | 485 | 5.2 | 258 | 7.0 | 53.1 | 161 | 8.5 | 33.2 | 62.5 |
| 30~39세 | 2,844 | 30.7 | 1,387 | 37.6 | 48.8 | 1,012 | 53.1 | 35.6 | 72.9 |
| 40~49세 | 3,905 | 42.1 | 1,351 | 36.6 | 34.6 | 587 | 30.8 | 15.0 | 43.4 |
| 50~54세 | 2,038 | 22.0 | 692 | 18.8 | 33.9 | 146 | 7.7 | 7.2 | 21.2 |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34.6%), 육아(30.1%), 임신·출산(26.3%), 가족돌봄(4.8%), 자녀교육(4.1%)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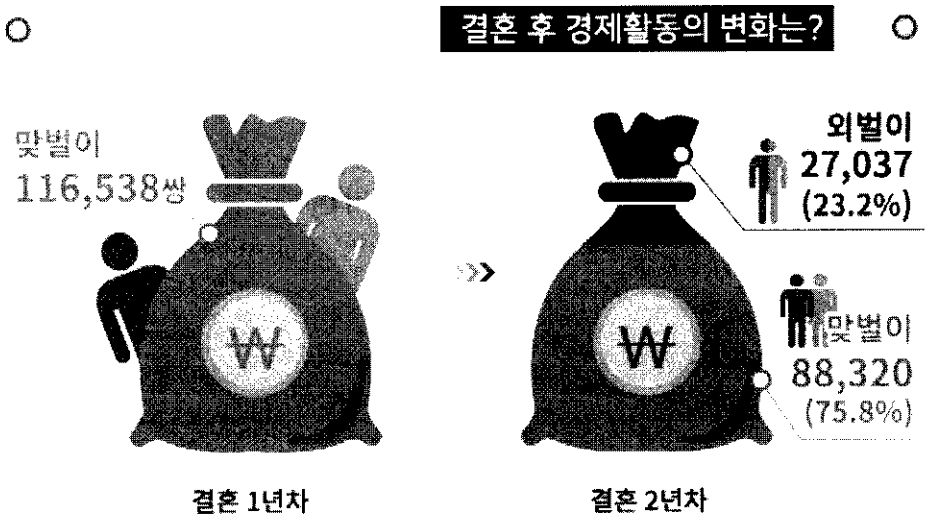
○ 결혼,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음

##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의 어려움임

○ 2017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 본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26]'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1년 차인 2014년 49.7%의 맞벌이 부부(11만6,538쌍)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2년 차인 2015년에는 이들 중 23.2%에 해당하는 2만7,037쌍이 외벌이로 돌아섰음

○ 대부분 아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맞벌이 부부 수가 준 것으로 파악됨. 경제활동을 하는 아내의 비중은 2014년 55.8%에서 2015년 50.2%로 5.6%p 줄었음




이미지: 조선일보, 숫자로 읽는 세상(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1447.html)

〈그림 2-11〉 신혼부부의 결혼 후 경제활동 변화

○ 이는 맞벌이인 신혼부부가 육아를 위해 한쪽이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 다니기는 쉽지 않아 '외벌이'로 돌아서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임

26)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작성대상 중에서 2년차(혼인신고일이 '13.11.1.~' 14.10.31.) 초혼부부 234,704쌍을 대상으로 '14.11.1.(또는 10월)시점과 ' 15.11.1.(또는 10월)시점의 현황을 상호 비교함

# 출산장려 정책 분석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분석
2. 충청북도 출산장려 정책 현황
3. 가족정책 성공 사례 검토

# Ⅲ. 출산 장려 정책 분석

## 1.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분석

### 1)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이어 2016년 8월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음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종합해 보면 크게 만혼 대책,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제고, 돌봄 및 교육시스템 개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27]

- 쉽게 말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2017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크게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1>과 같음

-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비롯하여 난임부부 시술 비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됨
- 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더불어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있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이 있음
-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는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을 비롯하여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입양아·장애아 가정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됨

27) 이삼식,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1, 보건사회연구원

〈표 3-1〉 중앙정부 출산장려 정책 현황(계속)

| 구분 | 사업명 | 주요 내용 |
|---|---|---|
| 육아지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17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영아(0~24개월 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비용 지원<br>*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아동의 경우 지원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지원(보건소) |
|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기준 중위소득 72%(3,217천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실시(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8,041천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보건소)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IPV),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이용 |
|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등록 장애아는 만 12세 이하) 全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0천원 ~ 438천원)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全 계층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
| | 아이돌보미 지원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 차등 지원) |
| 일·가정 양립 지원 |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br>-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30일 추가 부여(총 120일)<br>-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통상 임금액 부여, 고용보험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 가능 (유급 3일 포함) |
| | 육아휴직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되, 육아휴직급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br>*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 아빠의 달) |

## 2) 저출산 관련 계획

###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추진 주최: 대한민국 정부

○ 시간적 범위: 2016~2020년(5개년)

○ 계획의 성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

○ 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합계출산율: ('14) 1.21→('20) 1.5명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14) 49.6→('20) 39%

| 저출산 대책 | | |
|---|---|---|
|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1-1. 청년고용 활성화 | 1-1-가.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br>1-1-나.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적극 지원<br>1-1-다.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br>1-1-라.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br>1-1-마.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br>1-1-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br>1-1-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
| | 1-2.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 1-2-가.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br>1-2-나.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br>1-2-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br>1-2-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
|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2-1.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 2-1-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br>2-1-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br>2-1-다.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br>2-1-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br>2-1-마.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br>2-1-바. 여성건강 증진 강화<br>2-1-사.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

## □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 「출생아 2만+α」 대책(2016.8.25.)

○ 추진 주최: 보건복지부

○ 계획의 성격: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단기계획

○ 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 방향**

**'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α 대책」 추진**

▲ 난임·안심출산 : +0.8~1.2만명 ▲ 일·가정양립 선순환 : +0.8만명
▲ 둘째·셋째 응원 : +0.2만명 ▲ 출산붐 조성 +α명

◆ 출생아 수 감소 추세 반전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난임 지원 및 안심출산 등 집중 추진

* '16년 하반기 즉시 시행 + '17년 시행방침 발표로 출산율 변화 유도

| | |
|---|---|
|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 | ▸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br>▸ 여성근로자 첫아이 안심출산시스템 구축<br>▸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지원 강화 |
| + | |
|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 ▸ 남성,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br>▸ 유연·탄력근로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 개혁<br>▸ 맞춤형 보육, 초등돌봄 등 고용-돌봄 연계 강화 |
| + | |
|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 ▸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제고<br>▸ 공공부문 출산장려 대책 강화 |
| + | |
|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강화<br>▸ 지방·중앙 협력으로 지역의 풀뿌리 저출산 극복노력 지원<br>▸ 근로문화·가족문화 개선 및 국민소통 확대 |

| 출산 장려 정책(계속) | | |
|---|---|---|
| 국정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br>• 결혼 · 출산 친화 환경 조성: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 방안 검토<br>• 보육 · 양육 지원 강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br>•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br>•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br>•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br>- 20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br>-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
| | |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br>•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 · 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 (2017년 25% → 2022년 40%)<br>•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 · 교육프로그램 · 교육시설 질 균등화<br>-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20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 · 복지부)<br>*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 · 조정<br>•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br>-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 · 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 · 확산(2017년~)<br>• 고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지원<br>•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 '복합 · 혁신과제 3. 교육 · 노동 ·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주요 내용 | | |
|---|---|---|
| ② 결혼 ·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Hi-Five, 5대 개혁 어젠더)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18년)*<br>* 청년고용 노력의무 우선부과 및 의무 이행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br>•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로드맵(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함) 마련('17년)<br>*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 해소 포함 |
| | 주거 공공성 강화 | •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한도, 금리 대폭 우대) 신설('18년)<br>•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2년간 월 최대 10만원) 신설('18년),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
| | 일 · 가정 양립 일상화 |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 · 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br>* 첫 3개월 소득대체율(40%→80%) · 상한액(100만원→150만원) 인상, 첫 3개월 이후 단계적 인상<br>•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8년)<br>* 단축급여 비율 인상(60%→80%) 및 기간 확대(1년→2년), 전환형 시간선택제(최대 1년, 월 최대 60만원) 확산<br>• 기업의 출산 · 양육친화 행태 변화 유도*,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산('17년)<br>* 가족친화기업 지수 기업공시 반영, 우수기업 국민연기금 책임투자, 공공기관평가 가점<br>• 건강보험(임신 · 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일 · 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 확대<br>•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범위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8년)<br>*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개선) 모든 아이 200만원 |
| | 성평등 문화 정착 | • 학교 내 성평등 · 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
|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년~)<br>•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18~)고교 및 대학 입시 개선* 등 공교육 혁신<br>* (고입) 외고 · 국제고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입시 동시 실시 (대입) 수능 제도 개선 등<br>•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8년~) |
| ③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br>•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 (예: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br>•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 제도 등 마련 | |

##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 추진 주최: 교육과학기술부

○ 시간적 범위: 2013~2017년(5개년)

○ 계획의 성격: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

○ 계획의 주요 내용

비전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목표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 유치원 운영 효율화
- 교원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 영역 | 핵심과제 내용 |
|---|---|
| 유아교육 기회 확대 | 1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br>2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br>3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br>4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정착<br>5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
| 유치원 운영 효율화 | 1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br>2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br>3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br>4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br>5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 1 누리과정 정체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br>2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br>3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br>4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br>5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
|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 1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br>2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br>3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br>4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br>5 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
|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1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br>2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br>3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전개<br>4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br>5 유아교육 지원기능 강화 |

| 주요 정책 과제 | | |
|---|---|---|
| 2. 건강한 삶 | 2-2. 발달주기별 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1. 건강한 출산 지원 2. 모유 수유 증진<br>3.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br>4. 건강검진 내실화<br>5. 생활습관형 질병 예방·관리<br>6. 아동기 다빈도 질병 및 환경성 질환 관리<br>7.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br>8. 아동전용 보건인프라 확충<br>9. 건강한 식습관 환경 조성 |
| 3. 안전한 삶 | 3-1. 생활 안전 | 1. 가정 안전 2. 어린이집·유치원 안전<br>3. 학교 안전 4. 교통 안전 |
| | 3-2. 사회 안전 | 1. 범죄 안전 2. 식품 안전 |
| | 3-3. 아동안전 체계 구축 | 1. 아동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br>2. 아동 안전환경 조성 |
| 4. 함께하는 삶 | 4-1.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 1.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br>2. 아동보호 차별실태 정기조사 |
| | 4-2.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 1. 빈곤아동 2. 장애아동<br>3. 청소년 한부모 4. 가정 밖 보호아동<br>5. 근로 아동 6. 범죄 아동<br>7. 나홀로 아동 8. 학교밖 청소년<br>9. 이주아동 10. 다문화가정 아동<br>11. 기타 보호아동 |
| 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 5-1.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 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수립<br>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br>3. 아동권리 상시 모니터링 실시<br>4.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 |
| | 5-2.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 1. 가정방문 서비스<br>2. One-Stop 양육정보 제공<br>3. 부모교육<br>4. 가정양육 기반 조성<br>5.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
| | 5-3.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1. 아동친화 지자체 확산<br>2.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행관리<br>3. 지역격차 해소 |
| | 5-4. 민간과의 협력 강화 | 1. NGO 협력강화<br>2.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
| | 5-5.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마련<br>2. 아동영향평가 도입<br>3. 아동분야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br>4. 전달체계 정비<br>5. 통계관리 |

○ 출산장려금 이외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 '인구주간 기념 문화행사',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 사업' 등 출산장려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 출산 정책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저출산 극복네트워크 지원사업'임

- 충청북도는 2016년 5월 도내 19개 기관 단체와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사업은 충북 지역 특화 출산장려 시책사업과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남성육아분담,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등 충북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3-2〉 충청북도 결혼 및 임신 정책

| 구분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추진 현황(백만원) | | 비고 |
|---|---|---|---|---|---|---|
| | | | | 2016년 | 2017년 | |
| 결혼 | 미혼남녀 청춘캠프 | 도내 미혼남녀 60명 | •미혼남녀 만남 주선<br>•충청북도 주최, 새생명지원센터 주관 | - | 15.0 | 자체사업 |
| 임신 | 도청 모성보호실 (모아사랑방) 운영 | 임산부(도청 직원 및 민원인) | •임산부 및 수유부 휴식 공간 제공 | 1.0 | - | 자체사업 |
| | 임산부 도청 주차 요금 면제 | 도청사 출입 임산부 | •산모수첩, 신분증 소지한 임산부에게 도청주차장 1일 4시간 주차요금 면제 | - | - | 자체사업 |
| | 생명지킴이 사업 (낙태예방) | 도민 | •생명학교(낙태 예방) 운영<br>•생명지킴이 양성교육<br>•생명존중 생명문화 확산교육<br>•생명존중 인적관리 | 35.0 | 30.0 | 자체사업 |
| | 찾아가는 산부인과 | 임산부 | •방문서비스 | 150.0 | 150.0 | 국비지원 |
| | 난임부부 지원사업 | 난임부부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1,954.8 | 2,594.0 | 국비지원 |
|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임산부 | •모자보건수첩 제작 | - | 9.8 | 국비지원 |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고위험 임산부 | •정부지원 정책에 따라 소득별 지원 | - | 192.0 | 국비지원 |

## □ 일-가정 양립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남녀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기의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며, 자녀 양육기 가족생활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28)]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충청북도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역시 여성의 고용안정성 향상에 주안점을 둠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원',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의 정부 지원사업과 더불어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운영' 사업이 있음

– 충북지역 거주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아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아이사랑보너스카드'를 발급하여 다자녀우대카드 가맹업소에서 이용 시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함

〈표 3-5〉 충청북도 일-가정 양립,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 구분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추진 현황(백만원) | | 비고 |
|---|---|---|---|---|---|---|
| | | | | 2016년 | 2017년 | |
| 일 가정 양립 | 가족친화인증 기관 확대 지원 | 도내 기관 · 기업 | •지역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신청 설명서 및 홍보책자 제작 등 | 7.0 | – | 자체 사업 |
| | 대체인력뱅크 운영 | 도청 내 직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 인력 지원 | 76.0 | – | 자체 |
| | 육아휴직수당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가정 | •정부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 | – | 219.0 | 자체 |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원 | –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보수 지원 | – | 18.4 | 자체 |
|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도청 내 직원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가족사랑실천 | – | – | 비예산 |
|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운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막내아 기준 만12세까지 | •지역업체 참여 자율 할인 (2%~20%) (학원, 유아용품업체, 이미용, 음식업, 안경점, 사진관 등) | – | – | 자체 사업 |

28) 박종서 · 김문길 · 임지영, 일 · 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표 3-7〉 충청북도의 육아 및 보육정책(계속)

| 구분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추진 현황(백만원) | | 비고 |
|---|---|---|---|---|---|---|
| | | | | 2016년 | 2017년 | |
| 보육 | 어린이집 지원 | 관내 어린이집 | •교재 · 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 8,110.8 | 896.8 | 국비 지원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 관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신 · 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 | 585.8 | 563.8 | 국비 지원 |
| | 누리과정 운영 | 만3~5세아 | •정부지원 정책에 따라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 29,700.0 | 83,478.2 | 자체 |
| |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 어린이집 교사 |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 지원 등 | 67.5 | 67.5 | 국비 지원 |
| | 어린이집 평가 인증 지원사업 | 관내 어린이집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지원 | 104.8 | 66.0 | 자체 |
| | 어린이집 다문화 영유아 교육지원 | 다문화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다문화 영유아의 교육 지원 | 10.0 | 10.0 | 자체 |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 2,654.4 | 3,174.5 | 국비 지원 |
| |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 사업 | 영유아 가정 및 관내 어린이집 |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해 도서 및 장난감 대여 | 40.0 | 40.0 | 자체 |
| |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지원 | 관내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 52.0 | 52.0 | 자체 |
|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관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51.5 | 70.0 | 국비 지원 |
| |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 양육수당 대상 아동 | •시간제 보육료 지원 | 384.8 | 359.6 | 국비 지원 |

## 2) 충청북도 시·군의 출산장려 정책

■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결혼·임신·출산·육아·일-가정 양립·보육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함

■ 정부 지원사업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 □ 결혼 지원 정책

○ 시·군에서 추진하는 결혼 지원 정책은 결혼지원금 지급이 주류를 이룸. 대부분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최근 들어 지원 대상을 농촌 총각에서 일반 미혼자로 확장하는 추세임

- 증평군·괴산군·음성군은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시·영동군·진천군·단양군은 미혼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금액은 200~800만원까지 다양함. 청주시는 200만원, 영동군·증평군 300만원, 진천군·괴산군·음성군 500만원, 단양군 800만원을 지원함

○ 결혼지원금 이외 정책으로는 괴산군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지원' 사업과 음성군의 '공공기관 만남의 장 마련' 사업이 있음

- 괴산군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해 결혼하는 경우 100만원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임
- 음성군의 '공공기관 만남의 장 마련' 사업은 음성군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0~30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농촌일손돕기 등의 관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고 있음.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대한 빠른 정착 지원과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함

## □ 임산부 지원 정책

○ 충청북도 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정책은 태교 및 출산 교육 등 출산 대비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청주시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충주시 '즐거운 출산준비교실', 영동군 '준비하는 어머니교실', 증평군·진천군 '임부출산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음

○ 한편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임산부 지원 정책도 눈여겨 볼 만함

– 제천시에는 특화된 한방·약초를 활용해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 영동군에서는 산부인과가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동네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며, 충주시에서는 '임신축하금'을 1회 10만원 지원함. 보은군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를 실시하고, 영동군에서는 '신혼부부 임신사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3-9〉 충청북도 시·군의 임산부 지원 정책

| 구분 | 지역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
| 임신 | 청주시 | 임산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 •태교교육 및 출산교육 |
| | 충주시 | 임신축하금 지원 | •관내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임신 20주 이상 된 임신부 | •임신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
| | | 즐거운 출산준비교실 | •관내 주소를 둔 등록 임신부 | •태교 교육, 모유수유, 산전체조 및 분만호흡등 주기별 단계교육 및 연계교육 |
| | 제천시 |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산부 |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시 진료비 최대 30만원, 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
| |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 •법적 혼인상태이며 난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부부 | •대상자 1인 총 진료비 100만원 지원 |
| | 보은군 |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 | •관내 등록 임산부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 도포 실시 |
| | 영동군 | 신혼부부 임신사전 검사비 지원 | •관내 주민등록상 혼인신고 가정 | •임신전 필수검사 기본 6종, 추가 4종 지원 |
| | | 우리동네 산부인과 운영 | •관내 임산부 및 부인과 진료 희망 여성 | •산부인과 없는 면 지역 마을을 찾아가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부인과 진료실시 |
| | | 준비하는 어머니 교실 운영 | •관내 등록 임산부 | •태교 교육, 모유수유, 산전체조 및 분만 호흡 등 주기별 단계교육 및 연계교육 |
| | 증평군 | 임부출산교실 | •보건소에 등록된 20주 이상 임부 | •태교교육 및 출산교육 |
| | 진천군 | 임부출산교실 |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 •태교 및 출산교육 |

〈표 3-10〉 충청북도 시·군의 출산장려금(지원금) 현황(계속)

| 지역 | 출생순별 지원액(천원) | | | | | | 지원대상 | 지원방식 |
|---|---|---|---|---|---|---|---|---|
|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기타 | | |
| 옥천군 | 500 | 800 | | |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 | 일시불 |
| | – | – | 5,000 (500×10월) | 5,000 (500×10월) | 5,000 (500×10월)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 | 분할 |
| 영동군 | 500 | 800 | 1,500 | 1,600 | 1,600 | | 관내 신생아 출산 전 3개월 이상 부모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일시불 |
| | 3,000 (150×20월) | 3,000 (150×20월) | 3,600 (150×24월) | 6,000 (200×30월) | 6,000 (200×30월) | | 관내 신생아 출산 전 3개월 이상 부모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분할 |
| 증평군 | 300 | 300 | | | |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 | 일시불 |
| | – | – | 600 (300×2회) | 600 (300×2회) | 2,600 (1,000×1회) +(100×10월) +(600×1회) | 여섯째 이상 4,600 (1,600×1회) +(200×10월)+ (1,000×1회)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 | 분할 |
| 진천군 | 500 | | | |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 | 일시불 |
| | – | – | – | 10,000 (1,000×10월) | 2,600 (200×11월) +(200×11월) +(400×1월) | 여섯째 이상 7,600 (600×11월) +(1,000×1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 | 분할 |
| 괴산군 | – | 800 (50×12월) +(200×1회) (첫돌) | 7,600 (첫돌 1,000 두돌 1,600 세돌 2,000 네돌 3,000) | 7,600 (첫돌 1,000 두돌 1,600 세돌 2,000 네돌 3,000) | 7,600 (첫돌 1,000 두돌 1,600 세돌 2,000 네돌 3,000) | |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 | 분할+일시 |
| 음성군 | 300 | | | |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 | 일시불 |
| 단양군 | 200 | | | | | | 첫째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일시불 |
| | | 1,200 (100×12월) | 2,400 (200×12월) | 2,400 (200×12월) | 2,400 (200×12월) | | 출산일 기준 모가 1년 이상 관내 거주 | 분할 |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2017, 재구성

## □ 육아 지원 정책

○ 육아 지원 정책 중 가장 많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건강교실 및 놀이교실임

–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건강·놀이교실은 충주시·옥천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 등 5개 지역에서 추진 중임

○ 한편 청주시의 '가정방문보육 바우처' 사업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육아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가정방문보육 바우처'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만0~5세 영유아가 대상이며, 월 160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육료 일부가 지원됨

〈표 3-12〉 충청북도 시·군의 육아 지원 정책

| 구분 | 지역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
| 육아 | 청주시 |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 | •육아카페, 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일시 보육실, 놀이자람터, 상담지원 등 운영 |
| | | 가정방문보육 바우처 | •취업부모 및 맞벌이가정 (0~5세) | •가정 보육비 지원(160시간/월 170천원) |
| | 충주시 | 영유아 건강교실 | •관내 주소를 둔 3~6개월 아기를 둔 부모 | •초보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운동과 육아법 교육·베이비마사지 단계별(5단계) 교육 및 실습, 이유식 교육 |
| | 옥천군 |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 •관내 출생 3개월 이내의 영아 |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수술비, 입원비 등 지원 |
| | |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식재료 및 가공된 간식 현물 지원 |
| | | 한방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 교실 |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0~6세) | 한의사가 아이성장발달 및 건강에 대한 공감교육 실시 |
| | 영동군 | 아빠와 함께하는 주말요리교실 | •아빠와 함께 참여가능한 희망가족 | •주말을 이용하여 아빠와 자녀가 함께 간식만들기 실습을 통해 가족화목 지원 및 아빠 육아 참여 분위기 조성 |
| | 증평군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 •출생아와 부모가 함께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1인당 2만원/월, 5년 납입, 18세 보장) |
| | | 엄마랑 아기랑 놀이교실 | •보건소에 등록된 6개월~30개월 영유아 및 양육자 |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뮤직가든 음악체험놀이 |
| | 진천군 |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학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유아 | •정부미지원 보육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본인부담금 지원 |
| | | 오감발달 놀이교실 | •관내 만6~36개월 영유아 및 부모 | •6~12개월: 감각발달놀이 및 아기마사지<br>•13~22개월: 베이비 사인 및 창의놀이<br>•23~36개월:창의놀이 및 만들기 |
| | 괴산군 | 모자 건강교실 운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임산부 요가, 영유아 이유식, 베이비 마사지 등 교육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
| | 단양군 |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 •관내 보육시설아동 | 1인당 1일 1,000원 지원 |
| | |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기활동비 지원 | •관내 보육시설 | •외부강사를 이용한 특기활동에 대한 특기활동비 지원 |

## □ 일-가정 양립 및 기타 정책

○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제천시의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과 진천군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음성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사업 등이 있음

○ 이외 기타 정책으로 시·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을 빼 놓을 수 없음. 이 사업은 출산장려 대책뿐만 아니라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한 전입 유도,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망라되어 있음

〈표 3-14〉 충청북도 시·군의 일-가정 양립 및 기타 정책

| 구분 | 지역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
| 일-가정 양립 | 제천시 |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 지원 | •제천시 맞벌이 가정 | •문화프로그램, 직장고충상담 프로그램, 부모역할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
| | 진천군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 | 음성군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 대상 남성 공무원 |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
| 기타 | 청주시 | 100만 인구 늘리기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구축- | •시민 전체 | •대학(University), 기업(Company)과 함께 가족친화 문화 형성 |
| | 옥천군 |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 | •군민 전체 | • '2030년까지 인구 7만 달성' 을 목표로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전입 유도, 정주여건 개선, 인구 늘리기 민·관협의체를 구성 |
| | 영동군 |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 •군민 전체 | •인구증가 정책지원 등 |
| | 괴산군 | 인구 늘리기 정책 | •군민 전체 | •인구증가 정책지원 등 |
| | 단양군 | 인구 늘리기 정책 -단양주소갖기- | •군민 전체 | •내 고장 주소 갖기 등 추진 |
| | | 부부애 사랑플러스사업 | •관내 기혼부부 및 예비부부 | 부부간 소통의 부재를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

## ① 프랑스 - 가족정책 표방, 다양한 가족유형 인정

○ 프랑스는 드물게 명시적으로 가족정책을 표방하는 나라[30]임. 이런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가 가족수당제도(Allocation familiale, family allowance)라 할 수 있음

- 가족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자녀연령 11세와 16세 시점에 수당 액수가 증가하여 교육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31]

○ 가족수당과 함께 양육비용의 일부를 보충해 주는 다양한 가족급여(Prestation familiales, Family benefits)가 있음

- 가족급여는 크게 가족 규모나 소득을 고려해 수평적·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는 제도와 영유아와 어린이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의 노동시간과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다양한 양육수당으로 구분됨
- 가족 규모나 소득을 고려한 가족급여로는 가족의 해체나 별거,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족지지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e, ASF, Family support allowance),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는 다자녀가구 보충수당(Complément familial, CF, Family complement), 의무 학령기인 6~18세까지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개학준비 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llowance for beginning a new school session)이 있음
- 이어 양육수당을 살펴보면, 2004년 개혁을 통해 기존 다섯 개로 구분되었던 양육보조수당들을 통합해 영유아보육수당(Prestation d'ccueil du jeune enfant, PAJE, Early childhood benefit)을 신설함. 영유아보육수당을 세분해 보면 출산·입양 축하금, 영유아기초수당, 기초수당 수급자를 위한 경제활동 자유선택수당, 기초수당 미수급자를 위한 경제활동 자유선택수당, 선택적 경제활동자유 선택수당, 보육자유선택추가수당 등임

30) 유은경, 양육수당제도 개혁을 통해서 본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2호, 2016.11, 가족수당 및 가족급여 제도 참조

31) 양정선, Zoom In, 제4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4.1.27.

○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 이외에 육아휴직, 입양장려, 주택관련 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32]

- 육아휴직제도(Le congéparental d'éucation)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하며 고용계약은 동 기간 동안 정지됨
- 입양 지원의 경우 영유아보육수당(PAJE)으로 통합·운영되며, 이에 따라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시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함
- 주택 관련 지원의 경우 주로 소득 및 자녀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주택보조금 중 '자녀수' 비중을 높이고 다자녀가족에 대해서는 주택보조금 및 주택제공 편의를 확대하고 있음

○ 그 밖에 사회보장기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3자녀 이상을 가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휴가비 지급, 휴가시설 무상 사용,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동거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동거는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e de solidaritē)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외출산도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따라서 결혼을 기피하고,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출산율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음

○ 이제까지 살펴본 프랑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특징은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공고하게 정비된 가족정책(사회복지정책), 둘째, 무상에 가까운 공교육제도 셋째, 전통적 가족주의와 더불어 비전통적 가족제도의 제도권으로의 포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32) 이문숙,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6 No. 1, 2016.1.

○ 아울러 영국은 고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형태의 경제적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탄력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 육아휴직 39주와 유급 모성휴가로 39주를 제공함
- 출산 후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20주간의 모성휴가를 남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지향함

- 영국의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2013년 이전에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었으나, 재정절감 차원에서 2013년부터는 부모 소득이 6만 파운드 미만 가구에 한하여, 자녀수를 고려해 차등지원[36]하고 있음(현금 지원)
- 첫째 혹은 외동 자녀의 경우 매주 20.70파운드(한화 약 35,000원)이 지원되고, 그 외 자녀는 매 자녀 1명당 13.70파운드(한화 약 24,000원)가 지원됨. 이에 대해서는 부모(16~64세)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총액에 대한 제한(benefit cap)이 있음
- 이외에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정유아, 장애영아 대상으로 2세에 대한 조건부 무상교육을 실시함
-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직장에서 보육바우처 제도가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에서 계약을 통해 급여와 함께 제공됨

○ 환급형 세액공제인 Child Tax Credit(CTC)와 Working Tax Credit(WTC)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37]

- CTC는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임. 부모의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16세미만(정규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경우 19세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CTC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WTC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유무, 근로여부, 근로시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혜여부를 결정함

○ 한편 영국의 출산율 증가를 논의하면서 이민정책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를 빼놓을 수 없음. 이민 완화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은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짐

---

36) 이혜원,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권미경, 전게서, 재인용

37) 이상은 · 정찬미,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2016.

### ③ 스웨덴 - 양성평등 기반의 일-가정 양립의 성공적 정착

○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부모들의 직업생활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38]될 수 있음

- 1980년 고용기회평등법안이 제정되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됨
- 특히 1988년 '성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저출산의 정책목표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이후 꾸준하게 육아휴직 제도와 직장에서의 여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

○ 우선 스웨덴의 양육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과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됨. 세제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 보편적 아동수당의 경우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 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76달러(한화 약 24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함.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며 16세 이상이 될 경우 교육 수당으로 변경됨
- 보편적 대가족 보충수당으로는 매월 130SEK(약 19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함. 가족규모가 큰 경우 국가보조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매년 소득 이외에 약 2,400SEK(약 360만원, 월 25만원) 가족수당을 제공함. 또한 가정 총 소득이 하위층에 속하는 경우 5,570SEK(약 810만원, 월 67.5만원)를 지원함
-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약 49만원)의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것임. 이 경우 배우자 중 한명은 일하고 있거나 학업 중이어야 함(지자체 선택 사항)

38) 양정선, Zoom In, 제4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4.1.27.

〈표 3-17〉 스웨덴의 아동수당 급여체계

| 아동수 | 아동수당 | 대가족 보조 | 총합 |
|---|---|---|---|
| 1 | 1,050 | – | 1,050 |
| 2 | 2,100 | 150 | 2,250 |
| 3 | 3,150 | 604 | 3,754 |
| 4 | 4,200 | 1,614 | 5,814 |
| 5 | 5,250 | 2,864 | 8,114 |

자료: Försäringskassan(2015). Child allowance and large family supplement.
이상은 · 정찬미,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201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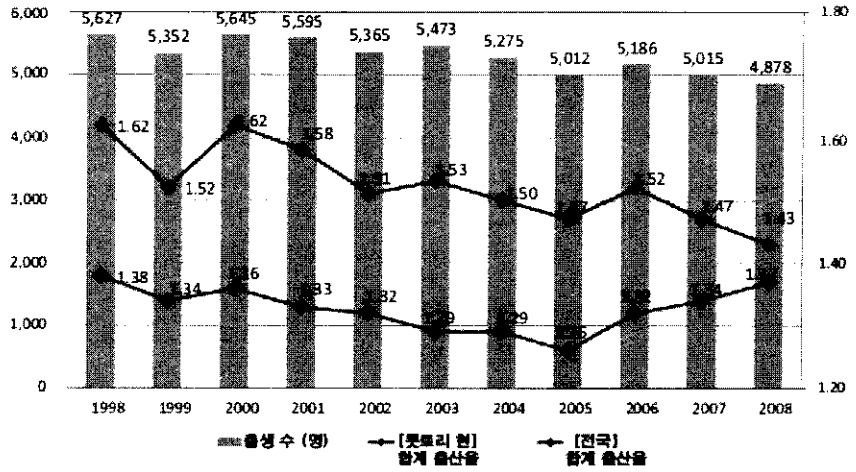
〈표 3-18〉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법 | • 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 |
| 적용 대상자 | • 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 부모, 법정 양육권자 등) |
| 육아휴직 청구 요건 | • 휴직일 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거나,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
| 육아휴직 기간 | • 자녀가 1년 6개월 될 때까지: 전일 휴직<br>•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 통상 근로시간을 1/2, 1/4로 단축함) |
| 고용 보장 | •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해고 예고 금지<br>• 휴가만료 후 그 전의 직장 또는 상당직에 복귀<br>•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음 |
| 소득 보장 | •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br>• 출생예정일 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 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여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네를 부모급여로 지급함<br>• 1/2일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한 부모급여를 지급함 |

자료: 이삼식, 외국의 보육 · 양육 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 · 복지 Issue&Focus 제169호, 2012.12.21.

〈표 3-19〉 국외 가족 정책사례 종합 - 국가 차원

| 국가 | 양육 및 보육정책 기조 | 출산 · 육아 휴직제도 | | | | 양육비 지원 제도 | | | |
|---|---|---|---|---|---|---|---|---|---|
| | | 도입 연도 | 제도명 | 적용대상 | 지원규모 | 도입 연도 | 제도명 | 적용대상 | 내용 |
| 프랑스 | 보편적, 다양한 서비스 | 1984 | 양육 보조원 고용 지원 정책 | •남녀 근로자 (친부모, 양부모, 견습근로자, 임시고용 근로자) | •자녀 3세 될 기간 동안 최고 1년(2회 갱신 가능)<br>•입양시: 3년간 | 1932 | 가족 급여법 | •임신 시점부터 자녀 취학기까지 | •가족수당<br>•다자녀가구 보충수당<br>•가족지지수당<br>•적극적 연대 소득<br>•개학수당<br>•영유아보육수당 |
| 영국 | 보편적 공교육 민간 혼합 서비스 | 2002 | 육아 휴직, 입양 휴직 정책 | •16세 미만 자녀까지 탄력근무 청구권 확대 | •유급모성 휴가:26주<br>•부모휴가: 13주(일반) 18주(장애) 연장 최장 4주 활용 가능 | 1945 | 가족수당 제도 | •출산 후 16세까지 | •아동수당<br>•아동 부양 가구의 조세 지원 등 |
| 스웨덴 | 보편적 공교육 서비스 | 1975 | 부모 보험법 | •남녀 근로자 (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 양육자) | •480일간 부 또는 모 각각 60일 사용, 나머지는 부모 선택<br>•자녀가 1년6개월 될 때까지 전일<br>•자녀가 8세, 혹은 초등1학년 마칠때까지 시간단축 | 1948 | 아동수당 | •생후 첫달부터 16세 첫분기까지 | •보편적 아동수당 – 자녀 2명 이상 대가족 보충수당<br>•가정양육수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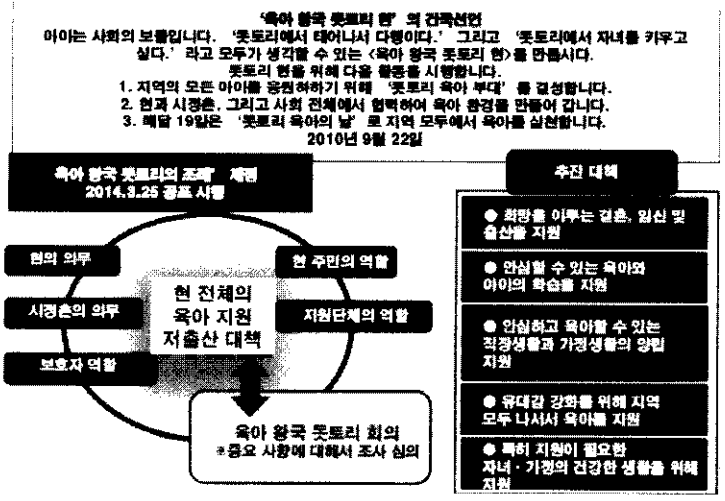

이미지: 키모토 미키, '육아 왕국 톳토리의 방안 - 만남, 임신, 출산, 육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저출산 대응 및 일 · 가정양립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 2017.6.7.

〈그림 3-2〉 돗토리현의 합계출산율 추이

○ 본 절에서는 돗토리현의 출산장려 정책을 '출산장려 정책의 시작 – 육아왕국 돗토리의 건국선언', '결혼', '임신·출산', '육아', '일-가정 양립' 등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함

### ① 출산장려 정책의 시작 – 육아왕국 돗토리의 건국선언

○ 돗토리현은 2010년 9월 '육아왕국 돗토리현'을 만들기 위한 건국선언을 발표함. 이 선언에는 '돗토리 육아부대' 결성, '돗토리 육아의 날' 제정과 더불어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음




이미지: 키모토 미키,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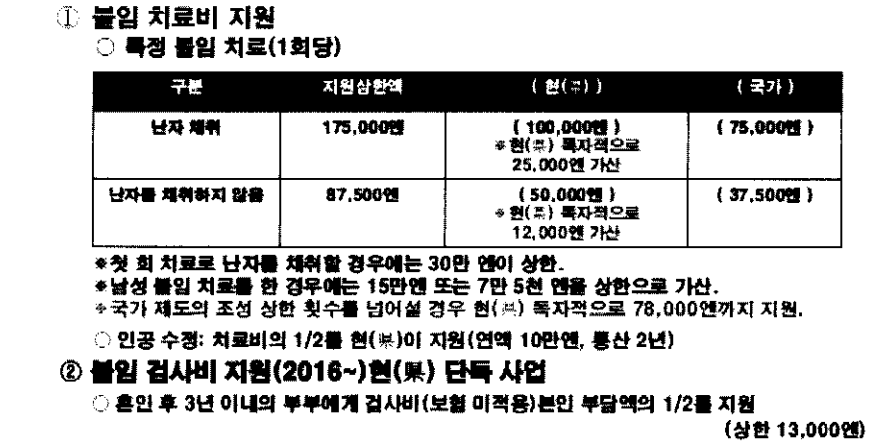
〈그림 3-3〉 육아왕국 돗토리현 건국선언

### ③ 임신 · 출산 지원

○ 돗토리현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불임 치료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임

– 체외 수정·현미 수정·남성 불임 치료 및 인공 수정 등을 시도함에 있어 국가 지원기준 이상 드는 비용은 현(県) 자체적으로 지원함

– 또 혼인 후 3년 이내 부부의 경우 불임 검사비 본인 부담액의 1/2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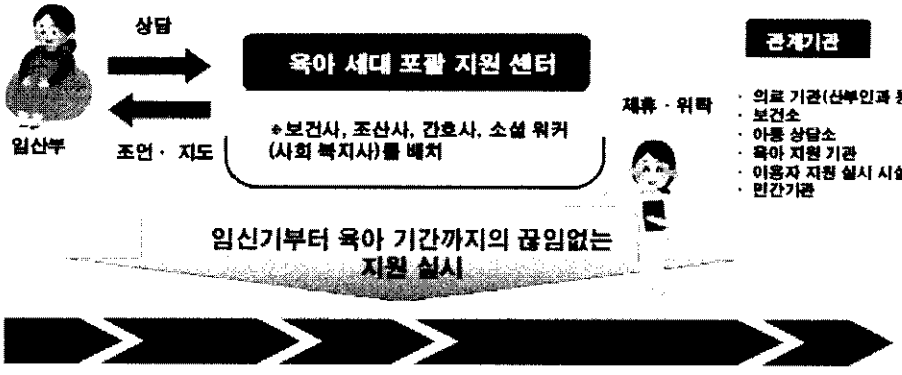

이미지: 키모토 미키, 전게서

〈그림 3-6〉 돗토리현의 불임치료비 지원 체계

○ 돗토리판 네우블라(neuvola) 역시 임신·출산의 대표적인 정책임

– 핀란드의 양육 가정지원제도인 '출산자녀 네우블라'를 참고한 정책으로 임신기부터 육아기간 상담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임

– 산전·산후의 상담뿐만 아니라 헬퍼 파견이나 탁아, 쇼트 스테이 등을 지원함




이미지: 키모토 미키, 전게서

〈그림 3-7〉 돗토리판 네우블라(neuvola)

### ⑤ 일-가정 양립 지원

○ 돗토리현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에게 육아 휴직 등을 시행한 직원 수 100명 이하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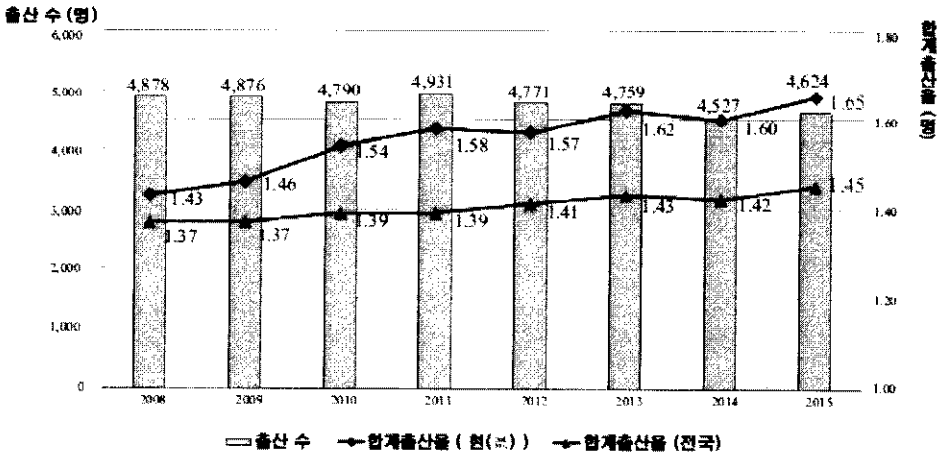
○ 그리고 남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기업을 '남녀 공동 참여 추진 기업'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함

○ '육아 왕국 돗토리현' 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발하고, 지역활동·워크 라이프 밸런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해당 기업의 인정상황을 별표(★)수로 표시하여 공표함

○ 돗토리현만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특성은 조부모 세대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임

-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 육아 강좌를 개설하고 조부모 수첩을 발생하여, 조부모세대와 젊은 부모와의 양육의 감각차이를 좁히도록 함
- 3세대가 같이 살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하고, 주택의 신축 및 개수를 지원함. 특히 육아세대가 있고 새로 3세대가 동거할 경우 신축은 15만엔, 개축은 10만엔을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을 발표한 이래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한 돗토리현은 2008년 1.43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15년 1.65명까지 상승시키는데 성공함




이미지: 키모토 미키, 전게서

〈그림 3-8〉 돗토리현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2008~2015)

○ 해남군 출산장려 정책의 성과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큰 성과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꾸준히 공을 들여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임

### ② 수혜자 중심 지원정책

○ 출산장려 정책의 시작은 임산부 및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해남군 역시 임산부와 양육 부모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우선 출산지원금(장려금) 정책의 경우 양육 부모의 현실을 감안해 필요한 실제 비용을 월별로 나눠 지원함

- 신생아 출생 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함
- 이는 1회 전액 지급이 아닌 양육보조금으로 월별 분할 지급함. 예를 들어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씩 생후 18개월까지 지급함

○ 또한 난임부부의 경우 인공 및 체외 수정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남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의료실비와 교통비 등 본인부담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임산부 의견을 반영하여 기형아 예방을 위한 초음파 검사 이외에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 검사를 확대 실시함

### ③ 출산 ·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 출산 후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위해 대도시로 가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종합병원 별관에 신축함

- 산후조리원은 5.5평 크기의 방 10개에서 산모 10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신생아실,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울러 산모 10명이 피부와 경혈관리, 전신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음
- 도시지역보다 20~30% 정도 저렴한 이용료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예약자가 줄을 서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셋째이상 출생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줌. 매월 3만원씩 5년납 10년 보장으로 출생아 명의로 가입해 질병시 본인부담분의 치료비로 사용하게 되는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고, 만기 환급금은 교육비로 부모에게 지급함

○ 더불어 해남 지역 주간지인 우리신문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라는 코너에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게재함. 부모의 덕담과 함께 부모이름, 주소, 아이 얼굴까지 게재해 지역민들 간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재능기부를 통한 '신생아 무료 이름지어주기 사업' 또한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해남군 향교 작명례 회장의 재능기부로 부모가 원하는 이름을 무료로 지어주고 작명 해설서와 함께 명첩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사업으로 5년째 시행되고 있음

### 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 노력

○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땅끝 아빠캠프'와 '초보아빠 해피스쿨' 사업을 진행함

- 이 사업은 아빠와 자녀간의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가정에서 아빠가 가사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일-가정의 양립과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민과 함께하는 '유모차 행진 음악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됨

- 다둥이상·늦둥이상·4세대 가족상 등 출산관련 최고 가족을 선정해 시상하기도 함
- 음악회 이후에는 유모차를 끌고 참가자들이 해남읍 시가지 행진을 하며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임



이미지: 해남우리신문 2015.11.10. 기사(http://www.hnwo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10)

〈그림 3-10〉 해남군 '유모차 행진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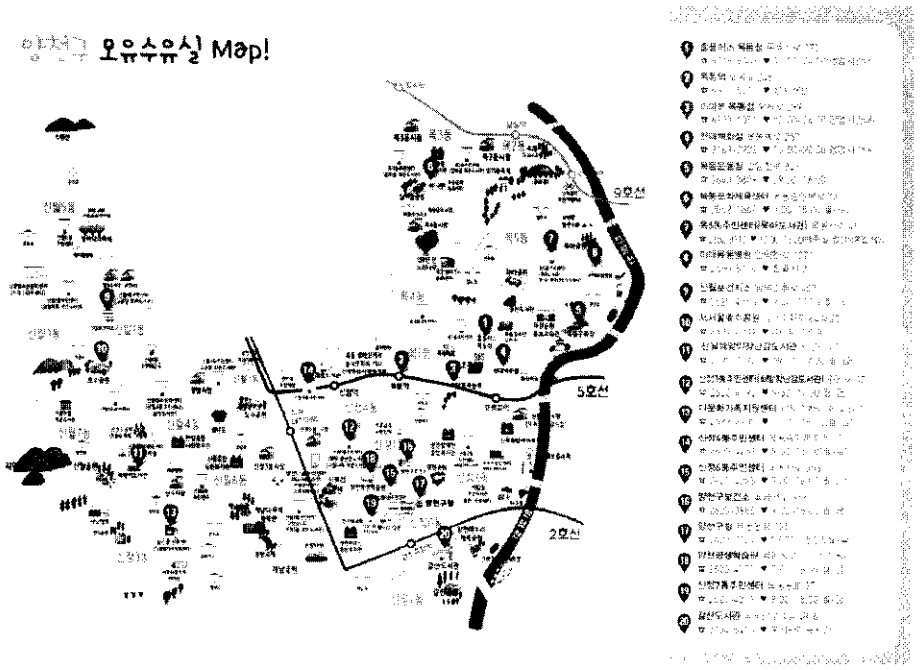
## □ 서울시 양천구 - 출산친화도시 표방

○ 양천구는 2016년 9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감

○ 양천구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9개 영역 51개 세부사업을 마련함

- 청년 일자리·주거·결혼·출산 지원 분야: 출산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 자녀양육 부담 경감 분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아동발달 지원 계좌 운영 등 20개 사업
-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직원 유연근무제 운영,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등 8개 사업
- 출산 장려 사회 환경 조성 분야: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유모차보관대 설치 등 10개 사업

○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8월 모유수유 장소를 찾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모유수유실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한 바 있음




이미지: 양천구청장 김수영 네이버 블러그(http://blog.naver.com/kimsy2014/221076906291)

〈그림 3-11〉 양천구 모유수유실 안내지도

#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 결과
3.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관련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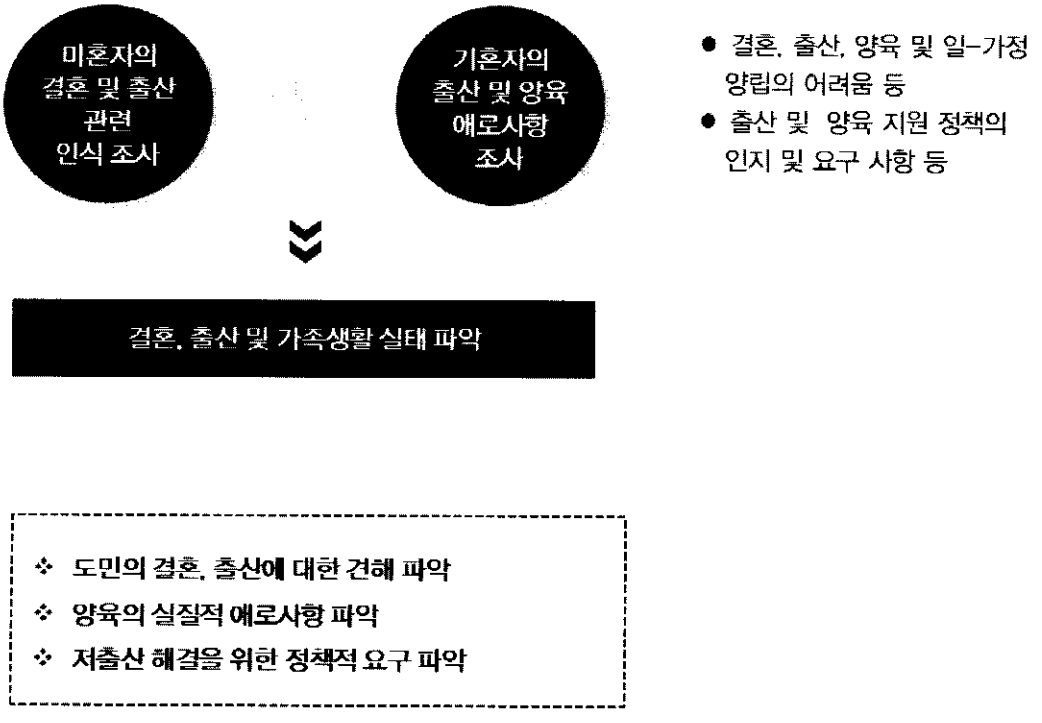
# Ⅳ.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

## 1. 조사 개요

### 1) 조사 내용 및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충청도민의 결혼·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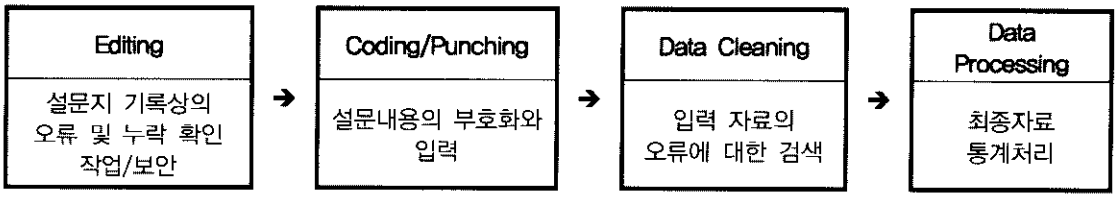
○ 본 조사는 크게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조사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과 양육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조사로 구분됨




〈그림 4-1〉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의 내용 및 목적

##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과정을 거친 후 Excel 2013 및 SPSS 20.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함




〈그림 4-2〉 자료처리 진행 과정

## 4) 설문지 구성 체계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15개 문항, 기혼자의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 실태 12개 문항, 미혼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20개 문항,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 17개 문항, 건의 사항 1개문항, 응답자 일반사항 8개 문항 등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함

〈표 4-2〉 결혼·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

| 설문 내용 | | | 비고 |
|---|---|---|---|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 공통 |
| | 적정 결혼 연령에 대한 견해 | 남성의 결혼 적정 연령 | |
| | | 여성의 결혼 적정 연령 | |
| | 결혼관 | 출산을 생각해서 결혼을 빨리하는 것이 좋은가 | |
| | | 직업을 갖기 전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좋은가 | |
| | | 결혼은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가 | |
| | |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인가 | |
| | | 결혼을 하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가 | |
| | | 한국사회에서 결혼제도는 여성에서 불리한가 | |
| |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자녀 필요성 | |
| | |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 질문 | |
| | |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 질문 | |
| | 출산 및 출산시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 | |
| | 미혼여성의 임신에 대한 생각 | | |
| 결혼 여부 | 미혼과 기혼 구별 | | |

〈표 4-2〉 결혼·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계속)

| 설문 내용 | | | 비고 |
|---|---|---|---|
|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 공통 |
| | 결혼·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결혼·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인지도 | |
| | | 결혼·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알고 있는 정책 재질문 | |
| |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 | |
| | 출산 및 보육지원 기관의 인지도,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지역아동센터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 |
| | |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 |
| | | 직장 어린이집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 |
|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 |
| | 출산 및 보육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이용경험,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 | 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출산장려금(축하금)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영유아 보육료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가정양육수당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다자녀 우대카드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의 인지 여부, 이용 경험,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결혼·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나 개선사항 | | | |
|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가족 구성, 가구 소득, 주택소유형태 | | 공통 |

〈표 4-3〉 조사 대상자 특성(계속)

| 구 분 | | 표본수(명)[46] | 비율(%) | 비고 |
|---|---|---|---|---|
| 학력 | 중학교 졸업 | 15 | 1.2 | •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음 |
| | 고등학교 졸업 | 433 | 34.1 | |
| | 전문대학 졸업 | 331 | 26.0 | |
| | 대학교(4년제) 졸업 | 442 | 34.8 | |
| | 대학원 졸업 이상 | 50 | 3.9 | |
| 직업 | 경영 · 관리직 | 38 | 3.0 | •사무직 22.5% → 학생 12.7% → 전업주부 12.6% 순임 |
| | 전문직 | 147 | 11.6 | |
| | 기술직 | 57 | 4.5 | |
| | 사무직 | 285 | 22.5 | |
| | 서비스 · 영업직 | 145 | 11.5 | |
| | 자영업 | 82 | 6.5 | |
| | 생산 · 단순노무직 · 기능직 | 95 | 7.5 | |
| | 농업 · 임업 · 축산업 | 4 | 0.3 | |
| | 전업주부 | 159 | 12.6 | |
| | 무직 | 52 | 4.1 | |
| | 학생 | 161 | 12.7 | |
| | 기타 | 39 | 3.1 | |
| 가족 구성 | 부부 | 103 | 8.1 | • '부부+자녀' 가 53.8%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 | 부부+자녀 | 684 | 53.8 | |
| | 부부+부모 | 15 | 1.2 | |
| | 부부+부모+자녀 | 72 | 5.7 | |
| | 부부+손자녀 | 6 | 0.5 | |
| | 미혼 형제 · 자매 · 친척 | 86 | 6.8 | |
| | 1인 가구 | 240 | 18.9 | |
| | 비혈연가구 | 6 | 0.5 | |
| | 기타 | 60 | 4.7 | |
| 가구 월소득 | 100만원 미만 | 56 | 4.6 | •250~300만원 미만 18.0% → 200~250만원 미만 15.6% → 150~200만원 미만 14.4% 순임 |
| | 100~150만원 미만 | 68 | 5.5 | |
| | 150~200만원 미만 | 177 | 14.4 | |
| | 200~250만원 미만 | 192 | 15.6 | |
| | 250~300만원 미만 | 221 | 18.0 | |
| | 300~350만원 미만 | 157 | 12.8 | |
| | 350~400만원 미만 | 132 | 10.7 | |
| | 400~500만원 미만 | 106 | 8.6 | |
| | 500만원 이상 | 121 | 9.8 | |
| 주택 소유 형태 | 자가 | 611 | 50.5 | •자가 50.5% → 전세 26.7% → 보증금 있는 월세 18.1% 순임 |
| | 전세 | 323 | 26.7 | |
| | 보증금 있는 월세 | 219 | 18.1 | |
| | 보증금 없는 월세 | 16 | 1.3 | |
| | 사글세 | 5 | 0.4 | |
| | 무상 | 36 | 3.0 | |

46)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미혼 여성이 결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결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것은 미혼 여성인 것으로 분석됨

-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결혼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미혼 여성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36.0%로 낮게 나타났음

〈표 4-4〉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조사' 교차분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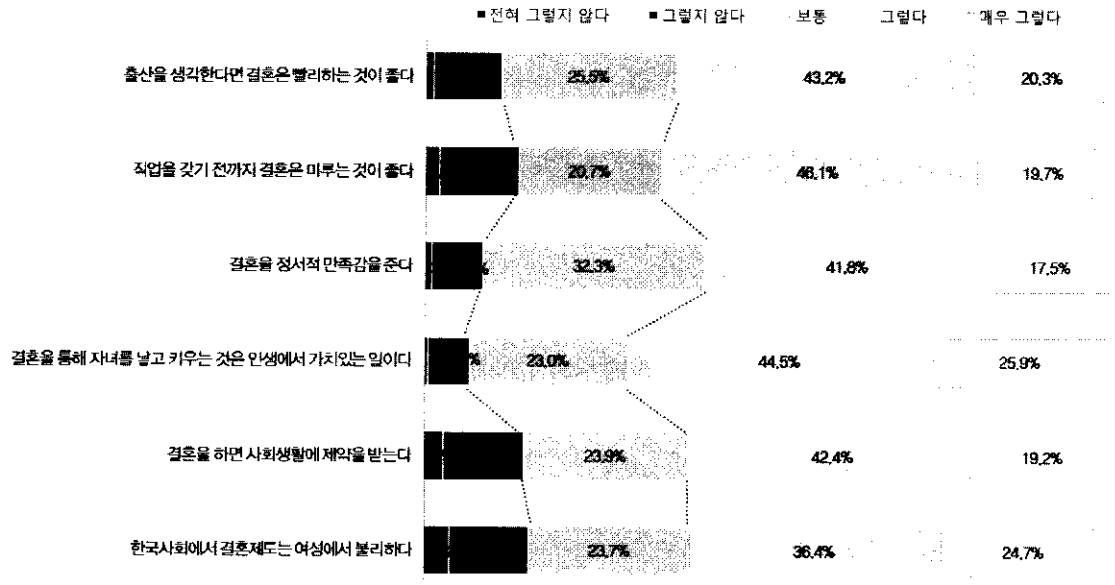
| 구분 | | 꼭 해야 한다 | 하는 편이 좋다 |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 하지 않는 편이 낫다 |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 잘 모르겠다 | 계 | (명) |
|---|---|---|---|---|---|---|---|---|---|
| 기혼 ($x2 = 24.5^{***}$) | 남 | 32.3 | 35.0 | 22.9 | 3.9 | 2.0 | 3.9 | 100.0 | 254 |
| | 여 | 20.1 | 33.1 | 38.6 | 4.0 | 2.6 | 1.6 | 100.0 | 378 |
| 미혼 ($x2 = 46.2^{***}$) | 남 | 25.7 | 33.1 | 27.2 | 5.8 | 1.2 | 7.0 | 100.0 | 257 |
| | 여 | 9.7 | 26.3 | 40.1 | 12.2 | 4.3 | 7.4 | 100.0 | 392 |
| 연령 ($x2 = 51.1^{***}$) | 20~24세 | 12.6 | 29.3 | 37.7 | 8.4 | 2.6 | 9.4 | 100.0 | 191 |
| | 25~29세 | 22.3 | 31.9 | 31.8 | 5.6 | 2.0 | 6.4 | 100.0 | 251 |
| | 30~34세 | 18.2 | 32.5 | 31.1 | 8.6 | 3.6 | 6.0 | 100.0 | 302 |
| | 35~39세 | 26.1 | 31.2 | 29.2 | 8.0 | 3.5 | 2.0 | 100.0 | 199 |
| | 40~44세 | 15.9 | 32.6 | 39.2 | 5.8 | 3.6 | 2.9 | 100.0 | 138 |
| | 45~50세 | 27.3 | 29.5 | 35.6 | 5.3 | 1.5 | 0.8 | 100.0 | 132 |
| | 50세 이상 | 27.3 | 30.9 | 38.2 | 1.8 | 0.0 | 1.8 | 100.0 | 55 |
| 학력 ($x2 = 26.4$) | 중학교 | 40.0 | 26.7 | 20.0 | 0.0 | 6.7 | 6.6 | 100.0 | 15 |
| | 고등학교 | 18.9 | 28.6 | 37.4 | 6.9 | 2.8 | 5.4 | 100.0 | 433 |
| | 전문대학 | 23.6 | 32.9 | 28.7 | 4.8 | 3.1 | 6.9 | 100.0 | 331 |
| | 대학교 | 18.8 | 32.8 | 35.1 | 8.1 | 2.3 | 2.9 | 100.0 | 442 |
| | 대학원 이상 | 26.0 | 30.0 | 26.0 | 8.0 | 4.0 | 6.0 | 100.0 | 50 |
| 월소득 ($x2 = 65.9$) | 100만원 미만 | 30.4 | 28.6 | 30.4 | 0.0 | 0.0 | 10.7 | 100.0 | 56 |
| | 100~150만원 미만 | 20.6 | 42.6 | 29.4 | 1.5 | 0.0 | 5.9 | 100.0 | 68 |
| | 150~200만원 미만 | 13.6 | 30.5 | 40.1 | 6.2 | 5.1 | 4.5 | 100.0 | 177 |
| | 200~250만원 미만 | 20.8 | 29.2 | 31.8 | 10.4 | 3.1 | 4.7 | 100.0 | 192 |
| | 250~300만원 미만 | 19.0 | 33.5 | 28.5 | 10.0 | 2.7 | 6.3 | 100.0 | 221 |
| | 300~350만원 미만 | 21.0 | 35.0 | 33.1 | 4.5 | 2.5 | 3.8 | 100.0 | 157 |
| | 350~400만원 미만 | 32.6 | 25.8 | 30.3 | 8.3 | 0.8 | 2.3 | 100.0 | 132 |
| | 400~500만원 미만 | 19.8 | 34.9 | 34.0 | 6.6 | 0.9 | 3.8 | 100.0 | 106 |
| | 500만원 이상 | 18.2 | 27.3 | 41.3 | 6.6 | 4.1 | 2.5 | 100.0 | 121 |

주: *p<0.05, **p<0.01, ***p<0.001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결혼관

▶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 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결혼이 여성에서 불리하다'** 는 생각이 큼

○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결혼을 하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한국사회에서 결혼제도가 여성에서 불리하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해 있음




| 구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②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④+⑤ | 계 |
|---|---|---|---|---|---|---|---|---|
|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은 빨리하는 것이 좋다 | 14 (1.1) | 128 (9.9) | 142 (11.0) | 331 (25.5) | 558 (43.2) | 262 (20.3) | 820 (63.5) | 1,293 (100.0) |
| 직업을 갖기 전까지 결혼은 미루는 것이 좋다 | 24 (1.9) | 150 (11.6) | 174 (13.5) | 268 (20.7) | 595 (46.1) | 255 (19.7) | 850 (65.8) | 1,292 (100.0) |
| 결혼은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 | 11 (0.9) | 97 (7.5) | 108 (8.4) | 417 (32.3) | 540 (41.8) | 226 (17.5) | 766 (59.3) | 1,291 (100.0) |
|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 6 (0.5) | 79 (6.1) | 85 (6.6) | 297 (23.0) | 575 (44.5) | 334 (25.9) | 909 (70.4) | 1,291 (100.0) |
| 결혼을 하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 35 (2.7) | 153 (11.8) | 188 (14.5) | 309 (23.9) | 548 (42.4) | 248 (19.2) | 796 (61.6) | 1,293 (100.0) |
| 한국사회에서 결혼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다 | 46 (3.6) | 149 (11.6) | 195 (15.2) | 307 (23.7) | 469 (36.4) | 319 (24.7) | 788 (61.1) | 1,290 (100.0)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5〉 결혼관

**▶ 미혼 여성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필요하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것은 미혼 여성임

– 미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 20~24세에는 14.8%, 35~39세 36.5%, 45~50세 53.5%로 차이가 남

〈표 4-5〉 '자녀 필요성' 교차분석

(단위: %, 명)

| 구분 | | 꼭 있어야 한다 | 가능하면 있는 것이 좋다 |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 가능하면 없는 것이 좋다 | 없는 것이 훨씬 낫다 | 잘 모르겠다 | 계 | (명) |
|---|---|---|---|---|---|---|---|---|---|
| 기혼 ($x2 = 3.6$) | 남 | 42.7 | 36.8 | 16.1 | 1.2 | 0.4 | 2.8 | 100.0 | 253 |
| | 여 | 44.7 | 34.5 | 16.3 | 2.1 | 1.1 | 1.3 | 100.0 | 374 |
| 미혼 ($x2 = 63.1^{***}$) | 남 | 35.4 | 36.2 | 18.5 | 2.4 | 1.2 | 6.3 | 100.0 | 254 |
| | 여 | 11.7 | 36.0 | 37.5 | 4.7 | 2.1 | 8.0 | 100.0 | 386 |
| 연령 ($x2 = 108.3^{***}$) | 20~24세 | 14.8 | 40.7 | 27.6 | 5.8 | 2.6 | 8.5 | 100.0 | 189 |
| | 25~29세 | 29.5 | 36.7 | 23.0 | 3.6 | 0.4 | 6.8 | 100.0 | 251 |
| | 30~34세 | 26.1 | 33.8 | 30.8 | 2.3 | 1.3 | 5.7 | 100.0 | 299 |
| | 35~39세 | 36.5 | 37.6 | 19.4 | 2.0 | 1.5 | 3.0 | 100.0 | 197 |
| | 40~44세 | 38.0 | 37.2 | 20.4 | 0.7 | 1.5 | 2.2 | 100.0 | 137 |
| | 45~50세 | 53.5 | 28.7 | 14.6 | 1.6 | 0.8 | 0.8 | 100.0 | 129 |
| | 50세 이상 | 54.5 | 34.5 | 9.2 | 1.8 | 0.0 | 0.0 | 100.0 | 55 |
| 학력 ($x2 = 16.6$) | 중학교 | 60.0 | 20.0 | 13.3 | 0.0 | 0.0 | 6.7 | 100.0 | 15 |
| | 고등학교 | 34.0 | 34.5 | 21.7 | 2.8 | 1.4 | 5.6 | 100.0 | 429 |
| | 전문대학 | 32.5 | 37.1 | 23.6 | 2.5 | 0.6 | 3.7 | 100.0 | 326 |
| | 대학교 | 29.0 | 35.4 | 26.2 | 3.2 | 1.6 | 4.6 | 100.0 | 438 |
| | 대학원 이상 | 38.8 | 38.8 | 16.4 | 2.0 | 2.0 | 2.0 | 100.0 | 49 |
| 월소득 ($x2 = 63.1$) | 100만원 미만 | 33.3 | 42.6 | 18.5 | 1.9 | 0.0 | 3.7 | 100.0 | 54 |
| | 100~150만원 미만 | 38.8 | 31.3 | 17.9 | 1.6 | 0.0 | 10.4 | 100.0 | 67 |
| | 150~200만원 미만 | 28.3 | 34.1 | 30.0 | 1.2 | 1.2 | 5.2 | 100.0 | 173 |
| | 200~250만원 미만 | 28.4 | 34.7 | 21.6 | 2.6 | 3.2 | 9.5 | 100.0 | 190 |
| | 250~300만원 미만 | 28.1 | 35.3 | 28.4 | 4.1 | 0.5 | 3.6 | 100.0 | 221 |
| | 300~350만원 미만 | 36.3 | 36.3 | 21.1 | 2.5 | 0.6 | 3.2 | 100.0 | 157 |
| | 350~400만원 미만 | 39.2 | 34.6 | 20.8 | 3.8 | 0.8 | 0.8 | 100.0 | 130 |
| | 400~500만원 미만 | 42.9 | 29.5 | 21.0 | 3.7 | 1.0 | 1.9 | 100.0 | 105 |
| | 500만원 이상 | 31.1 | 44.5 | 18.6 | 2.5 | 0.8 | 2.5 | 100.0 | 119 |

주: *p<0.05, **p<0.01, ***p<0.001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자녀를 꺼리는 이유

### ▶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함

○ 자녀가 '가능하면 없는 것이 좋다', '없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기혼자의 58.8%, 미혼자의 48.3%가 1순위로 꼽음

○ 2순위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임

- 기혼자의 23.4%, 미혼자의 22.8%가 2순위로 꼽았음

〈표 4-7〉 자녀를 꺼리는 이유

(단위: 명, %)

| 구분 | 기혼자 | | 미혼자 | | 계 |
|---|---|---|---|---|---|
|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
|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 30<br>(58.8) | 3<br>(6.4) | 28<br>(48.3) | 6<br>(10.5) | 100<br>(40.7) |
|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 3<br>(5.9) | 2<br>(4.3) | 5<br>(8.6) | 12<br>(21.1) | 22<br>(8.9) |
|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 2<br>(3.9) | 3<br>(6.4) | 4<br>(6.9) | 6<br>(10.5) | 15<br>(6.1) |
|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 5<br>(9.8) | 12<br>(25.5) | 3<br>(5.2) | 7<br>(12.3) | 27<br>(11.0) |
|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 7<br>(13.7) | 11<br>(23.4) | 13<br>(22.4) | 13<br>(22.8) | 44<br>(17.9) |
| 출산 시 겪는 고통이 두려워서 | 0<br>(0.0) | 2<br>(4.3) | 1<br>(1.7) | 4<br>(7.0) | 7<br>(2.8) |
|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심리적 부담감 포함) | 4<br>(7.8) | 14<br>(29.8) | 4<br>(6.9) | 8<br>(14.0) | 30<br>(12.2) |
| 기타 | 0<br>(0.0) | 0<br>(0.0) | 0<br>(0.0) | 1<br>(1.8) | 1<br>(0.4) |
| 계 | 51<br>(100.0) | 47<br>(100.0) | 58<br>(100.0) | 57<br>(100.0) | 246<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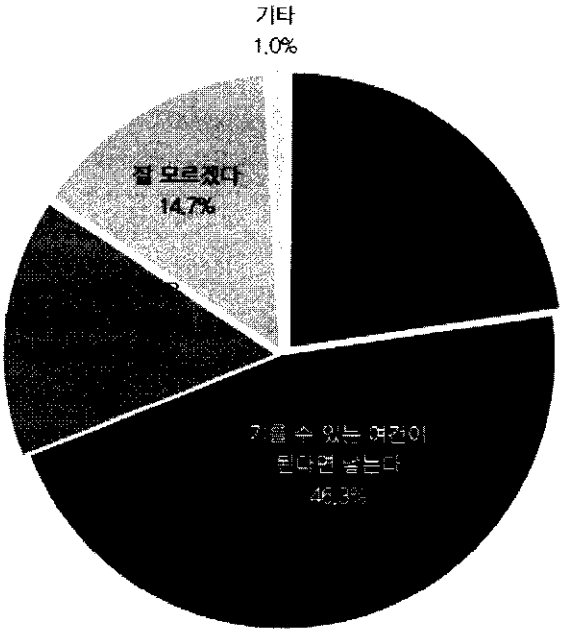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미혼여성의 임신에 대한 견해

▶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낳는다'** 라는 응답이 전체의 **46.3%**를 차지함

○ 미혼 여성이 결혼과 관계없이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낳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46.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생명은 소중하므로 당연히 낳아야 한다' 22.7%, '미혼모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낳아서는 안 된다' 15.3% 순으로 나타남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1,236 | 100.0 |
| 생명은 소중하므로 당연히 낳아야 한다 | 280 | 22.7 |
|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낳는다 | 572 | 46.3 |
| 미혼모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낳아서는 안 된다 | 189 | 15.3 |
| 잘 모르겠다 | 182 | 14.7 |
| 기타 | 13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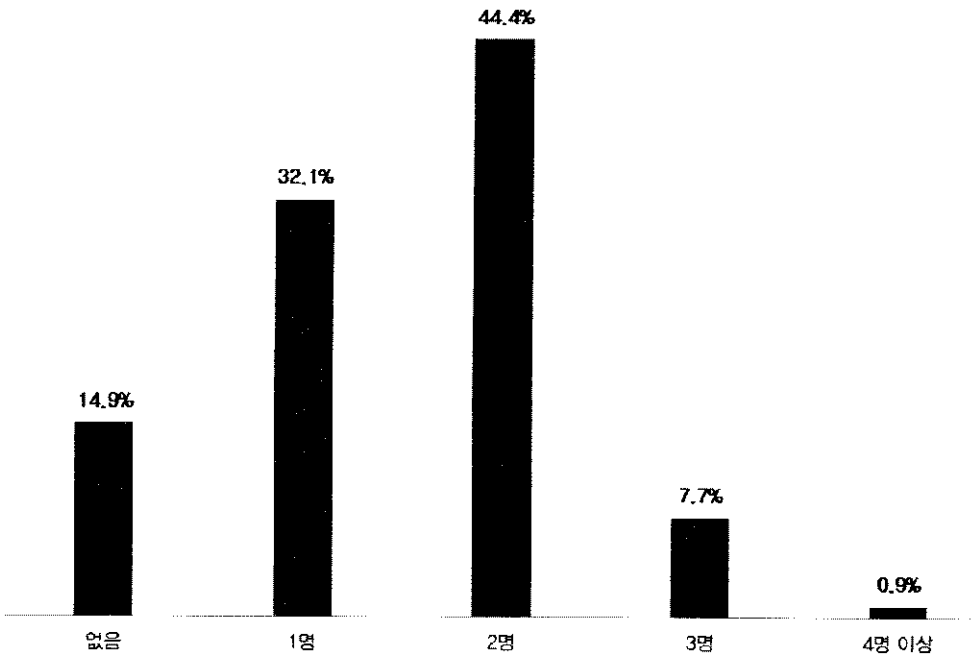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8〉 미혼여성의 임신에 대한 견해

## □ 현 자녀수

▶ **'2명' 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명' 32.1%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자녀수를 묻는 질문에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명' 32.1%, '자녀 없음' 14.9% 순으로 나타남




| 구분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계 |
|---|---|---|---|---|---|---|
| 응답자수(명)<br>(응답률 %) | 95<br>(14.9) | 205<br>(32.1) | 284<br>(44.4) | 49<br>(7.7) | 6<br>(0.9) | 639<br>(100.0)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10〉 현 자녀수

## □ 추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

▶ **'있는 자녀만이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함

○ 앞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있는 자녀만이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였음

- 남성의 26.9%, 여성의 28.2%가 1순위로 꼽음

○ 추가 출산을 꺼리는 2순위 이유는 '양육비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임

- 남성의 29.6%, 여성의 24.2%가 2순위로 꼽았음

〈표 4-8〉 추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

(단위: 명, %)

| 구분 | 남 | | 여 | | 계 |
|---|---|---|---|---|---|
|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
|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 | 39<br>(26.9) | 14<br>(10.4) | 52<br>(20.6) | 16<br>(7.3) | 121<br>(16.1) |
| 있는 자녀만이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 39<br>(26.9) | 33<br>(24.4) | 71<br>(28.2) | 44<br>(20.1) | 187<br>(24.9) |
| 아이를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 8<br>(5.5) | 10<br>(7.4) | 12<br>(4.8) | 21<br>(9.6) | 51<br>(6.8) |
| 양육비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 26<br>(17.9) | 40<br>(29.6) | 38<br>(15.1) | 53<br>(24.2) | 157<br>(20.9) |
|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 0<br>(0.0) | 6<br>(4.4) | 3<br>(1.2) | 19<br>(8.7) | 28<br>(3.7) |
| 내 시간 및 나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 6<br>(4.1) | 8<br>(5.9) | 5<br>(2.0) | 18<br>(8.2) | 37<br>(4.9) |
| 가족이 반대해서 | 3<br>(2.1) | 1<br>(0.7) | 3<br>(1.2) | 2<br>(0.9) | 9<br>(1.2) |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4<br>(2.8) | 3<br>(2.2) | 9<br>(3.6) | 17<br>(7.8) | 33<br>(4.4) |
| 나이가 많아서 | 20<br>(13.8) | 20<br>(14.8) | 55<br>(21.8) | 27<br>(12.3) | 122<br>(16.3) |
| 기타 | 0<br>(0.0) | 0<br>(0.0) | 4<br>(1.6) | 2<br>(0.9) | 6<br>(0.8) |
| 계 | 145<br>(100.0) | 135<br>(100.0) | 252<br>(100.0) | 219<br>(100.0) | 751<br>(100.0)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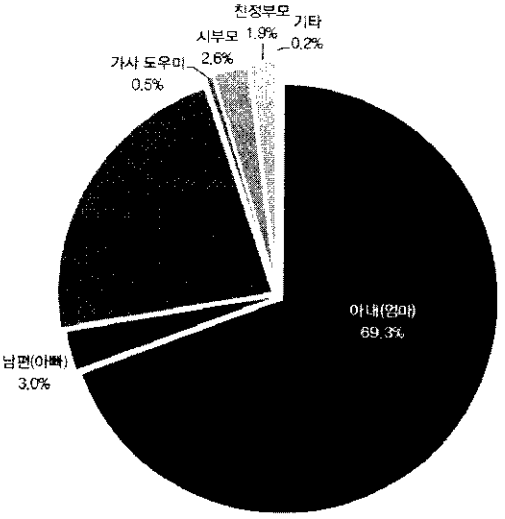
## □ 가사활동 분담 현황

### ▶ '아내(엄마)' 라는 응답이 전체의 69.3%로 높게 나타남

○ 가사활동은 주로 누가 담당하느냐는 질문에 '아내(엄마)'라는 응답이 전체의 69.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내(엄마)와 남편(아빠)이 비슷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22.5%를 차지함

○ 이는 가사노동이 여전히 아내(엄마)의 몫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임

- 그러나 '아내(엄마)와 남편(아빠)이 비슷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22.5%라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참고로 2016년 5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47]에 따르면, 서울 부부가구의 가사노동 분담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29.3%,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도움' 57.7%,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눔' 12.1%였음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635 | 100.0 |
| 아내(엄마) | 440 | 69.3 |
| 남편(아빠) | 19 | 3.0 |
| 아내(엄마)와 남편(아빠)이 비슷하게 분담 | 143 | 22.5 |
| 가사 도우미 | 3 | 0.5 |
| 시부모 | 17 | 2.6 |
| 친정부모 | 12 | 1.9 |
| 기타 | 1 | 0.2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13〉 가사활동 분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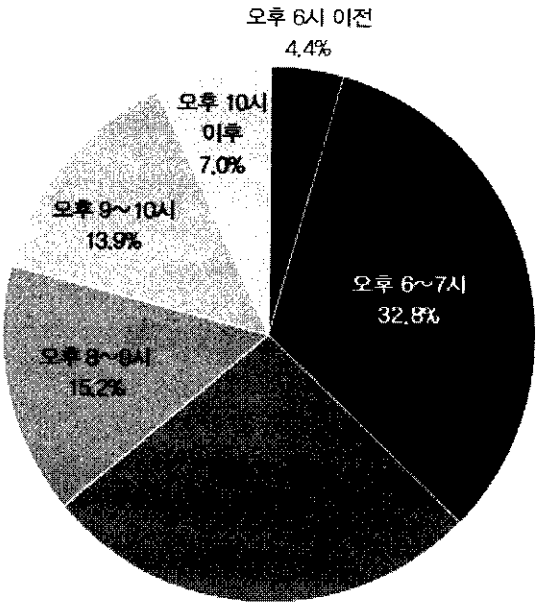
47)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82호, 2016.5.2., 기준년도는 2014년임

## □ 아빠의 평일 귀가 시간

▶ **'오후 6~7시' 라는 응답이 전체의 32.8%를 차지함**

○ 아빠의 평일 귀가 시간을 몇 시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후 6~7시'라는 응답이 전체의 32.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오후 7~8시' 26.7%, '오후 8~9시' 15.2%, '오후 9~10시' 13.9% 순으로 나타남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632 | 100.0 |
| 오후 6시 이전 | 28 | 4.4 |
| 오후 6~7시 | 207 | 32.8 |
| 오후 7~8시 | 169 | 26.7 |
| 오후 8~9시 | 96 | 15.2 |
| 오후 9~10시 | 88 | 13.9 |
| 오후 10시 이후 | 44 |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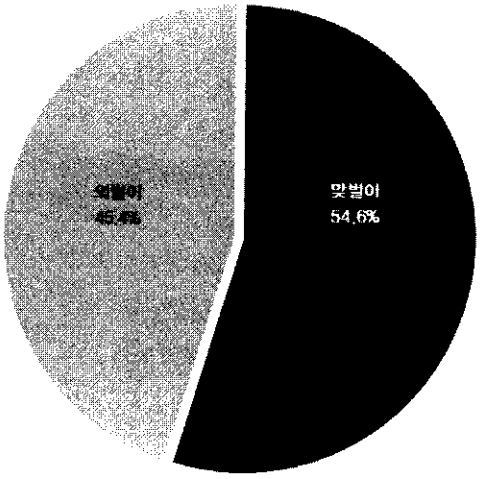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15〉 아빠의 평일 귀가시간

## □ 맞벌이 여부 및 결혼기간에 따른 맞벌이 추이

### ▶ '맞벌이' 부부의 비중 54.6%, 결혼 '5년 이하' 부부의 맞벌이 비중 감소

○ 기혼자 중 '맞벌이' 비중은 54.6%, '외벌이' 비중은 45.4%로 나타남




| 구분 | 맞벌이 | 외벌이 | 계 |
|---|---|---|---|
| 응답자수(명) | 345 | 287 | 632 |
| 응답률(%) | 54.6 | 45.4 | 100.0 |

〈그림 4-17〉 맞벌이 여부

○ 한편 결혼기간에 따른 맞벌이 및 외벌이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 결혼 6~15년이 전체의 45.5%를 차지한 반면 외벌이의 경우 결혼 1~10년이 59.9%를 차지함

○ 주목할 점은 결혼 '5년 이하' 부부의 경우 외벌이가 58.1%로 맞벌이 41.9%보다 16.2%p 높다는 점임

〈표 4-9〉 결혼기간별 맞벌이 및 외벌이 비중

(단위: 명, %)

| 구 분 | 맞벌이 | 외벌이 | 계 |
|---|---|---|---|
| 계 | 345 (54.6) | 287 (45.4) | 632 (100.0) |
| 5년 이하 | 67 (41.9) | 93 (58.1) | 160 (100.0) |
| 6~10년 | 79 (50.0) | 79 (50.0) | 158 (100.0) |
| 11~15년 | 78 (59.5) | 53 (40.5) | 131 (100.0) |
| 16~20년 | 47 (65.3) | 25 (34.7) | 72 (100.0) |
| 21~25년 | 48 (77.4) | 14 (22.6) | 62 (100.0) |
| 26~30년 | 19 (65.5) | 10 (34.5) | 29 (100.0) |
| 30년 이상 | 7 (35.0) | 13 (65.0) | 2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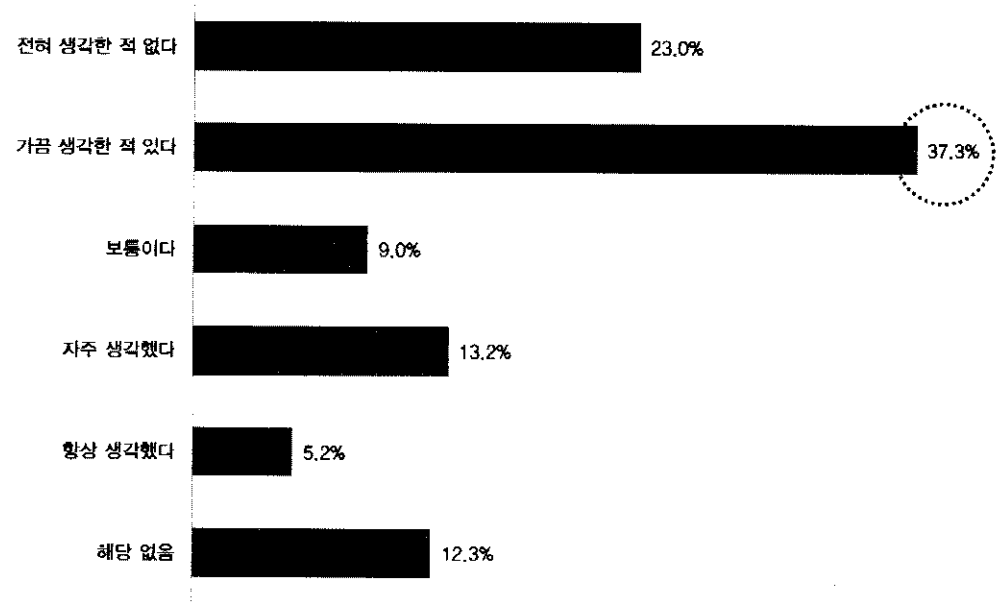
주: $\chi 2 = 33.9^{***}$, *p<0.05, **p<0.01, ***p<0.001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자녀 양육문제로 사직을 고려한 경험

▶ **'가끔 생각한 적 있다'** 라는 응답이 전체의 **37.3%**를 차지함

○ 자녀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끔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7.2%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전혀 생각한 적 없다' 23.0%, '자주 생각했다' 13.2% 순으로 나타남




| 구분 | 전혀 생각한 적 없다 | 가끔 생각한 적 있다 | 보통이다 | 자주 생각했다 | 항상 생각했다 | 해당 없음 (자녀없음 등) | 계 |
|---|---|---|---|---|---|---|---|
| 응답자수(명) (응답률 %) | 79 (23.0) | 128 (37.3) | 31 (9.0) | 45 (13.2) | 18 (5.2) | 42 (12.3) | 343 (100.0)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19〉 자녀 양육문제로 사직을 고려한 경험

〈표 4-10〉 기혼가정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1)

(단위: %, 명)

| 구분 | | 자녀 없음 | 자녀 있음 | | | | | 합계 | 평균 출생아수 |
|---|---|---|---|---|---|---|---|---|---|
| | |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소계 | | |
| 결혼 기간 ($x2 = 255.0^{***}$) | 5년 이하 | 75 (46.6) | 65 (40.4) | 21 (13.0) | 0 (0.0) | 0 (0.0) | 86 (53.4) | 161 (100.0) | 0.66 |
| | 6~10년 | 10 (6.4) | 58 (36.9) | 80 (51.0) | 8 (5.1) | 1 (0.6) | 147 (93.6) | 157 (100.0) | 1.57 |
| | 11~15년 | 6 (4.6) | 41 (31.3) | 67 (51.1) | 16 (12.2) | 1 (0.8) | 125 (95.4) | 131 (100.0) | 1.73 |
| | 16~20년 | 1 (1.4) | 20 (27.4) | 39 (53.4) | 10 (13.7) | 3 (4.1) | 72 (98.6) | 73 (100.0) | 1.92 |
| | 21~25년 | 0 (0.0) | 11 (17.7) | 42 (67.7) | 9 (14.5) | 0 (0.0) | 62 (100.0) | 62 (100.0) | 1.97 |
| | 26~30년 | 0 (0.0 | 5 (17.2) | 19 (65.5) | 4 (13.8) | 1 (3.4) | 29 (100.0) | 29 (100.0) | 2.03 |
| | 30년 이상 | 1 (5.0) | 4 (20.0) | 14 (70.0) | 1 (5.0) | 0 (0.0) | 19 (95.0) | 20 (100.0) | 1.75 |
| | 소 계 | 93 (14.7) | 204 (32.3) | 282 (44.5) | 48 (7.6) | 6 (0.9) | 540 (85.3) | 633 (100.0) | 1.48 |
| 부부 경제활동 ($x2 = 17.5$) | 맞벌이 | 52 (14.9) | 92 (26.4) | 177 (50.7) | 23 (6.6) | 5 (1.4) | 297 (85.1) | 349 (100.0) | 1.56 |
| | 외벌이 | 41 (14.3) | 112 (39.0) | 107 (37.3) | 26 (9.1) | 1 (0.3) | 246 (85.7) | 287 (100.0) | 1.42 |
| | 소 계 | 93 (14.6) | 204 (32.1) | 284 (44.7) | 49 (7.7) | 6 (0.9) | 543 (85.4) | 636 (100.0) | 1.48 |
| 월소득 ($x2 = 31.5$) | 100만원 미만 | 1 (10.0) | 6 (60.0) | 3 (30.0) | 0 (0.0) | 0 (0.0) | 9 (90.0) | 10 (100.0) | 1.80 |
| | 100~150만원 미만 | 4 (16.7) | 5 (20.8) | 14 (58.3) | 1 (4.2) | 0 (0.0) | 20 (83.3) | 24 (100.0) | 1.50 |
| | 150~200만원 미만 | 10 (20.8) | 12 (25.0) | 20 (41.7) | 5 (10.4) | 1 (2.1) | 38 (79.2) | 48 (100.0) | 1.48 |
| | 200~250만원 미만 | 15 (25.4) | 22 (37.3) | 19 (32.2) | 3 (5.1) | 0 (0.0) | 44 (74.6) | 59 (100.0) | 1.07 |
| | 250~300만원 미만 | 16 (13.7) | 44 (37.6) | 48 (41.0) | 8 (6.7) | 1 (1.0) | 101 (86.3) | 117 (100.0) | 1.44 |
| | 300~350만원 미만 | 15 (14.4) | 40 (38.5) | 44 (42.3) | 4 (3.8) | 1 (1.0) | 89 (85.6) | 104 (100.0) | 1.38 |
| | 350~400만원 미만 | 14 (13.5) | 32 (30.8) | 47 (45.2) | 11 (10.5) | 0 (0.0) | 90 (86.5) | 104 (100.0) | 1.53 |
| | 400~500만원 미만 | 8 (10.0) | 24 (30.1) | 38 (47.5) | 9 (11.2) | 1 (1.2) | 72 (90.0) | 80 (100.0) | 1.64 |
| | 500만원 이상 | 11 (14.3) | 18 (23.4) | 41 (53.2) | 6 (7.8) | 1 (1.3) | 66 (85.7) | 77 (100.0) | 1.58 |
| | 소 계 | 94 (15.1) | 203 (32.6) | 274 (44.0) | 47 (7.5) | 5 (0.8) | 529 (84.9) | 623 (100.0) | 1.46 |

주: *p〈0.05, **p〈0.01, ***p〈0.001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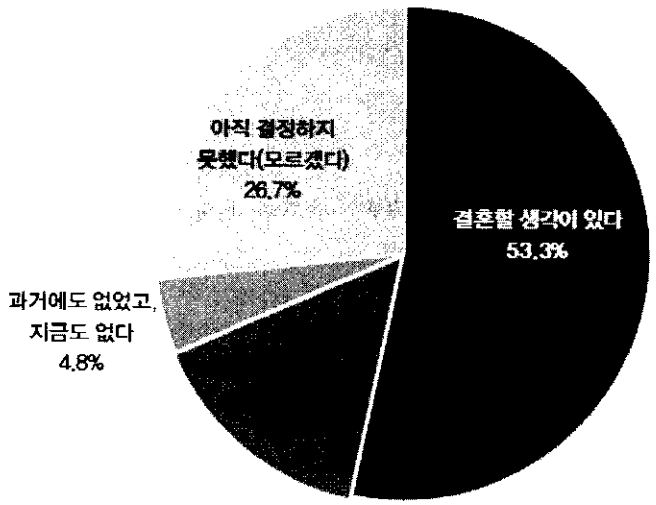
## 3) 미혼자의 결혼 · 출산에 관한 인식

### □ 향후 결혼 의향

▶ **'결혼할 생각이 있다' 는 의견이 53.3%로**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혼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함

○ 다음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는 응답이 26.7%를 차지했으며, 이어 결혼할 생각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응답이 15.2%였음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660 | 100.0 |
| 결혼할 생각이 있다 | 352 | 53.3 |
|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 100 | 15.2 |
|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 32 | 4.8 |
|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176 | 26.7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20〉 향후 결혼 의향

## □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라는 응답이 24.0%를 차지함

○ 미혼자를 대상으로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물은 결과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4.0%로 가장 많았음

– 특히 여성의 경우 25.6%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1위임

○ 다음으로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라는 응답이 19.5%, '결혼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10.5% 순임

〈표 4-13〉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 구분 | 남성 | 여성 | 계 |
|---|---|---|---|
| 계 | 255<br>(100.0) | 390<br>(100.0) | 645<br>(100.0) |
|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 20<br>(7.8) | 31<br>(7.9) | 51<br>(7.9) |
|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 31<br>(12.2) | 11<br>(2.8) | 42<br>(6.5) |
|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br>(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55<br>(21.6) | 100<br>(25.6) | 155<br>(24.0) |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등) | 23<br>(9.0) | 13<br>(3.3) | 36<br>(5.6) |
| 결혼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 28<br>(11.0) | 40<br>(10.3) | 68<br>(10.5) |
|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5<br>(2.0) | 29<br>(7.4) | 34<br>(5.3) |
|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 58<br>(22.7) | 68<br>(17.4) | 126<br>(19.5) |
| 결혼에 적당한 시기(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 10<br>(3.9) | 10<br>(2.6) | 20<br>(3.1) |
|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br>(자아성취, 자기계발 등) | 9<br>(3.5) | 43<br>(11.0) | 52<br>(8.1) |
| 결혼 생각이 없어서 | 15<br>(5.9) | 30<br>(7.7) | 45<br>(7.0) |
| 결혼제도가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시댁문제 등) | 1<br>(0.4) | 15<br>(3.8) | 16<br>(2.5)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이상 자녀수와 현실적인 자녀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연령 '25~29세',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그룹임

○ 이상 자녀수와 현실적인 자녀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연령과 월소득이었음

○ 연령의 경우 '25~29세'가 전체의 40.2%, 월소득은 '150~200만원 미만'이 20.7%로 가장 비중이 컸음

〈표 4-15〉 '이상 자녀수 보다 현실적인 자녀수가 작은 경우' 교차분석

(단위: %, 명)

| 구분 | | 이상 자녀수 보다 현실적인 자녀수가 적은 경우 | (명) |
|---|---|---|---|
| 성별 ($x2 = 2.18$) | 남 | 37.2 | 68 |
| | 여 | 62.8 | 115 |
| 연령 ($x2 = 146.1^{***}$) | 20~24세 | 32.4 | 58 |
| | 25~29세 | 40.2 | 72 |
| | 30~34세 | 19.0 | 34 |
| | 35~39세 | 4.5 | 8 |
| | 40~44세 | 2.2 | 4 |
| | 45~50세 | 1.7 | 3 |
| | 50세 이상 | 0.0 | 0 |
| 학력 ($x2 = 19.1$) | 중학교 | 0.0 | 0 |
| | 고등학교 | 45.6 | 83 |
| | 전문대학 | 19.8 | 36 |
| | 대학교 | 33.0 | 60 |
| | 대학원 이상 | 1.6 | 3 |
| 월소득 ($x2 = 75.6^{***}$) | 100만원 미만 | 10.1 | 17 |
| | 100~150만원 미만 | 12.4 | 21 |
| | 150~200만원 미만 | 20.7 | 35 |
| | 200~250만원 미만 | 18.3 | 31 |
| | 250~300만원 미만 | 17.8 | 30 |
| | 300~350만원 미만 | 6.5 | 11 |
| | 350~400만원 미만 | 2.4 | 4 |
| | 400~500만원 미만 | 0.6 | 1 |
| | 500만원 이상 | 11.2 | 19 |

주: *p<0.05, **p<0.01, ***p<0.001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자녀를 낳을 경우 첫아기 출산 시기

▶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라는 응답이 **전체의 29.4%**를 차지함

○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첫 아이는 언제쯤 가지고 싶으냐고 물은 결과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라는 응답이 전체의 29.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라는 응답이 21.3%, '집장만을 한 이후에' 13.7% 순임

〈표 4-16〉 자녀를 낳을 경우 첫아이 출산 시기

(단위: 명, %)

| 구분 | 1순위 | 2순위 | 계 |
|---|---|---|---|
| 계 | 329<br>(100.0) | 314<br>(100.0) | 643<br>(100.0) |
| 집장만을 한 이후에 | 55<br>(16.7) | 33<br>(10.5) | 88<br>(13.7) |
|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 104<br>(31.6) | 85<br>(27.1) | 189<br>(29.4) |
|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 76<br>(23.1) | 61<br>(19.4) | 137<br>(21.3) |
| 안정된 직장을 마련한 이후에 | 34<br>(10.3) | 42<br>(13.4) | 76<br>(11.8) |
| 배우자가 원할 때 | 37<br>(11.2) | 45<br>(14.3) | 82<br>(12.8) |
| 자신의 부모님께서 원할 때 | 0<br>(0.0) | 3<br>(1.0) | 3<br>(0.5) |
|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원할 때 | 1<br>(0.3) | 1<br>(0.3) | 2<br>(0.3) |
|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 21<br>(6.4) | 42<br>(13.4) | 63<br>(9.7) |
| 기타 | 1<br>(0.3) | 2<br>(0.6) | 3<br>(0.5)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

▶ **'자녀가 없다고 우려될 일은 별로 없다'** 라는 응답이 **전체의 46.9%**를 차지함

○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녀가 없다고 우려될 일은 별로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6.9%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집안이 적적할 것이다' 17.7%, '노후에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13.3%를 차지함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113 | 100.0 |
| 자녀가 없다고 우려될 일은 별로 없다 | 53 | 46.9 |
| 대를 잇는 일이 문제가 될 것이다 | 11 | 9.7 |
| 집안이 적적할 것이다 | 20 | 17.7 |
| 노후에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 15 | 13.3 |
| 부부간의 유대가 약해질 것이다 | 14 | 12.4 |
| 기타 | 0 | 0.0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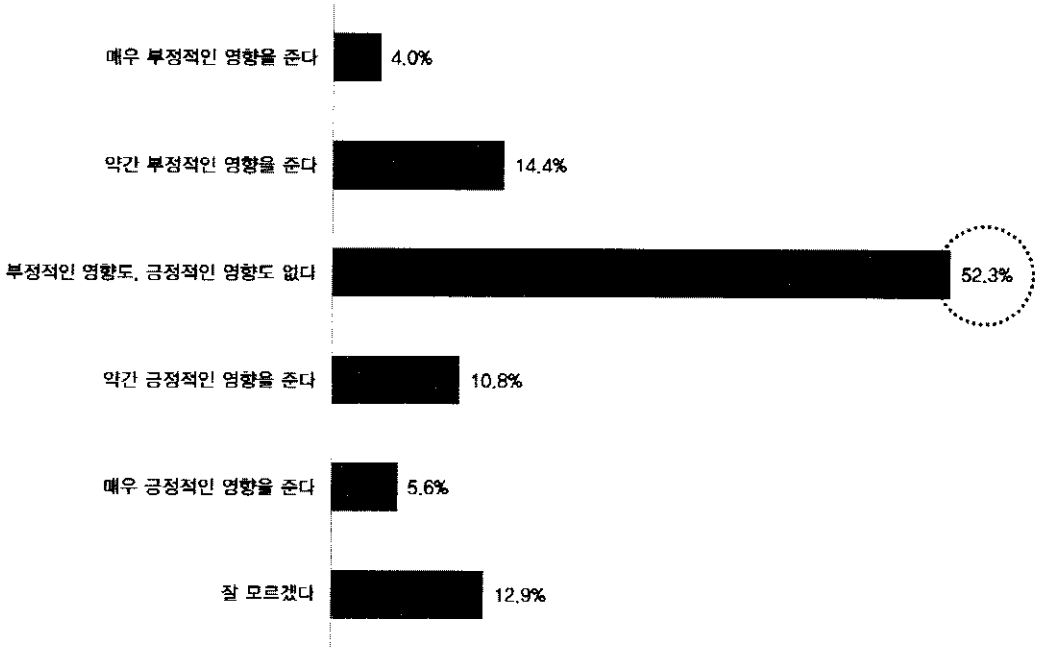
〈그림 4-23〉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

## □ 일이 결혼계획에 미치는 영향

### ▶ '부정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없다' 52.3%를 차지함

○ 지금 하는 일이 결혼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2.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14.4%, '잘 모르겠다' 12.9% 순으로 나타남




| 구분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부정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없다 |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잘 모르겠다 | 계 |
|---|---|---|---|---|---|---|---|
| 응답자수(명)<br>(응답률 %) | 17<br>(4.0) | 61<br>(14.4) | 222<br>(52.3) | 46<br>(10.8) | 24<br>(5.6) | 55<br>(12.9) | 425<br>(100.0)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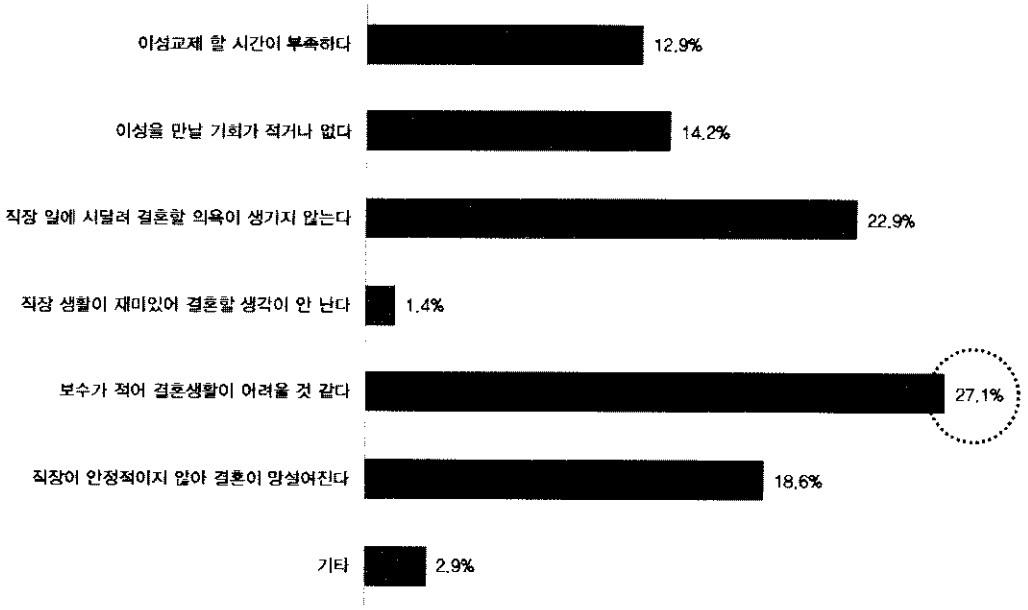
〈그림 4-24〉 일이 결혼계획에 미치는 영향

## □ 일이 결혼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 **'보수가 적어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는 응답이 전체의 **27.1%**를 차지함

○ 지금 하는 일이 결혼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수가 적어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음

○ 이어 '직장 일에 시달려 결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22.9%,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결혼이 망설여진다' 18.6% 순으로 나타남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70 | 100.0 |
| 이성교제 할 시간이 부족하다 | 9 | 12.9 |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거나 없다 | 10 | 14.2 |
| 직장 일에 시달려 결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 16 | 22.9 |
| 직장 생활이 재미있어 결혼할 생각이 안 난다 | 1 | 1.4 |
| 보수가 적어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 19 | 27.1 |
|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결혼이 망설여진다 | 13 | 18.6 |
| 기타 | 2 | 2.9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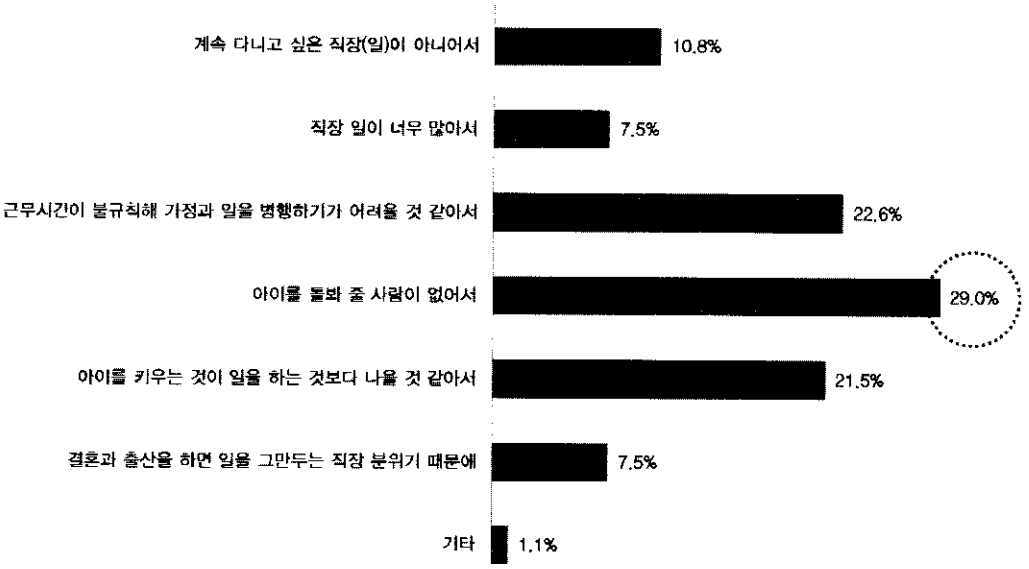
〈그림 4-25〉 일이 결혼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

## □ 결혼이나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

▶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전체의 **29.0%**를 차지함

○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계속 직장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9.0%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2.6%,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21.5% 순으로 나타남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93 | 100.0 |
|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일)이 아니어서 | 10 | 10.8 |
|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 7 | 7.5 |
|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21 | 22.6 |
|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27 | 29.0 |
|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 20 | 21.5 |
| 결혼과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 7 | 7.5 |
| 기타 | 1 | 1.1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27〉 결혼이나 출산 후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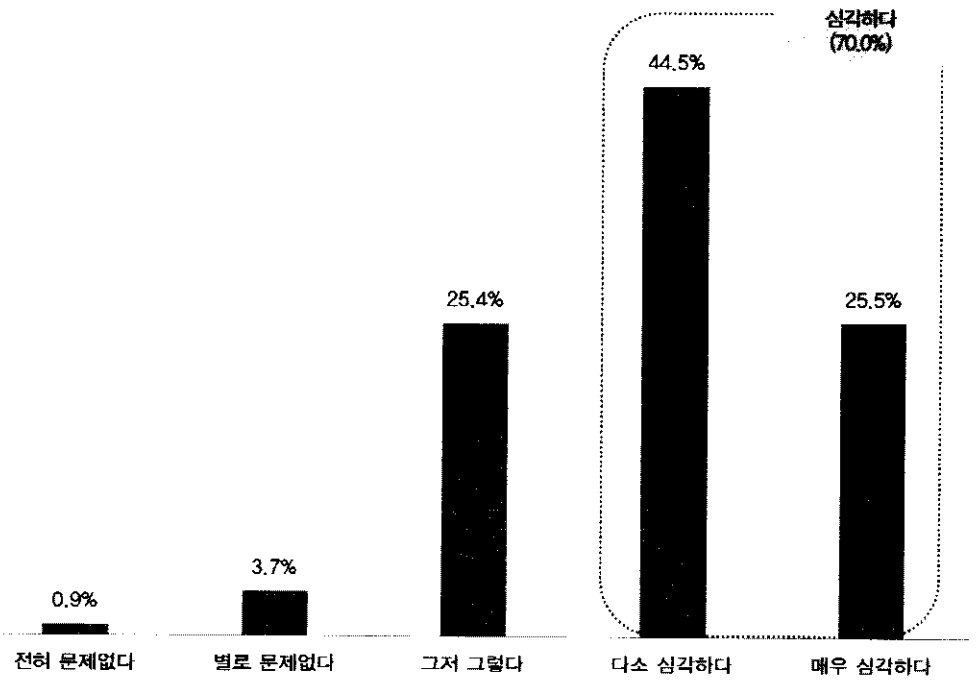
## 4) 출산 및 보육 관련 정책

###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심각하다' 는 의견이 70.0%를 차지함**

○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소 심각하다' 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의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심각하다' 는 응답이 25.5%를 차지함

○ 이에 반해 저출산 현상이 '별로 문제없다' 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7%, '전혀 문제없다' 는 0.9%를 차지했음. 즉 응답자의 70%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구분 | 전혀 문제없다 | 별로 문제없다 | 그저 그렇다 | 다소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계 |
|---|---|---|---|---|---|---|
| 응답자수(명)<br>(응답률 %) | 11<br>(0.9) | 47<br>(3.7) | 327<br>(25.4) | 570<br>(44.5) | 327<br>(25.5) | 1,282<br>(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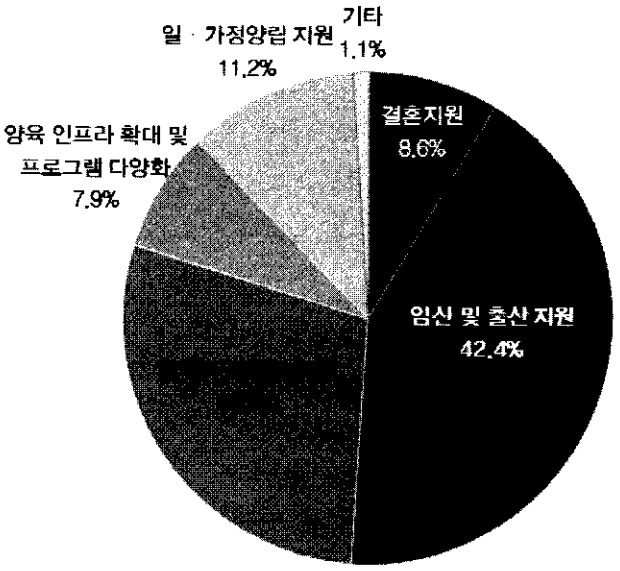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그림 4-29〉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임신 및 출산 지원'** 에 대한 인지도가 **전체의 42.4%**로 가장 높았음

○ 결혼·출산 및 양육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에 한해 어떤 정책 분야를 알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임신 및 출산 지원'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2.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양육의 경제적 지원' 28.8%, '일·가정 양립 지원' 11.2%를 차지함




| 구 분 | 응답자(명) | 비율(%) |
|---|---|---|
| 계 | 535 | 100.0 |
| 결혼지원 | 46 | 8.6 |
| 임신 및 출산 지원 | 227 | 42.4 |
| 양육의 경제적 지원 | 154 | 28.8 |
|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42 | 7.9 |
| 일 · 가정 양립 지원 | 60 | 11.2 |
| 기타 | 6 | 1.1 |

주: 중복응답임

〈그림 4-31〉 결혼 ·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분야 인지도

〈표 4-21〉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계속)

(단위: 명, %)

| 구분 | | 1순위 | 2순위 | 계 | 총 순위 |
|---|---|---|---|---|---|
|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11. 다양한 보육서비스(반일제, 시간제, 휴일, 24시간, 긴급 등) 지원 | 93 (7.3) | 121 (9.6) | 214 (8.5) | 4 |
| | 12. 방과 후 보육 · 교육 지원 | 16 (1.3) | 44 (3.5) | 60 (2.4) | 11 |
| | 13. 국공립어린이집 | 7 (0.6) | 20 (1.6) | 27 (1.1) | 20 |
| | 14. 직장어린이집 | 12 (0.9) | 15 (1.2) | 27 (1.1) | 20 |
| 임신 및 출산 지원 | 15. 출산전후 휴가 | 34 (2.7) | 39 (3.1) | 73 (2.9) | 10 |
| | 16. (여성) 육아휴직 | 24 (1.9) | 35 (2.8) | 59 (2.3) | 13 |
| | 17. 남성 육아휴직 | 17 (1.3) | 32 (2.5) | 49 (1.9) | 16 |
| | 18.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 출퇴근 등) | 39 (3.1) | 68 (5.4) | 107 (4.2) | 8 |
| | 19. 출산 · 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직장) 복귀 지원 | 43 (3.4) | 93 (7.4) | 136 (5.4) | 6 |
| | 20. 직장문화 개선 | 37 (2.9) | 62 (4.9) | 99 (3.9) | 9 |
| | 21. 정시퇴근제 | 13 (1.0) | 34 (2.7) | 47 (1.9) | 17 |
| 기타 | 22. 주거급여 | 14 (1.1) | 25 (2.0) | 39 (1.5) | 19 |
| | 23. 세금감면 혜택 | 20 (1.6) | 40 (3.2) | 60 (2.4) | 11 |
| | 24. 공교육 활성화 | 8 (0.6) | 44 (3.5) | 52 (2.1) | 15 |
| | 25.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공공도서관, 공원 등) | 7 (0.6) | 15 (1.2) | 22 (0.9) | 23 |
| 합계 | | 1,266 (100.0) | 1,259 (100.0) | 2,525 (100.0) | –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의 인지도, 이용경험 및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

### ▶ '출산장려금(축하금)' 의 인지도,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2017년 현재 진행 중인 충청북도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들의 인지 여부, 이용경험,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를 질문하였음

-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질문하여, 평균 점수를 산정하였음

○ 조사 결과 '출산장려금(축하금)'의 인지도가 69.1%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경험 역시 39.6%로 8개 사업 중 가장 높았음

- 인지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로 전체 응답자의 14.6%만이 '안다'고 응답함

○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및가정 도서·장난감 대여'가 각각 3.2점으로 나타남

〈표 4-23〉 충청북도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인지도, 이용경험 및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

| 구분 | 인지도 (%) | 이용경험 (%) |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 (5점 만점) | 총 응답자수 (명) | | |
|---|---|---|---|---|---|---|
| | | | | 인지도 | 이용경험 | 이용만족도 |
| 공동육아나눔터 | 14.6 | 2.3 | 3.1 | 1,224 | 513 | 156 |
| 아이돌봄서비스 | 49.0 | 10.3 | 3.2 | 1,245 | 564 | 192 |
| 출산장려금(축하금) | 69.1 | 39.6 | 3.1 | 1,250 | 616 | 321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56.4 | 37.7 | 3.3 | 1,256 | 594 | 310 |
| 가정양육수당 지원 | 41.7 | 27.0 | 3.1 | 1,237 | 566 | 256 |
|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 36.1 | 6.0 | 3.1 | 1,244 | 551 | 176 |
|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 21.7 | 6.9 | 3.1 | 1,23 | 534 | 175 |
|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 · 장난감 대여 | 33.6 | 14.3 | 3.2 | 1,224 | 551 | 194 |

주: 무응답은 결측처리함

# 3.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관련 시사점 도출

## 1) 맞벌이 신혼부부의 출산력 향상 방안 마련

○ 인식조사 결과 결혼 '5년 이하' '맞벌이' 가정의 평균 출생아수가 0.5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자녀 없음' 비중 역시 58.2%로 가장 컸음

○ 또한 앞서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서 나타난 충청북도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수는 0.77명으로, 외벌이 신혼부부 평균 출생아수인 0.96명보다 0.19명 낮음[49]

○ 이런 현황을 고려할 때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계획방향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출산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자녀 지원도 중요하지만, 첫째아 중심의 출산 지원이 필요함

– 충청북도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둘째아,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집중되고 있는데, 첫째도 안 낳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자녀 보다 첫째아 지원이 합리적일 것임

## 2) 주 출산연령(25~34세) 여성, 특히 25~29세 여성에 집중

○ 충청북도 여성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25~29세 여성의 전출이 뚜렷하게 나타남

– 25~29세 여성의 전출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 출산여성, 특히 25~29세 여성의 인구 유출 심화는 결국 충청북도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임

○ 아울러 인식조사 결과, 미혼 여성이 결혼과 자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결혼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음[50]

○ 미혼 여성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자녀 양육·교육 등과 관련한 안정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49) 본 보고서 29쪽 참조
50) 본 보고서 117쪽 참조

# 비전 및 전략

1. SWOT 분석을 통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전략 방향
2. 비전 및 목표
3. 분야별 정책 과제

# Ⅴ. 비전 및 전략

## 1. SWOT 분석을 통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전략 방향

### 1) 외부환경 분석

#### □ 기회(Opportunity) 요인

○ 출생·양육·교육에 있어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임

-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을 해소한다는 국정 목표 수립하고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책 마련이 중요해짐

-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효과 미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역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남편(아빠)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즉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남편(아빠)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임

#### □ 위협(Threat) 요인

○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함

-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결 방안의 폭이 넓어짐

- 단순히 임신·출산 지원이 아닌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역 입장에서는 출산·임신 지원 등의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교육·일자리·주거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됨

## 3) 전략 방향 도출

### □ SO 전략

#### ① 정부 정책 및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

○ 변화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연관 상위계획을 점검하여 지역 내 적용 방안을 검토함

○ 특히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제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② 충청북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 분석 후 기대효과가 큰 사업 확대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은 대부분 국가 정책 즉,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이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됨

○ 충청북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특화사업을 분석하여 기대효과가 큰 사업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③ 지역내 저출산 대응 네트워크 체계화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출산 대응 네트워크를 마련하도록 함

## □ WO 전략

### ① 충청북도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결혼 및 출산 정책 마련

○ 행복한 결혼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함

- 만남에서부터 결혼·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함

○ 또한 충청북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결혼·출산 정책을 발굴하도록 함

###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

○ 영유아 맞춤형 보육에서 부터 돌봄체계 구축, 보육환경의 질 제고,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 특히 양육을 한 가정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양육 채널을 구축하도록 함

### ③ 효율적인 가족친화정책 홍보방안 마련

○ 출산장려 시책을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저출산 및 가족정책 관련 기관 지원, 주기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정책 홍보 방안을 구상하도록 함

○ 홍보 방안과 더불어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도 병행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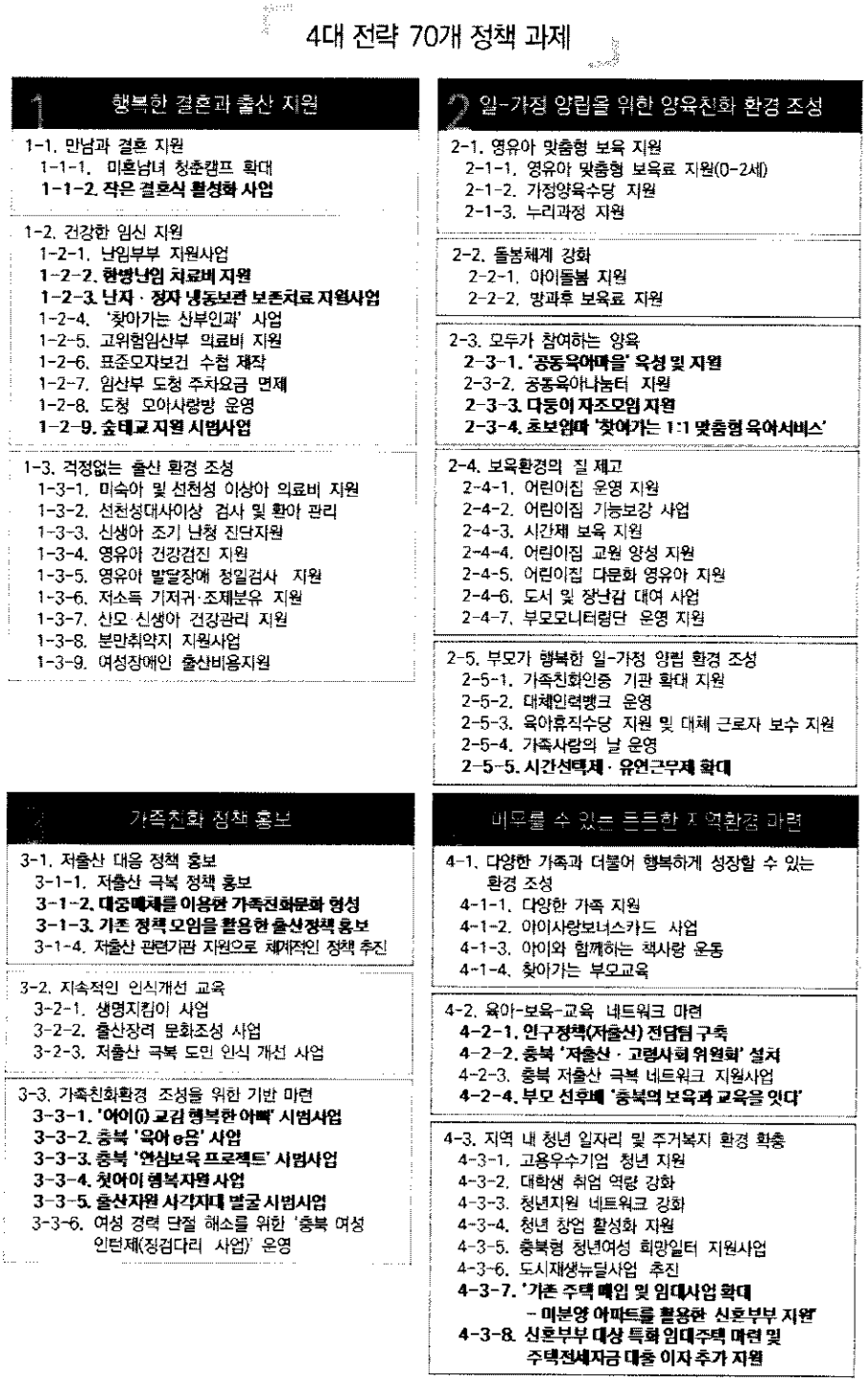
- 남편(아빠)가 양육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유휴 인력을 보육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함

〈표 5-1〉 SWOT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도출

<table>
<tr><td colspan="2">외부 환경<br>내부 환경</td><td>기회(Opportunity)</td><td>위협(Threat)</td></tr>
<tr><td colspan="2"></td><td>• 출생 · 양육 ·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 강조<br>– '교육 · 노동 ·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 절벽' 을 해소한다는 국정 목표 수립<br>•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책 마련이 중요해짐<br>–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효과 미흡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역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무게가 실림</td><td>•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 미흡<br>–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과 미비<br>•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결 방안의 폭이 넓어짐<br>– 단순히 임신 · 출산 지원이 아닌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td></tr>
<tr><td rowspan="2">강점<br>(Strength)</td><td rowspan="2">• 충청북도 저출산 지표 양호<br>– 합계출산율을 비롯하여 평균 초혼연령,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 등의 출산 지표가 전국 수치와 비교해 양호한 실정임<br>• 충청북도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br>– '저출산대책위원회' 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를 운영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td><td>SO전략<br>(강점을 이용한 기회 활용)</td><td>ST전략<br>(강점을 이용한 위기 극복)</td></tr>
<tr><td>① 정부 정책 및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br>② 충청북도 내 시 · 군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 분석 후 기대효과가 큰 사업 확대<br>③ 지역내 저출산 대응 네트워크 체계화</td><td>① 단순한 출산 지원이 아닌 육아–보육–교육으로 이어지는 지역환경 조성<br>② 저출산 대응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br>③ 타 계획과 연계하여 저출산 대응 사업의 실질적 범위 확대</td></tr>
<tr><td rowspan="2">약점<br>(Weakness)</td><td rowspan="2">• 25~29세의 주 출산연령 여성의 인구 유출 심화<br>• 신혼부부(결혼 5년)의 맞벌이 비중이 외벌이 보다 적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율이 낮게 나타남<br>• 출산 및 양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br>– 인식 조사 결과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 는 응답이 52.4%에 달함</td><td>WO전략<br>(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로 활용)</td><td>WT전략<br>(위협요인을 파하고 약점을 최소화)</td></tr>
<tr><td>① 충청북도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결혼 및 출산정책 마련<br>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br>③ 효율적인 가족친화정책 홍보방안 마련</td><td>①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환경 조성<br>②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br>③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양육환경 조성</td></tr>
</table>

# 3. 분야별 정책 과제

○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70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함




〈그림 5-2〉 4대 전략 70개 정책 과제

# 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1. 행복한 결혼과 출산 지원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
3. 가족친화 정책 홍보
4. 머무를 수 있는 든든한
   지역환경 마련
5. 투자계획

# Ⅵ. 전략별 세부 추진 계획

## 1. 행복한 결혼과 출산 지원

### 1) 현황 및 진단

#### ◆ 다양한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 ○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임신 지원 정책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등이 있음
- ○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대표적임
- ○ 출산 이후 신생아 건강 관리 일환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함

#### ◆ 지자체별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 ○ 출산 지원 정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출산장려금)임
- ○ 2017년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 모두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일시불 방식과 분할 방식을 혼용하고 있음
- ○ 최근 출산양육 지원금이 실제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53]

#### ◆ 충청북도 시·군의 결혼지원 정책

- ○ 충청북도 시·군에서 결혼 지원 사업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비용 지원이며, 최근 들어 지원 대상을 농촌 총각에서 일반 미혼자로 확대하는 추세임
- ○ 이외에는 괴산군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지원' 사업과 음성군의 '공공기관 만남의 장 마련' 사업이 특색있는 사업으로 꼽힘

53) 참고로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정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음(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2011. 6. 참조)

## 3 소요 예산: 17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30.0 | 30.0 | 35.0 | 35.0 | 40.0 | 170.0 |
| 합계 | 30.0 | 30.0 | 35.0 | 35.0 | 40.0 | 170.0 |

## 4 기대 효과

○ 생활이 바빠 만남의 기회가 없는 미혼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을 주선

○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②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작은 결혼식 진행 부부의 결혼비용 지원
- 지원 기준: 작은 결혼식 계획서 공모 후 시·군별 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량: 한 해 약 100쌍
- 사업비: 100백만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6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100.0 | 100.0 | 130.0 | 130.0 | 140.0 | 600.0 |
| 합계 | 100.0 | 100.0 | 130.0 | 130.0 | 140.0 | 600.0 |

## 4 기대 효과

○ 사회낭비적인 불필요한 과정들을 없앤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식 확산

○ 올바른 혼례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한편 검소한 결혼을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2-2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통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난임은 기질 상 이상이 없는 원인불명의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 한방난임 치료는 가임기 난임 여성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시켜 임신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난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또는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양측 나팔관 모두 폐쇄 또는 자궁 기형 등의 구조적 이상은 제외)
- 한 가족당 1인(남성도 가능)

○ 지원 내용: 한의원 내원진료 및 첩약, 침, 구, 부항 등의 한방 치료

○ 지원 금액: 1인당 총 진료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제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최종 대상자의 경우 치료 시작 후 종료 3개월까지 양방 난임시술(체외, 인공수정) 제한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2-3 | 난자 · 정자 냉동보관 보존치료 지원사업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최근 가임력을 보존해 미래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
- 남자는 정자 냉동, 여자는 수정란을 만들어 배아를 냉동시켜 추후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일컬음
- 이 방법은 특히 암 등의 중증질환이 있는 부부의 출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함. 즉 항암치료나 항호르몬 치료 전에 정자 및 배아를 냉동시켜 치료가 끝난 후 임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난자·정자 냉동보관 보존을 통해 질병이 있는 부부 및 만혼부부의 출산력을 높이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지원 대상: 매년 지원자 160명

○ 지원 내용
- 난임전문병원과 협약 체결
- 1인당 지원한도 : 100만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3 소요 예산: 64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160.0 | 160.0 | 160.0 | 160.0 | 640.0 |
| 합계 | | 160.0 | 160.0 | 160.0 | 160.0 | 640.0 |

## 4 기대 효과

○ 가임력 보존치료 지원을 통해 늦깎이 출산 부부 및 중증질환 부부의 출산력 향상

○ 주요 내용

- 월 2회 이상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방문 진료 및 검진
- 산전 진료: 임신초기부터 임신36주까지(1인 총14회)
- 검사: 산전 기본검사(간기능·간염·혈당·신장기능·고지혈증·전해질·빈혈·소변·혈액·풍진·갑상선), 초음파, 태아 기형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3 소요 예산: 78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97.5 | 97.5 | 104.0 | 104.0 | 104.0 | 507.0 |
| 지방비 | 52.5 | 52.5 | 56.0 | 56.0 | 56.0 | 273.0 |
| 합계 | 150.0 | 150.0 | 160.0 | 160.0 | 160.0 | 780.0 |

## 4 기대 효과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산부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임신부들을 직접 찾아가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출산을 지원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2-6 |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제작·배부함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을 유지함은 물론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 지원 내용: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을 제작하여 배부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3 소요 예산: 54.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6.5 | 6.5 | 7.2 | 7.2 | 7.8 | 35.2 |
| 지방비 | 3.5 | 3.5 | 3.8 | 3.8 | 4.2 | 18.8 |
| 합계 | 10.0 | 10.0 | 11.0 | 11.0 | 12.0 | 54.0 |

## 4 기대 효과

○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배부로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 부모의 편의 제공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2-8 | 도청 모아사랑방 운영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는 2007년 출산·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청사내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시설인 '모아사랑방'을 조성하였음

– '모아사랑방'은 신관 4층에 32㎡(약 9.6평) 규모로 수유실·휴식실·응접실을 설치하였으며, 임신·출산여성의 모유수유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유축기·냉장고· 살균소독기· 쇼파· 침대 등 각종 비품을 갖추고 있음

○ 출산한 여성의 모유수유를 도와 주고 임신한 여성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임산부 및 수유부의 휴식 공간 제공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5.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1.0 | 1.0 | 1.0 | 1.0 | 1.0 | 5.0 |
| 합계 | 1.0 | 1.0 | 1.0 | 1.0 | 1.0 | 5.0 |

## 4 기대 효과

○ 취업 여성의 모유 수유 증진과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

## 3 소요 예산: 13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20.0 | 25.0 | 25.0 | 30.0 | 30.0 | 130.0 |
| 합계 | 20.0 | 25.0 | 25.0 | 30.0 | 30.0 | 130.0 |

## 4 기대 효과

○ 숲태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부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등 건강증진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에 기여

○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 태아, 가족의 교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

## 3 소요 예산: 54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73.5 | 73.5 | 77.0 | 77.0 | 77.0 | 378.0 |
| 지방비 | 31.5 | 31.5 | 33.0 | 33.0 | 33.0 | 162.0 |
| 합계 | 105.0 | 105.0 | 110.0 | 110.0 | 110.0 | 540.0 |

## 4 기대 효과

○ 저소득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3-3 | 신생아 조기 난청 진단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국가 지원에 기반하여 신생아 조기 난청 진단을 지원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발급)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ABR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3 소요 예산: 134.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16.9 | 16.9 | 17.6 | 17.6 | 18.2 | 87.2 |
| 지방비 | 9.1 | 9.1 | 9.4 | 9.4 | 9.8 | 46.8 |
| 합계 | 26.0 | 26.0 | 27.0 | 27.0 | 28.0 | 134.0 |

## 4 기대 효과

○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신생아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3-5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대상자에 대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 지원에 기반하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 최대 20만 원
-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3 소요 예산: 48.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8.6 | 8.6 | 9.5 | 9.5 | 9.5 | 45.7 |
| 지방비 | 0.4 | 0.4 | 0.5 | 0.5 | 0.5 | 2.3 |
| 합계 | 9.0 | 9.0 | 10.0 | 10.0 | 10.0 | 48.0 |

## 4 기대 효과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함으로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증진 도모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3-7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 단태아 5~25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3-8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가능한 병원까지 차량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시설·장비 및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 충청북도는 2017년 현재까지 총 4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 2011년 영동병원(분만), 2014년 보은군 손산부인과(외래)·단양군(순회), 2016년 괴산성모병원(외래)임




▲ 영동병원 산부인과 개소식(2011)



▲ 보은군 손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운영

이미지: 충청북도 블로그(http://blog.daum.net/cbkb21/16905370)
충북일보 2016.3.17. 기사(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38797)

○ 기 선정지역(외래·순회)된 지역의 경우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하거나, 기존(1형)의 (2형) 전환 신청도 가능하므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분만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

- 1형: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간호조무사 1명 포함), 운영비 5억
- 2형: 산부인과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1명 포함), 운영비 4.5억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3-9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드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국가 지원에 기반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장애등급 1~6급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3 소요 예산: 3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63.0 | 63.0 | 63.0 | 63.0 | 63.0 | 315.0 |
| 지방비 | 7.0 | 7.0 | 7.0 | 7.0 | 7.0 | 35.0 |
| 합계 | 70.0 | 70.0 | 70.0 | 70.0 | 70.0 | 350.0 |

## 4 기대 효과

○ 장애인 산모 대상으로 출산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권 보호에 기여

## 2) 세부 사업

### 2-1.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1-1 | 영유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0~2세)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2016년 7월부터는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

○ 주요 내용

- 어린이집(0~2세) 종일, 어린이집(0~2세) 맞춤으로 구분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원 금액[55]

- 전 계층에 월 313천원~430천원의 보육료 지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55)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가정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 지원 금액: 월 100~200천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232,57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39,508.0 | 39,516.5 | 39,525.0 | 39,525.0 | 39,610.0 | 197,684.5 |
| 지방비 | 6,972.0 | 6,973.5 | 6,975.0 | 6,975.0 | 6,990.0 | 34,885.5 |
| 합계 | 46,480.0 | 46,490.0 | 46,500.0 | 46,500.0 | 46,600.0 | 232,570.0 |

## 4 기대 효과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2-2. 돌봄체계 강화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2-1 | 아이돌봄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한부모·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 및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며,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 금액[56)]

– 기본:6,500원/1시간

– 영아종일제(6,500원/1시간), 보육교사형(7,150원/1시간), 시간제(6,500원/1시간), 종합형(8,450원/1시간)

○ 주관 부서: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56) 정부의 이용요금 산정 및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2-2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상위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 금액

- 일반아동: 월 10만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50%(219,000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 월 20만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114.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20.0 | 22.0 | 22.0 | 25.0 | 25.0 | 114.0 |
| 합계 | 20.0 | 22.0 | 22.0 | 25.0 | 25.0 | 114.0 |

## 4 기대 효과

○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움

○ 추진방식

- 주민센터·문화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의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공동육아마을 관리자를 배치하여 총괄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재능기부·지역주민협의체·지자체 지원 강사·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내 인적자원을 활용[58]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3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20.0 | 60.0 | 90.0 | 90.0 | 90.0 | 350.0 |
| 합계 | 20.0 | 60.0 | 90.0 | 90.0 | 90.0 | 350.0 |

## 4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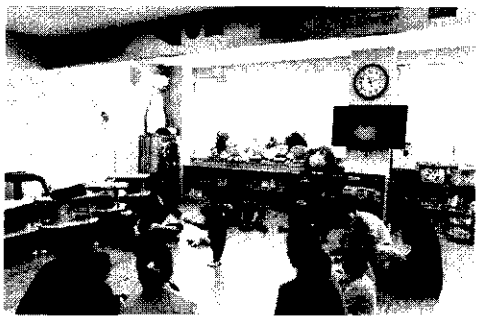
○ 마을 인력을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일자리를 창출함

○ 경력단절 및 출산포기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함

58) 예를 들어 일시 긴급돌보미는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교원 등을 활용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재능기부자, 지자체 문화예술 체육강사, 전문프로그램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청주시 공동육아나눔터



▲ 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이미지: 충북 브레이크뉴스 2017.4.26. 기사(http://cbreaknews.com/sub_read.html?uid=7737&section=sc5&section2)
제천 사진DB(http://iphoto.okjc.net/www/selectPhotoInfoWebView.do?key=834&ctgryNo=682)

## 3 소요 예산: 6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84.0 | 84.0 | 84.0 | 91.0 | 91.0 | 434.0 |
| 지방비 | 36.0 | 36.0 | 36.0 | 39.0 | 39.0 | 186.0 |
| 기타 | | | | | | |
| 합계 | 120.0 | 120.0 | 120.0 | 130.0 | 130.0 | 620.0 |

## 4 기대 효과

○ 지역내 이웃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양육망 구축

○ 개별 가족의 돌봄을 사회적 나눔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경감 및 가족의 휴식 지원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3-4 | 초보엄마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맞춤형 육아서비스'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초보 부모를 위하여 육아전문 상담가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24개월 이하 첫 자녀를 둔 도내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아울러 산후 우울증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지원 대상: 24개월 이하 첫 자녀를 둔 충청북도내 가정

○ 지원 횟수: 1회 3시간 이내, 총 8회

○ 주요 내용

- 아기 건강관리법, 아기목욕법 등 영아 코칭 서비스
- 산후 돌봄 및 전신스트레칭, 모유 수유, 육아에 임하는 자세 등 산모 관리 서비스 제공 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19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30.0 | 50.0 | 50.0 | 60.0 | 190.0 |
| 합계 | | 30.0 | 50.0 | 50.0 | 60.0 | 190.0 |

## 4 기대 효과

○ 초보엄마 및 첫 자녀를 둔 가정을 찾아가는 1:1 맞춤형 육아서비스 지원으로 긍정적 육아마인드 형성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4-2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노후된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지원 내용: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 지원규모 및 단가

-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2017년 기준) : 751,440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2,89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370.5 | 370.5 | 377.0 | 377.0 | 383.5 | 1,878.5 |
| 지방비 | 199.5 | 199.5 | 203.0 | 203.0 | 206.5 | 1,011.5 |
| 합계 | 570.0 | 570.0 | 580.0 | 580.0 | 590.0 | 2,890.0 |

## 4 기대 효과

○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요 충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 조성

## 3 소요 예산: 1,8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234.0 | 234.0 | 237.3 | 237.3 | 240.5 | 1,183.1 |
| 지방비 | 126.0 | 126.0 | 127.7 | 127.7 | 129.5 | 636.9 |
| 합계 | 360.0 | 360.0 | 365.0 | 365.0 | 370.0 | 1,820.0 |

## 4 기대 효과

○ 부모의 영유아 가정 양육을 활성화 기여

○ 부모의 개별적 수요자에게 시간제보육 운영시설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4-5 | 어린이집 다문화 영유아 지원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사회정서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함

○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문화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다문화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서비스 대상: 다문화 재원 어린이집(다문화협약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서비스 내용

- 사업량: 다문화협약어린이집 24개소
- 사업 내용: 다문화 부모의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역할 교육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65.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10.0 | 10.0 | 15.0 | 15.0 | 15.0 | 65.0 |
| 합계 | 10.0 | 10.0 | 15.0 | 15.0 | 15.0 | 65.0 |

## 4 기대 효과

○ 다문화 아동의 보육교직원과 부모 아동 교육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4-7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임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내용

- 보육전문가, 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 협의 후 방문
- 급식, 위생, 건강, 안전분야 등의 지표 (13개항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 바로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출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354.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35.0 | 35.0 | 35.0 | 36.0 | 36.0 | 177.0 |
| 지방비 | 35.0 | 35.0 | 35.0 | 36.0 | 36.0 | 177.0 |
| 합계 | 70.0 | 70.0 | 70.0 | 72.0 | 72.0 | 354.0 |

## 4 기대 효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인증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 인증점수: 100점 만점(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점) 중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 인증기간: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매 3년
- 인증심사비용 : 대기업·공공기관 신규인증 1백만원, 중소기업 심사비용 무료

○ 인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138개 인센티브 지원('16.12월 기준)

○ 주관 부서: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 3 소요 예산: 42.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7.0 | 7.0 | 9.0 | 9.0 | 10.0 | 42.0 |
| 합계 | 7.0 | 7.0 | 9.0 | 9.0 | 10.0 | 42.0 |

## 4 기대 효과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5-3 | 육아휴직수당 지원 및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원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휴직·병가·징계 등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지원분야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을 최소 단위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지원
- 해당 지방정부 대체인력 임금기준 적용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

## 3 소요 예산: 1,2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240.0 | 240.0 | 250.0 | 250.0 | 270.0 | 1,250.0 |
| 합계 | 240.0 | 240.0 | 250.0 | 250.0 | 270.0 | 1,250.0 |

## 4 기대 효과

○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및 일자리창출 정책에 기여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2-5-5 | 시간선택제 · 유연근무제 확대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2017년 3월 인사혁신처에서는 유연근무 활성화와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를 담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간하였으며, 6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 바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설정: 최소 10% 이상으로 목표 설정
- 자체 성과평가시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 유연근무 허용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마련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신청 독려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총무과

## 3 소요 예산: 비예산

## 4 기대 효과

○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 확대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 2] 세부 사업

### 3-1.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1-1 | 저출산 극복 정책 홍보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설득을 위한 국가·사회적 움직임은 크게 '교육과 홍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됨

– 정부 차원에서는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전력을 기하고 있음[59]

○ 한편 저출산 정책의 경우 정부가 입안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국지적(지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이원화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 신혼부부, 임신·출산, 영아기, 유아기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정책(국가+지방정부)을 정리

– 정책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 보건소를 필두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및 민간 부문 문화센터 등을 적극 활용

59) 오영희 · 조남훈 · 김경래 · 유혜영, 저출산 대응 홍보교육전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재구성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1-2 | 대중매체를 이용한 가족친화문화 형성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들이 쉽게 접하는 TV·신문·온라인·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자는 취지임

○ 연령층에 맞는 참신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지역주민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 독신자 프로그램 자제 및 일정비율 이상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을 건의
- 충청북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홈페이지, 도내 전광판, 방송, SNS 등)
- 저출산 극복 UCC 경진대회 개최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21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30.0 | 40.0 | 40.0 | 50.0 | 50.0 | 210.0 |
| 합계 | 30.0 | 40.0 | 40.0 | 50.0 | 50.0 | 210.0 |

## 4 기대 효과

○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친근하게 저출산 인식 개선 도모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1-4 | 저출산 관련기관 지원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 | 계속/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저출산 관련 기관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관

## 3 소요 예산: 17,104.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2,588.5 | 2,588.5 | 2,589.5 | 2,637.5 | 2,639.0 | 13,043.0 |
| 지방비 | 806.5 | 806.5 | 807.5 | 819.5 | 821.0 | 4,061.0 |
| 합계 | 3,395.0 | 3,395.0 | 3,397.0 | 3,457.0 | 3,460.0 | 17,104.0 |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육아종합 지원센터 | 국비 | 212.5 | 212.5 | 213.5 | 213.5 | 215.0 | 1,067.0 |
| | 지방비 | 212.5 | 212.5 | 213.5 | 213.5 | 215.0 | 1,067.0 |
| | 합계 | 425.0 | 425.0 | 427.0 | 427.0 | 430.0 | 2,134.0 |
| 건강가정 지원센터 | 국비 | 776.0 | 776.0 | 776.0 | 784.0 | 784.0 | 3,896.0 |
| | 지방비 | 194.0 | 194.0 | 194.0 | 196.0 | 196.0 | 974.0 |
| | 합계 | 970.0 | 970.0 | 970.0 | 980.0 | 980.0 | 4,870.0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국비 | 1,600.0 | 1,600.0 | 1,600.0 | 1,640.0 | 1,640.0 | 8,080.0 |
| | 지방비 | 400.0 | 400.0 | 400.0 | 410.0 | 410.0 | 2,020.0 |
| | 합계 | 2,000.0 | 2,000.0 | 2,000.0 | 2,050.0 | 2,050.0 | 10,100.0 |

## 4 기대 효과

○ 저출산 관련 기관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율적 추진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2-2 |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결혼이나 출산 자체만 강조하기 보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고착화된 결혼관을 변화시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조성해 출산율 회복을 유도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주요 내용

-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개최: 충청북도·인구보건복지협회·여성단체협의회 등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만혼과 출산기피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생명의 밤 연계 거리문화 행사, 출산장려 영상 페스티벌, 미혼모(부)자 인식 개선 돕기 등 출산장려 문화 프로그램 진행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234.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45.0 | 45.0 | 47.0 | 47.0 | 50.0 | 234.0 |
| 합계 | 45.0 | 45.0 | 47.0 | 47.0 | 50.0 | 234.0 |

## 4 기대 효과

○ 출산 장려 문화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가족문화 조성

## 3-3.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3-1 | '아이(i) 교감 행복한 아빠' 시범사업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OECD의 '2015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이며, 이 중 아빠가 같이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하루 3분, 돌봐주는 시간 역시 3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아이(i) 교감 행복한 아빠' 시범사업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 일·가정 양립 및 균형 등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사업 대상: 0~7세의 자녀를 둔 남성

○ 주요 내용

- '아빠의 달' 홍보 및 지원 적극 유도: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함. '아빠의 달' 홍보를 통해 지원을 유도하도록 함
- 아빠 교실: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 아이와 정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놀이법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아빠와 떠나는 캠프': 1박2일 동안 자녀와 아빠가 자연에서 함께 지내면서 공감대 형성
- '가족요리 페스티벌':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대회로 끈끈한 가족 유대관계 형성 도모
- 아빠 유모차 걷기 대회: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독려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3-2 | 충북 '육아 e음' 사업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육아 e음'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과 연계시키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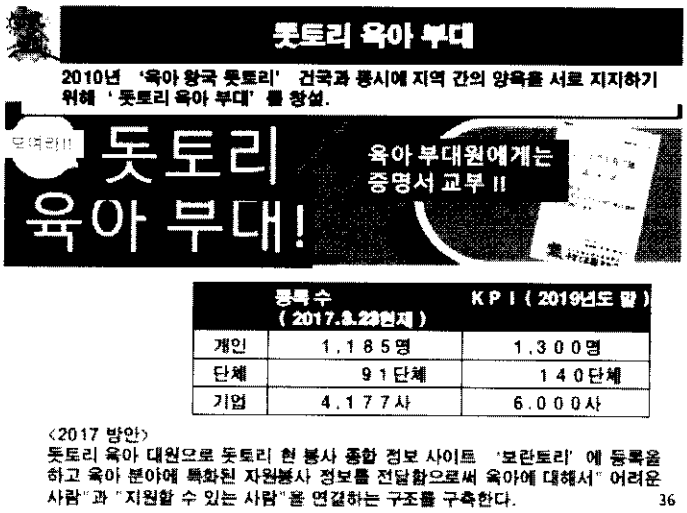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주요 내용

- 육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양성: 기존 아이돌보미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 이수자에게 증명서 교부
- 충북 '육아 e음'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와 육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가정 연결
- 시간제로 운영, 아이돌보미 경력 인정제 단계적으로 도입
- 추후 아이돌보미 전문 자원봉사자 인력풀(Pool)을 구축하여 원활한 연계망 마련




▲ 일본 돗토리현 육아부대 사례

이미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양립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 2017.6.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3-3 | 충북 '안심보육 프로젝트' 시범사업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일하는 엄마의 경우 갑자기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

○ 충북 '안심보육 프로젝트'는 감기, 수족구 등으로 아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긴급·일시 보육서비스의 폭을 좀 더 확장하자는 취지임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20~2022년

○ 주요 내용

- 병원·보건소 등에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격리 공간 마련
- 간호인력 배치: 간호조무사 및 기타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보강
- 2020년 1개소 시범사업 추진, 평가 후 확대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3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 | 100.0 | 100.0 | 150.0 | 350.0 |
| 합계 | - | - | 100.0 | 100.0 | 150.0 | 350.0 |

## 4 기대 효과

○ 아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긴급·일시 보육서비스 확대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3-3-5 | 출산지원 사각지대 발굴 시범사업 | 확대/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대책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자',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출산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예컨대 '남성육아휴직수당'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주 대상임
- 고용보험료를 안 내는 자영업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임

○ 시범사업 추진으로 출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주요 내용

- 자영업자를 위한 '야간돌봄 도우미' '우리 동네 집단 돌봄[60]'사업 확대 지원
- 농림업 종사자를 위한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농정국 농업정책과

## 3 소요 예산: 24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도비 | - | 50.0 | 50.0 | 70.0 | 70.0 | 240.0 |
| 합계 | - | 50.0 | 50.0 | 70.0 | 70.0 | 240.0 |

## 4 기대 효과

○ '자영업자', '농림업' 종사자' 등의 출산지원 사각지대 지원으로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체감도 향상

○ 출산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수혜로 근로자 중심 제도로 인해 야기된 상대적 박탈감 해소

60) '우리 동네 집단 돌봄' 이란 지역아동센터 및 기타 마을 공간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돌보는 사업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없이 지역아동센터 · 경로당 등 마을 공간을 십분 활용하도록 함.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우리 동네 아이돌봄기동대' 가 있음

# 4. 머무를 수 있는 든든한 지역환경 마련

## 1) 현황 및 진단

### ◆ 신생아수 증가에 초점은 둔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

○ 최근 해남군은 출산 관련 지출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음

- 해남군의 0~4세 인구의 경우 2008년 2,648명에서 2012년 2,952명, 2014년 3,177명까지 증가하였음. 2016년 다소 하락하였으나 3,000명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5~14세 인구의 경우 2008명 7,338명에서 2012년 6,589명, 2014년 5,809명, 2016년 5,17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해남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장려 정책이 비단 신생아수만 늘리는데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가 그 지역에서 보육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 전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넓어지는 결혼 · 출산 · 양육 정책의 범위

○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해결 방안의 폭이 넓어짐. 즉 단순히 임신 · 출산 지원이 아닌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임

- 지역 입장에서는 출산 · 임신 지원 등의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교육 · 일자리 · 주거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됨

○ 본 계획 역시 이런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청년 일자리, 주거, 육아 및 교육 네트워크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마련하기로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 절실

○ 정부가 현재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61]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즉, 지역적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음

○ 이런 실정을 감안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힘

○ 충청북도는 인구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전담팀을 빠르게 구축하여 저출산 정책 및 인구 정책의 효율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61) 기획재정부는 2017년 10월 25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 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음.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토론회에서 "2006년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실시된 이후 10여년 간 80조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며 사실상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함(조선비즈 2017.11.4. 기사 인용)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1-2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사업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제도는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임

○ 자녀가 만12세 이하인 가정에 아이사랑보너스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학원 아동용품 등 가맹업체와 거래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발급대상: 충북지역 거주자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 주요 내용

- 농협(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이용시 2%~20% 할인
-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현장 구매시 건당 1,500원 할인(월 2회, 연12회한)
- 전국 놀이공원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에버랜드·서울랜드·롯데월드 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비예산

## 4 기대 효과

○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문제 극복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1-4 | 찾아가는 부모교육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함

○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를 확산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

○ 주요 내용

- 찾아가는 부모교육 안내 및 홍보
- 부모교육 희망기관에서 각 지역 사업수행기관으로 교육 신청
- 사업 수행기관에서 부모교육 대상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선정하여 해당기관 방문교육 실시

○ 주관 부서: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 3 소요 예산: 106.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13.0 | 13.0 | 13.0 | 15.0 | 15.0 | 69.0 |
| 지방비 | 7.0 | 7.0 | 7.0 | 8.0 | 8.0 | 37.0 |
| 합계 | 20.0 | 20.0 | 20.0 | 23.0 | 23.0 | 106.0 |

## 4 기대 효과

○ 부모교육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하여 올바른 자녀이해 및 양육방법 습득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2-2 | 충북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해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

○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사령탑(컨트롤 타워)으로 '시도별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 설치를 권고함

○ 따라서 기존 '충청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의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년

○ 주요 내용

- '충청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저출산 · 고령사회 위원회'로 확대 개편
- 지방의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비예산

## 4 기대 효과

○ 충북'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설치로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모색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2-4 | 부모 · 선후배, '충북의 보육과 교육을 잇다'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다둥이 자조모임'과 같이 육아를 함께하는 부모들의 네트워킹 형성과 더불어 초·중·고 자녀를 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부모와 영유아 양육에 집중하는 학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내 폭넓은 보육-교육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보육과 교육을 잇다' 프로젝트로 충북 내 육아-보육-교육 연계를 공고히 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주요 내용

- 영유아, 초·중·고 등 다양한 학부모, 전문가들이 모여 '충청북도에서의 보육과 교육'을 논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 마련
-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다양한 정책 건의 등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3 소요 예산: 1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 30.0 | 30.0 | 40.0 | 50.0 | 150.0 |
| 합계 | - | 30.0 | 30.0 | 40.0 | 50.0 | 150.0 |

## 4 기대 효과

○ 아이가 충청북도 내에서 행복하게 양육되고 교육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정보 공유 및 정책 반영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3-2 |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취업역량강화사업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 취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대학별 특성에 맞는 취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신청 받아, 검토 후 선정·지원하는 사업임

○ 도내 대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충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또는 주민등록상 충북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주요 내용

- 대학생 취업역량 교육: 취업, 진로, NCS 기반, 충북 주력 및 전략산업교육 등 청년들의 전반적인 취업역량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 대학생 한걸음 더 캠프: 직장생활 간접체험, 우수기업 설명회, 탐방 등 1박 2일 캠프 실시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728.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144.0 | 145.0 | 145.0 | 147.0 | 147.0 | 728.0 |
| 합계 | 144.0 | 145.0 | 145.0 | 147.0 | 147.0 | 728.0 |

## 4 기대 효과

○ 대학생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내 일자리 미스 매치 완화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3-4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계속/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이룬 창업 열기를 계속 키워 나가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다 큰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8~2022년

○ 지원 대상 및 요건: 도내 대학생, 청년(18세~39세이하), 창업기업 (5년 이내)

○ 지원 내용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회, 10여개팀 발굴 시상
- 우수 창업 동아리 지원: 15개소
- 창업 우수 기업 발굴 기업별 맞춤 지원: 5개 업체 내외

○ 주관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청년지원과

## 3 소요 예산: 2,1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410.0 | 410.0 | 430.0 | 430.0 | 440.0 | 2,120.0 |
| 합계 | 410.0 | 410.0 | 430.0 | 430.0 | 440.0 | 2,120.0 |

## 4 기대 효과

○ '고용없는 성장' 도래에 따른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 지원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3-6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신규/국비 |

## 1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 최대 공약 중 하나가 '도시재생뉴딜'사업임. 정부는 2017년 9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함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 아래 도시재생 유형을 5개로 구분하고 있음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원주택)를 지원하도록 함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원주택)는 주거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됨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금이 리츠를 설립,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형 공공임대사업임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주택과 창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 등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활용(복합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주요 내용

- 주거지지원형(주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 주택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개발공사·충청북도가 협의하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원주택) 적용 가능성 모색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3-7 | 기존 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 확대<br>-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신혼부부 지원- | 신규/기타 |

## 1 배경 및 목적

○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임

○ 매입 범위를 다가구 주택에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선정기준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 추후 소득자산 기준 완화, 신혼부부 비율 확대 병행이 필요할 것임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21~2022년

○ 주요 지원 내용

–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미분양 아파트 임대 및 선정 기준 완화 방안 마련

**참조: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 절차[62]**

■ LH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매입 승인 신청 → 매입 승인→ LH 등 사업시행자와 주택 소유자 간 매매 계약 →사업시행자가 시·군·구청장에게물량 통보 및 입주자 선정 의뢰 →지원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입주 신청 →시·군·구청장 자격 확인 및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선정 통보 → 임대차계약 및 입주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62)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GLT000000060) 참조

| 구 분 | 사업명 | 사업유형 |
|---|---|---|
| 4-3-8 | 신혼부부 대상 특화임대주택 마련 및<br>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추가 지원 | 신규/자체 |

## 1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는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신혼부부 특화주택' 을 충청북도에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대출이자로 허덕이는 신혼부부에게 정부 차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외에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충청북도 내 주거 정착을 유도하도록 함

## 2 추진 내용

○ 사업 기간: 2019~2022년

○ 주요 내용

- 신혼부부 특화주택: 충청북도 건설 적극 유도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임차금액 제한없이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다자녀 및 1~3등급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

○ 주관 부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 3 소요 예산: 4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지방비 | | 100.0 | 100.0 | 120.0 | 130.0 | 450.0 |
| 합계 | | 100.0 | 100.0 | 120.0 | 130.0 | 450.0 |

## 4 기대 효과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3. 걱정없는 출산 환경 조성 | 14,436.0 | 2,917.0 | 2,918.0 | 2,829.0 | 2,829.0 | 2,943.0 |
| 1-3-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540.0 | 105.0 | 105.0 | 110.0 | 110.0 | 110.0 |
| 1-3-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1,334.0 | 265.0 | 265.0 | 267.0 | 267.0 | 270.0 |
| 1-3-3. 신생아 조기 난청 진단 지원 | 134.0 | 26.0 | 26.0 | 27.0 | 27.0 | 28.0 |
| 1-3-4.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121.0 | 23.0 | 23.0 | 25.0 | 25.0 | 25.0 |
| 1-3-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 48.0 | 9.0 | 9.0 | 10.0 | 10.0 | 10.0 |
| 1-3-6. 저소득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2,609.0 | 519.0 | 520.0 | 520.0 | 520.0 | 530.0 |
| 1-3-7.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6,400.0 | 1,200.0 | 1,200.0 | 1,300.0 | 1,300.0 | 1,400.0 |
| 1-3-8.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2,900.0 | 700.0 | 700.0 | 500.0 | 500.0 | 500.0 |
| 1-3-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350.0 | 70.0 | 70.0 | 70.0 | 70.0 | 70.0 |
|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 | **1,299,471.0** | **259,636.5** | **259,741.5** | **259,911.0** | **259,976.0** | **260,206.0** |
| 2-1.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 1,243,270.0 | 248,590.0 | 248,620.0 | 248,630.0 | 248,660.0 | 248,770.0 |
| 2-1-1. 영유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0~2세) | 593,160.0 | 118,620.0 | 118,630.0 | 118,630.0 | 118,640.0 | 118,640.0 |
| 2-1-2. 가정양육수당 지원 | 232,570.0 | 46,480.0 | 46,490.0 | 46,500.0 | 46,500.0 | 46,600.0 |
| 2-1-3. 누리과정 지원 | 417,540.0 | 83,490.0 | 83,500.0 | 83,500.0 | 83,520.0 | 83,530.0 |
| 2-2. 아이돌봄 지원 | 26,533.0 | 5,289.0 | 5,292.0 | 5,312.0 | 5,315.0 | 5,325.0 |
| 2-2-1. 아이돌봄 지원 | 26,419.0 | 5,269.0 | 5,270.0 | 5,290.0 | 5,290.0 | 5,300.0 |
| 2-2-2.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14.0 | 20.0 | 22.0 | 22.0 | 25.0 | 25.0 |
| 2-3. 모두가 참여하는 양육 | 1,250.0 | 150.0 | 220.0 | 280.0 | 290.0 | 310.0 |
| 2-3-1. '공동육아마을' 육성 및 지원 | 350.0 | 20.0 | 60.0 | 90.0 | 90.0 | 90.0 |
| 2-3-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 620.0 | 120.0 | 120.0 | 120.0 | 130.0 | 130.0 |
| 2-3-3. 다둥이 자조모임 지원 | 90.0 | 10.0 | 10.0 | 20.0 | 20.0 | 30.0 |
| 2-3-4. 초보엄마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맞춤형 육아서비스' | 190.0 | - | 30.0 | 50.0 | 50.0 | 60.0 |
| 2-4. 보육환경의 질 제고 | 26,846.0 | 5,310.5 | 5,312.5 | 5,370.0 | 5,392.0 | 5,461.0 |
| 2-4-1. 어린이집 운영 지원 | 21,168.0 | 4,193.0 | 4,195.0 | 4,230.0 | 4,250.0 | 4,300.0 |
| 2-4-2.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 2,890.0 | 570.0 | 570.0 | 580.0 | 580.0 | 590.0 |
| 2-4-3. 시간제 보육 지원 | 1,820.0 | 360.0 | 360.0 | 365.0 | 365.0 | 370.0 |
| 2-4-4.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340.0 | 67.5 | 67.5 | 68.0 | 68.0 | 69.0 |
| 2-4-5. 어린이집 다문화 영유아 지원 | 65.0 | 10.0 | 10.0 | 15.0 | 15.0 | 15.0 |
| 2-4-6.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사업 | 209.0 | 40.0 | 40.0 | 42.0 | 42.0 | 45.0 |
| 2-4-7.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354.0 | 70.0 | 70.0 | 70.0 | 72.0 | 72.0 |
| 2-5. 부모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1,572.0 | 297.0 | 297.0 | 319.0 | 319.0 | 340.0 |
| 2-5-1. 가족친화인증 기관 확대 | 42.0 | 7.0 | 7.0 | 9.0 | 9.0 | 10.0 |
| 2-5-2. 대체인력뱅크 운영 | 280.0 | 50.0 | 50.0 | 60.0 | 60.0 | 60.0 |
| 2-5-3. 육아휴직수당 지원 및 대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원 | 1,250.0 | 240.0 | 240.0 | 250.0 | 250.0 | 270.0 |
| 2-5-5. 가족사랑의 날 운영 | - | - | - | - | - | - |
| 2-5-6. 시간선택제 · 유연근무제 확대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4-3.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환경 확충 | 7,391.0 | 899.0 | 1,100.0 | 1,212.0 | 1,784.0 | 2,396.0 |
| 4-3-1.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 지원 | 683.0 | 135.0 | 135.0 | 137.0 | 137.0 | 139.0 |
| 4-3-2.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 728.0 | 144.0 | 145.0 | 145.0 | 147.0 | 147.0 |
| 4-3-3.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 | 620.0 | 110.0 | 110.0 | 130.0 | 130.0 | 140.0 |
| 4-3-4.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 2,120.0 | 410.0 | 410.0 | 430.0 | 430.0 | 440.0 |
| 4-3-5.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 590.0 | 100.0 | 100.0 | 120.0 | 120.0 | 150.0 |
| 4-3-6.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700.0 | - | 100.0 | 150.0 | 200.0 | 250.0 |
| 4-3-7. 기존 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 확대-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신혼부부 지원- | 1,500.0 | - | - | - | 500.0 | 1,000.0 |
| 4-3-8. 신혼부부 대상 특화임대주택 마련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추가 지원 | 450.0 | - | 100.0 | 100.0 | 120.0 | 130.0 |

# 부록

## 결혼 · 출산 및 자녀양육 인식 조사 설문지

# ▣ 부록

## 〈 결혼 · 출산 및 자녀양육 인식 조사〉

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 설문지 관리번호 | |
|---|---|
| | - |

조사원명 : _____ 조사일시 : _____

### 「충청북도 출산장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결혼·출산 및 자녀양육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계획 수립에 앞서 충북도민의 **결혼·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시고,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해 주신 귀중한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개인관련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조사관련 문의처 -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 (TEL : 070-7890-1001), **충청북도청 청년지원과** (TEL : 043-220-2882)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문1.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꼭 해야 한다.
☐ 2) 하는 편이 좋다.
☐ 3)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 4) 하지 않는 것이 낫다.
☐ 5)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 6) 잘 모르겠다.

**문2.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해 적어 주십시오.**

1) 남자: 만_____세
2) 여자: 만_____세

**문5. 귀하는 출산 및 출산시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곳에 V표 해 주십시오.**

☐ 1) 아내 ☐ 2) 남편 ☐ 3) 아내와 남편 공동 ☐ 4) 시부모 ☐ 5) 친정부모
☐ 6)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문6. 만약 미혼 여성이 결혼과 관계없이 임신을 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생명은 소중하므로 당연히 낳아야 한다. ☐ 2)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낳는다.
☐ 3) 미혼모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낳아서는 안 된다.
☐ 4) 잘 모르겠다. ☐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 실태

**문7. 귀하는 현재 결혼하셨습니까?**

☐ 1) 예 (☛ 문8로 이동) ☐ 2) 아니오 (☛ 문19로 이동)

**문8. 결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5년 이하 ☐ 2) 6~10년 ☐ 3) 11~15년 ☐ 4) 16~20년
☐ 5) 21~25년 ☐ 6) 26~30년 ☐ 7) 30년 이상

**문9. 귀댁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1) 없음 ☐ 2) 1명 ☐ 3) 2명 ☐ 4) 3명 ☐ 5) 4명 이상

**문10.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10-1로 이동) ☐ 3) 잘 모르겠다

**문10-1.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번, **2순위** _____번

①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서 ② 있는 자녀만이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③ 아이를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④ 양육비 및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⑤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⑥ 내 시간 및 나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⑦ 가족이 반대해서 ⑧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⑨ 나이가 많아서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문11.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귀댁의 자녀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아내(엄마) ☐ 2) 남편(아빠) ☐ 3) 엄마와 아빠가 거의 비슷한 시간을 보냄
☐ 4) 보육 도우미 ☐ 5) 조부모 ☐ 6) 외조부모
☐ 6)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 7) 해당사항 없음(자녀없음 등)

**문20.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만 V표 해 주십시오.**

☐ 1)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 2)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 3)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등) ☐ 5) 결혼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 6)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7)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 8) 결혼에 적당한 시기(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 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 자기계발 등)
☐ 10) 결혼생각이 없어서 ☐ 11) 결혼제도가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시댁문제 등)

**문21. 귀하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예 (☞ 문21-1로 이동) ☐ 2) 아니오 (☞ 문21-5로 이동)

**문21-1. 본인의 현실적인 여건을 떠나,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 생각하십니까?**

총 _____명

**문21-2. 본인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 이상적인 자녀수 보다 현실적인 자녀수가 적을 경우 문21-3으로 이동)

(☞ 이상적인 자녀수와 현실적인 자녀수가 같거나, 현실적인 자녀수가 많은 경우 문21-4로 이동)

**문21-3. (이상적인 자녀수 보다 현실적인 자녀수가 적은 응답자만)** 이상적인 자녀수 보다 현실적인 자녀수를 더 적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번, 2순위 _____번

①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② 자녀를 돌봐 줄 사람 또는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③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④ 자녀를 키우기에 위험한 사회환경 때문에
⑤ 나이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문24. 지금 하는 일이 귀하의 결혼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 1)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2)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3) 부정적인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없다.
☐ 4)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5)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6) 잘 모르겠다.

☞ 문24-1로 이동
☞ 문25로 이동

**문24-1. 지금 하는 일이 결혼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한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1) 이성교제 할 시간이 부족하다. ☐ 2)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거나 없다.
☐ 3) 직장 일에 시달려 결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 4) 직장 생활이 재미있어 결혼할 생각이 안 난다.
☐ 5) 보수가 적어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 6)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결혼이 망설여진다.
☐ 7)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문25. 향후 결혼하거나 혹은 출산할 경우, 계속 직장생활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1) 결혼이나 출산과 관계없이 계속 다니겠다. ☞문26으로 이동
☐ 2) 결혼 후에는 다니지 않겠다.
☐ 3) 결혼 직후에는 쉬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취업하겠다. ☞문25-1로 이동
☐ 4) 결혼 후 계속 다니다가, 출산할 경우 그만 두겠다.
☐ 5) 자녀 출산 후 그만두었다가, 출산 후 아이가 크면 다시 다니겠다.
☐ 6)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겠다. ☞문26으로 이동

**문25-1. 귀하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1개만 V표 해 주십시오.

☐ 1)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일)이 아니어서 ☐ 2)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 3)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4)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5)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 6) 결혼과 출산을 하면 일을 그만두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 7)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문30. 다음은 2017년 현재 운영 중인 출산 및 보육지원 기관들입니다. 각각의 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단, 미혼은 인지여부만, 기혼은 인지도 및 이용경험 모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구 분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 | 이용 만족도 | | | | |
|---|---|---|---|---|---|---|---|---|---|
| | 안다 | 모른다 | 이용 | 미이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30-1. 지역아동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2. 육아종합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3. 국공립 어린이집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4. 직장 어린이집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5. 건강가정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6.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7. 기타(서비스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시설) | | | | | | | | | |

**문31. 다음은 2017년 현재 진행 중인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들입니다.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출산율 제고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단, 미혼은 인지여부만, 기혼은 인지도 및 이용경험, 출산율 제고 기여 정도 모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구 분 | 인지여부 | | 이용 경험 | | 출산률 제고 기여 정도 | | | | |
|---|---|---|---|---|---|---|---|---|---|
| | 안다 | 모른다 | 이용 | 미이용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31-1. 공동육아나눔터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2. 아이돌봄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3. 출산장려금(축하금)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4. 영유아 보육료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5. 가정양육수당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6.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8.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9. 기타(이용을 했거나, 알고 있는 서비스(사업)) | | | | | | | | | |

**문32. 결혼·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해 정책 제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 충청북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2018~2022)


* 인 쇄 일 : 2017년 11월

* 발 행 일 : 2017년 11월

* 발 행 처 : 충청북도

* 연구기관 :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45
☎ : 070-7890-1001

* 인 쇄 처 : 하나문화사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61 ☎ : 053-956-2536



* 판권소유 : 충청북도,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주)

* 판권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복제 및 전제 불가